

第100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99.3.29 ~ 4.2.)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1999. 3. 통권 제63호

I. 개회식	3
II. 제10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7
III. 제10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7
IV. 부 록	
1. 의사일정	27
2.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29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47
4. 2001학년도 학교설립계획(안)	81
5.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계획(안)	87
6.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97
7.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9

8.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3
9.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07

V. 별 책 부 록

- 0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계획서(안) 설명자료 : 별책1
- 0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
명서 : 별책2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9년 3월 29일 (월요일) 11시 00분

開會式順 (第100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애국가 제창
4.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5. 개회사
6. 폐식

(사회 : 의사담당 신용건)

(11시 00분 개식)

● 의사담당 신용건

지금부터 제10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된 반주에 맞춰 1절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제100회-개회식]

다음은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개 회 사

(11시 03분)

● 의장 조일환

존경하는 동료 교육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세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은 150만 도민과 1만 6천여 교육가족의 축복 속에, 기대 속에 출범한 우리 교육위원회가 제100회 임시회를 개최하는 뜻 깊은 날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8년여동안 우리 교육위원회는 도민의 성원 속에 지방교육자치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자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맡은 바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충북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되도록 교육가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선 교육현장의 크고 작은 목소리를 받아들여 교육가족의 의사가 반영되는 민주적 의결기관으로써 발전코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에 대하여 협력관계를 조성 확대하기 위하여 힘써왔으며 비판과 견제 그리고 대안 제시에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는 100회의 정기·임시

회를 개최하면서 의안 250건, 일반안건 370건, 총 620건을 심의·의결하였고, 23차례에 걸쳐 59개 학교 현장과 교육기관을 방문하였으며, 각종 교육 의안의 심도있는 의결을 위하여 69회에 걸쳐 의안관련 현장방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 세미나, 자체연수, 교육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 및 학사시찰 등 교육발전을 위한 전문성 제고 및 업무시행에 내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찬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민과 교육가족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미흡한 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우리 교육위원 일동은 겸허한 자세로 서로 화합·단결하고 주어진 책무에 충실하고 자기 연찬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주민과 함께 하는 교육자치 실현에 더욱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립니다.

금년도 교육위원회 운영의 특기사항으로는 분기별 정기적인 교육행정 질문과 본회의 개회시 수시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하여서 교육현안이 적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개최되는 제100회 임시회는 5일간의 회기로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 2001학년도 학

교설립계획안,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시게 되오니 내실있게 운영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제100회 교육위원회 임시회를 개최하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교육위원회 운영을 다시한번 되돌아 보고 반성, 분석하여 충북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여러가지 어려운 점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교육위원회 심의·의결 기능을 감안하시어 알찬 의안을 적기에 제출함으로써 충북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 3월 29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장 조일환.

● 의사담당 신용건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바로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1시 10분 폐식)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9년 3월 29일 (월요일) 11시 10분

議事日程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10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1학년도 학교설립계획안
5.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6.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8.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홍재문)
2. 제10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 2001학년도 학교설립계획안(교육감 제출)
6.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교육감 제출)
7.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8.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9.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 10분 개의)

● 의장 조일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발언대로 나눔)

1. 경과보고

● 의사과장 홍재문

의사과장 홍재문입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 및 집회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999년 3월 20일 집행청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3월 22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공고 제99-3호로 집회공고 하였으며, '99년 3월 26일 이상일위원님 외 2인 위원님의 공동 발의로 교육기관 방문의 건이 제출되어 금회기 일정에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회기 의결안건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제99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신 바 있는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정용자특별자금차입안은 '99년 3월 10일자로 집행청으로 이송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집행청에서 제출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 2001학년도 학교설립계획안,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의 의안을 조례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각각 구성하시어 심의후 의결하시겠으며 이상일위원님 외 2인 위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교육기관 방문의 건을 의결하신 후 대상기관을 방문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 자리로 돌아감)

2. 제10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 12분)

● 의장 조일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위원님들께 통보한 바와 같이 제10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4월 2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의 의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만, 내일과 모레 2일간은 소위원회 활동과 의안관련 현장방문을 위하여 마지막 날인 4월 2일에는 이상일위원님 외 두분 위원이 공동 발의하신 교육기관 방문의 건이 의결되면 대상기관을 방문하기 위하여 본회

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제10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의사일정(안) : 별첨1
(끝에 실음)

3.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

5. 2001학년도 학교설립계획안

6.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7.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14분)

● 의장 조일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1학년도 학교설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이상 5건을 동일국 소관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청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기획관리국장 조신행입니다.

항상 충북 교육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일환 의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회기에 제출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농촌지역의 학생 수가 급속히 줄어 2,3개 학년이 한 학급으로 복식수업을 받는 학생들에게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학부모들 전체의 사가 조기 통·폐합을 희망하는 음성군 생극초등학교관성분교장과 오생분교장을 폐지하여 생극초등학교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지되는 분교장의 통학 대책으로는 25

[제100회-제1차]

인승 통학버스를 각각 지원하여 통학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 참 조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2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외국인 투자촉진과 지방의 자율 책임성 제고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정부에서는 '99년 1월 21일 지방재정법을 개정 공포하였는 바 이와 관련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 납부 대상 확대입니다.

현행 중요재산의 매각시만 5년 이내의 분할 납부가 가능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간의 업무용 토지 매각시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가, 저소득층에게 소규모 토지 매각시,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 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등에도 매각대금의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매각재산의 종류에 따라 분할 납부기간은 5년 내지 20년으로 하고 이자율도 4%에서 8%로 하고자 합니다.

둘째,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를 인하합니다.

학교급식 실시에 따라 학생들의 급식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급식용 재산은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으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는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25로, 외국인 투자의 활성화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사용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으로 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도 사용료를 투자액과 고용창출 효과, 수출 효과 등에 따라 전액 감면내지 일부 감면하고자 하며, 넷째, 현행 건물의 사용료 산출시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물 부지 사용료를 건물 바닥 면적의 3배에 대한 재산가액으로 산정함으로써 사용자에 게 과도한 사용료를 부담하던 것을 건물의 실제 사용비율에 따라 면적을 계산 납부토록 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대부료, 사용료 및 매각 대금의 연체 비율은 현행 도교육금고의 일반 연체 이자율 연 18%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연 15%로 확정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체 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섯째, 관사사용료의 면제대상자에 시설의 보호 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 참 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3
(끝에 실음)

다음은 2001학년도 학교설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립목적을 말씀드리면 대단위 택지개발지구내 주택 건축으로 인한 교육인구의 집중으로 증가하는 학생의 수용과 과대 학교를 적정규모로 분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생 수용 계획상 청주시 하북대 지구와 개신지구의 택지개발로 학생수가 증가하여 2001학년도에는 인근 학교인 서원중, 가경중, 경덕중학교가 과대해져 학생 수용에 한계가 예상되므로 중학교 1개교를 설립하여 과대화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립계획 학교는 청주시 흥덕구 하북대 택지개발지구 내의 36학급 규모의 가칭 비하중학교를 신설하고자 하며 개교 시기는 2001년 3월 1일자로 예정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확보 부실시공 방지와 견실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을 말씀드리면 설계용역비 2억 4,000만원과 토지매입비 80억 6,993만 5,000원을 19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

영하였으며 건축비 83억 7,923만 8,000원은 교육부의 신설학교 교부금이 확정되는 대로 2000년 당초 예산으로 확보할 예정이고 건축공사는 2000년 12월 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 ▶ 참 조 2001학년도 학교설립계획(안) : 별첨4
(끝에 실음)

다음은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규정에 의거 2001년도 개교 예정인 가칭 비하중학교의 학교부지 1만 5,052㎡,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중·개축하는 충북공고의 공동실습소 900㎡, 청주 상당초등학교 외 8개교의 교실, 계단실, 화장실, 창고 등 9,266㎡, 그리고 충주 양성초등학교의 농촌현대화 시범학교 교실 및 부속시설 4,365㎡, 청주 서원초등학교 독립유치원사 789㎡ 등 총 1만 5,052㎡의 학교부지 매입과 1만 5,320㎡의 건물을 취득하는 것이며 괴산 청안초등학교의 잡종재산인 토지 3,868㎡와 향후 교육 목적으로 활용계획이 없는 폐교 재산인 청원군 문의초등학교소전분교 외 3개교의 토지 4만 7,632㎡, 건물 3,672㎡, 공작물 16종을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00회-제1차]

▶ 참 조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계획(안) : 별첨5

(끝에 실음)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계획서(안) : 별책1

끝으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6,366억 2,045만 6,000원에서 1,122억 4,472만 5,000원이 증액된 7,488억 6,51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으로 보통교부금 32억 6,841만 7,000원, 특별교부금 2억 4,550만원, 증액교부금 37만 7,000원, 지방교육양여금 24억 42만 6,000원, 국고보조금 15억 606만원 등 총 74억 2,078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으로 1999년도 도세 총액의 2.6%인 법정전입금 35억 2,094만 6,000원, 비법정전입금인 자영자 양성고시설비의 1건 5억 500만원 등 40억 2,594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으로 재산수입 3억 1,051만 6,000원, 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분 35억 4,977만 2,000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2,625만원, 1998년도 순세계잉여금 569억 67만 8,000원, 잡수입 1,078만 3,000원, 재정투·융자특별자금 차입 400억원 등 1,007

억 9,799만 9,000원이 증액되어 세입 총액은 1,122억 4,472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관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비 291만 6,000원, 급여관리 462억 8,374만 8,000원, 교육행정비 77억 2,732만 2,000원, 교육사업비 21억 2,859만 9,000원, 학교비 128억 3,380만원, 사학지원비 47억 9,040만원, 시설비 400억 6,466만 5,000원, 제지출경비 7억 2,616만 8,000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23억 1,289만 3,000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 총액 역시 세입예산과 같이 1,122억 4,47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교육공무원의 정년이 65세에서 62세로 조정되어 정년퇴직자 및 명예퇴직자의 증가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정투·융자 특별회계로부터 특별자금 400억원을 차입하였습니다.

이는 제9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주신 바와 같습니다.

또한 2001년 개교 예정인 가칭 비하중학교 토지매입 및 설계용역비로 83억 993만 5,000원과 도내 학교의 교실증축 62.5실, 계단실 증축 15.5실, 화장실 증축 15실, 난방 개선 63실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70억

7,147만원을 학생수용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후 교실 개축 72실, 교원 편의실 확충 9실, 벽체단열 40실, 천정보수 238실, 바닥보수 33실, 이중창 설치 158실, 지붕방수 122실, 난방개선 115실 등 필요한 사업비로 190억원을 계상하였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올바른 식사 습관을 함양하고 가정에서 도시락을 준비하는 부담을 경감하고자 고등학교 급식 시설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현대적 첨단기자재를 완비하여 쉽게 가르치고 즐겁게 학습할 수 있는 교실환경을 조성하고자 25억 594만원을 추가 투자하여 교단선진화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교 전산망 구축비로 26억 1,830만원, 종합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5억 9,709만원, 교원용 컴퓨터 보급 2억 9,016만원, 실습용 컴퓨터 보급 22억 3,652만원, 교육용 소프트웨어 보급 1억 6,570만원 등 모두 59억 777만원을 계상하므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정보화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여 21세기를 대비한 인재육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IMF 실직자 등 경제 사정이 곤란한 자의 자녀 학비지원비로 13억 5,413만원, 결식아동 중식비로 11억 841만원을 계상하였고 통·폐합 되는 농촌지역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본교 폐지 학교는 교당 3,000

만원, 분교 폐지 학교는 교당 2,000만원, 분교장 격하 교는 교당 1,00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 위하여 4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생들이 통학 편의 제공을 위하여 통학버스구입 및 운영비로 3억 9,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증가되는 명예 퇴직수당 및 퇴직수당 부담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투융자 특별회계로부터 부족분을 차입하였으며 1998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는 교육환경 개선 및 수용시설비, 교육정보화 및 교단선진화 사업비, 고교급식 시설비, 통·폐합 학교 교육여건 개선비 등에 중점 투자하고 수업료 인상분으로는 경제사정 곤란자 학비지원과 결식아동 중식지원비에 투자하여 교육현장 계획에 최대 역점을 두었음을 감안하시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모든 교육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별첨6

(끝에 실음)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 별책2

이상으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조일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들은 별도의 소위원회를 각각 구성하여 오늘 오후와 내일 이틀간 심도있는 심의를 하고 또 모레 관련 현장을 방문한 후 4월 1일 있을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별로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8.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9.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

(11시 30분)

● 의장 조일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를 들은 바와 같이 조례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소위원회는 본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여섯분 위원님으로 각각

구성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시다만은 혹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제7항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본인을 제외한 여섯분 위원님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찬가지로 제8항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도 본인을 제외한 여섯분 위원님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금회의 회의록 서명위원은 이상일, 이충원 두분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조례심사소위원회가 있고 내일은 예산·결산소위원회가 있겠습니다.

또한 모레는 의안관련 현장방문이 있겠사오니 의사일정이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집행청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0 출석위원 : 7명

의장 조일환, 부의장 이기수, 위원 김광수, 손만재, 송진하,
이상일, 이충원.

0 출석공무원 : 13명

교육감 김영세,	부교육감 곽창신,	교육국장 최성태,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공보감사담당관 김진성,	중등교육과장이주원,
교원지원과장 유승덕,	교육정보화과장 윤주택,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총무과장 고일영,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시설과장 오형균		

※ 부 록

- ▶ 의사일정(안) : 별첨1
- ▶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 별첨2
-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 별첨3
- ▶ 2001학년도 학교설립계획(안) : 별첨4
- ▶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계획(안) : 별첨5
- ▶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별첨6

※ 별 책 부 록

- ▶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계획서(안) : 별책1
- ▶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 별책2

本 會 議 會 議 錄

忠淸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9년 4월 1일 (목요일) 11시 00분

議事日程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1학년도 학교설립계획안
4.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5.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교육기관 방문의 건

附議된 案件

1.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 2001학년도 학교설립계획안(교육감 제출)
4.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교육감 제출)
5.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6. 교육기관 방문의 건 (이상일위원 외 2인 위원 발의)

(11시 00분 개의)

● 의장 조일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충청북도교육

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는 의안과 관련하여서 음성지역 등
통·폐합 대상학교 두 곳을 방문해 주셨고
교육장과 교육청 관계자 그리고 학교장, 선

생님들, 학부모 대표와 자리를 함께 하면서 통·폐합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솔직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저께 원로(遠路)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본 회기 첫날인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으셨고 조례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여 3일간에 걸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있으며 또한 관련 현장을 다녀오신 바 있는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시겠으며 이상일위원님의 두분 위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교육기관 방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3분)

● 의장 조일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심사소위원회 이상일위원님께서 부터 본 조례안들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일위원님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발언대로 나옴)

●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상일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상일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 6인 위원이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위 2건의 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20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3월 29일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같은 날부터 회의를 갖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교육과정 정상화 및 교육적 효과 증대, 인력 및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화 도모를 위하여 분교장을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고 적정히 작성되

었다고 볼 수 있으나 동 분교장 폐지와 관련한 행정절차에 있어서 행정예고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조례안 제출, 주민 의견수렴 과정의 소홀 등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보며 학기 중간에 통·폐합이 이루어져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차질이 예상되고 교직원의 재배치, 예산 배정상의 문제점 등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향후 소규모 학교 통폐합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학생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제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통·폐합이 불가피하다는데 심사위원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참 조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별첨7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 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주요 내용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심사보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의 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 촉진과 지방의 자

율성, 책임성 제고 및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개정과 개정취지에 적합하다고 하겠습니다.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면 조례개정후 교육재정 수입이 다소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교육재산의 사용 허가와 임대 등과 관련한 각종 자료관리 및 홍보에도 힘써 교육재정 확보에 적극 임해 주시기 바라며 도내 시·군에 있는 소규모 잡종 재산의 관리에 있어서도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 주민 편의 차원과 교육재정 확보 측면에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소수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 참 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
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서 : 별첨8
(끝에 실음)

동료 교육위원 여러분!

짧은 기간임에도 현장방문을 하는 등 적극적인 의안심사를 하여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정 관계관 여러분들도 본 소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조일환

이상일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집행청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1호 안건인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거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또한 본 건에 대하여 이의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호 안건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거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학년도 학교설립계획안

(11시 11분)

● 의장 조일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학년도 학교설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거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학년도 학교설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11시 12분)

● 의장 조일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거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13분)

● 의장 조일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결산소위원회 손만재위원장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만재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발언대로

나옴)

●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손만재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손만재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금회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3월 20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9일 제10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소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3월 30일과 4월 1일 2차에 걸쳐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심사소위원회 일동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재원의 교부목적 이행과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심사기준으로 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6,366억 2,045만 6,000원보다 1,122억 4,772만 5,000원이 증액된 7,488억 6,51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6%가 증가되었으며 기관별 증감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0회-제2차]

세입예산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국고지원금 등 국가부담수입 74억 2,078만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40억 2,594만 6,000원,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 1,007억 9,799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육위원회 291만 6,000원, 본청 677억 4,549만 6,000원, 지역교육청 468억 920만 6,000원 증액과 예비비 23억 1,289만 3,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계속하여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은 교육공무원 인건비 조정에 485억 7,274만 8,000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190억 6,489만 2,000원, 신설학교토지매입비 및 설계비에 83억 993만 5,000원, 고등학교 급식시설에 20억원, 수용 및 일반시설비에 123억 746만 9,000원, 교단선진화에 25억 594만 5,000원, 학교전산망 구축에 26억 1,830만원, 실습용 컴퓨터 보급에 22억 3,652만원, 결식아동 중식지원비에 11억 841만 3,000원, 교육환경조성비에 17억 9,600만원, 경제사정곤란자 학비감면에 13억 5,413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청사보수 사업비로 14억 2,128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일선 교육현장의 시급한 사업과 경제난에 의한 교육재정의 실태를 감안하여 볼 때 보다 시급한 사업에 투자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어 13억 7,428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의견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및 양여금 조정, 재정용자특별자금차입,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부담금 편성,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및 일반회계전입금 사업계상, '98.순세계잉여금의 사업계상 등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는 바 삭감조정하기로한 본청 보수시설비 13억 7,428만원을 향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 시급한 학교의 교육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식학생에 대한 지원에 있어 소요예산이 부족하여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등 유관기관, 그리고 지역사회 등과의 적극적 협조를 모색하여 결식학생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학습교재를 매년 예산에 편성하여 개발 보급하고 있으나 일선 학교에서는 그 활용이 미흡하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보다 활용이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기 바라

며 지붕방수, 화장실보수 등의 학교건물 보수예산이 교육재정에 큰 부담이 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학교 신·개축시 각종 공사감독 및 학교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심사의결에 따라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는 바 수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삭감이유와 내용이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보고서에 첨부된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사위원 모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으며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 참 조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별첨9

(끝에 실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함께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어 본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기까지 애쓰신 집행청 관계관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조일환

손만재위원장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본 의안을 심도있고 충실하게 심의하시고 또한 걱정한 수정안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소위원회 손만재위원장님께서, 원안에 대하여는 집행청 관계관께서 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있으시거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수정안과 교육감 제출 원안에 대하여 각각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수 5명)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표결결과 다섯분 위원님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본인을 포함하여 만장일치

로 수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따라서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세입·세출 각각 7,488억 6,518만 1,000원으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교육기관 방문의 건

(11시 24분)

● 의장 조일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교육기관 방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 위원을 대표하셔서 이상일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일위원 발언대로 나옴)

● 이상일 위원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교육기관 방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본인 외 두분의 위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방문대상기관은 청주시내 분평개발 지구에 위치한 충북전산기계고등학교와 청주시 수동 옛 교동초등학교 부지인 과학교육원 신축 현장입니다.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에 신축 개교한 충북전산기계고등학교의 전반적인 교육시설과 학교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교육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한 의정활동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축 이전을 위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과학교육원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에게 공사 진척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는 한편 공사와 관련하여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등의 전반적인 현황을 두루 살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문 일자는 4월 2일이며 출발시간 및 방문순서, 시간 등 자세한 일정은 별도 협의된 바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외 두분 위원이 공동 발의한 교육기관 방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일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조일환

이상일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교육기관 방문의 건에 대하여 이의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기관 방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방금 의결하신 바와 같이 충북전산기계고등학교와 과학교육원 신축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산회하고 나면 내일은 본회

<p>의가 없으므로 교육기관을 방문하고 나면 금번 제100회 임시회는 자동으로 폐회가 되겠습니다.</p> <p>뜻 깊은 100번째 회기 마지막 날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p>	<p>다.</p> <p>아울러 집행청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p> <p>이상으로 제10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p> <p>(11시 28분 산회)</p>
---	--

0 출석위원 : 6명

의장 조일환, 위원 김광수, 손만재, 송진하, 이상일, 이충원.

0 출석공무원 : 12명

교육감 김영세, 교육국장 최성태,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공보감사담당관 김진성, 중등교육과장 이주원, 교원지원과장 유승덕,
 교육정보화과장 윤주택,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총무과장 고일영,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시설과장 오형균.

※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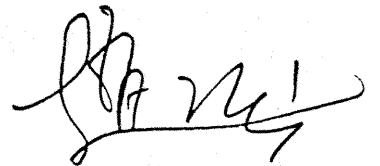
- ▶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별첨7
-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별첨8
- ▶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별첨9

제10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1999.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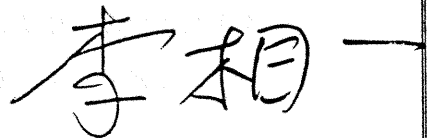
의 장

조 일 환



위 원

이 상 일



위 원

이 충 원



의사국장

강 인 형



(별첨 1)

議 事 日 程

第100回 忠淸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1999. 3. 29. ~ 4. 2. (5일간)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99. 3. 29. (월) 10:30 11:00	<input type="checkbox"/> 교육위원 협의회 : 교육위원실 <input type="checkbox"/> 개회식 [제1차 본회의 개의] 1. 제10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기 : 1999. 3.29. ~ 4.2. (5일간) 2.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4. 2001학년도 학교설립계획안(제안설명) 5.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제안설명) 6.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제안설명) 7.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8.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 [제1차 본회의 산회] <input type="checkbox"/> 소위원회 활동 : 조례심사소위원회	
3. 30. (화)	<input type="checkbox"/> 소위원회 활동 : 예산·결산소위원회	본회의 휴회
3. 31. (수)	<input type="checkbox"/> 의안관련 현장방문 - 통·폐합 대상교 : 음성 생극초등 관성·오생분교장	"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99. 4. 1.(목) 10:30 11:00	<input type="checkbox"/> 소위원회 활동 : 조례심사 및 예산·결산소위원회 [제2차 본회의 개의] 1.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1학년도 학교설립계획안 4.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5.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6. 교육기관 방문의 건(위원발의) [제2차 본회의 산회]	
4. 2. (금)	<input type="checkbox"/> 교육기관 방문 : 충북전산기계고·과학교육원 신축지 ※ 폐 회	본회의 휴회

(별첨 2)

의안번호	제 100-1 호
의 결 년 월 일	1999. 3 . . (제 회)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1999. 3 . 20 .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0 - 1
------	---------

제출년월일 : 1999. 3. 20.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관련부서 : 기획관리과

개정사유

- 농촌지역의 학생수가 급속히 줄어 2-3개 학년이 한 학급으로 복식수업을 받는 소규모학교 학생들에게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

주요골자

- 분교장폐지(2분교장)

명 칭	위 치	폐지년월일	폐지사유
생극초등학교 관성분교장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 13	'99. 5. 1.	농촌교육발전을 위한 소규모학교 통폐합
생극초등학교 오생분교장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생리 570	'99. 5. 1.	

개정근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
- 농촌교육발전을 위한 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

조 례 안 : 덧붙임

참고사항 : 덧붙임

- 신구조문대조표
- 관계법령발췌서
-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지침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초 등 학 교 (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주 상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동 48-1번지
교 동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084번지
용 암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103번지
상 당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062번지
석 교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10번지
중 앙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4번지
청 남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127번지
덕 성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울랑동 656번지
울 량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울랑동 1034번지
우 암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137번지
덕 별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261-10번지
용 담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186번지
용담초등학교현양원분교장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71-1번지
청주내덕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내덕2동 61번지
금 천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213-1번지
북 일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428번지
운 등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운등동 430번지
새 터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200번지
원 봉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328번지
한 별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1동 560번지
남 성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219-1번지
서 원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977번지
복 대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709-4번지
모 충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372번지

명 칭	위 치
운 천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543-7번지
흥 덕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865번지
창 신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351번지
사 직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2동 38-4번지
강 서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121-1번지
내 곡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내곡동 10-2번지
서 촌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서촌동 183번지
봉 명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봉명1동 205번지
봉 정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봉명2동 2141번지
한 슬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322번지
수 곡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779번지
가 경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443번지
풍 광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172번지
분 평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분평택지개발지구 내 A-38L
경 산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13번지
원 평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분평택지개발지구 내 A-48L
경 덕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04번지
죽 천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하복대택지개발 지구내 2-28L
남 평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209번지
충주교현초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1동 339-1번지
충주성남초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1동 293번지
충주예성초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2동 383-1번지
충주남산초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용산동 2109번지
충주삼원초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봉방동 11-1번지

명 칭	위 치
단 월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단월동 513-19번지
목 행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목행동 577-1번지
달 천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용두동 410-1번지
달천초등학교 매현분교장	충청북도 충주시 이류면 매현리 480번지
남 한 강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문화동 1924번지
충주대림초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문화동 181번지
충주중앙초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1003번지
연 수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1232번지
탄 금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824번지
칠 금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727번지
충주용산초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용산동 1671번지
세 성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세성리 147번지
세성초등학교 공이분교장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공이리 448-1번지
수 안 보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상모면 안보리 598번지
수 회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상모면 수회리 672번지
대 소 원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이류면 본리 569-15번지
주 덕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증리 72번지
덕 신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제내리 265-1번지
용 원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용원리 245-3번지
동 락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문락리 126번지
노 은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연하리 535-2번지
수 상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안락리 119-1번지
양 성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양성면 용대리 258-1번지
강 천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양성면 목미리 89-2번지
능 암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양성면 둔산리 11-5번지
가 금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212-1번지

명 칭	위 치
가 흥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가금면 가흥리 582-8번지
금 가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도촌리 400-1번지
오 석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유송리 226-3번지
동 량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1426-1번지
동량초등학교 서운분교장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서운리 155번지
대 미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517번지
산 척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승강리 1282-1번지
엄 정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용산리 460번지
목 계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목계리 111번지
소 태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오량리 199번지
야 동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야동리 487번지
명 명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명동 68번지
의 림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동 186번지
남 당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영천2동 255-12번지
남 천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남천동 260번지
화 산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화산1동 606번지
홍 광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모산동 396-1번지
두 학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흑석동 436번지
명 지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명지동 48-1번지
제천중앙초등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동 625번지
응 두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405번지
신 백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신백동 212-7번지
봉 양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연박리 921번지
봉양초등학교 봉남분교장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마곡리 540번지
왕 미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미당리 757번지

명 칭	위 치
공 전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공전리 265번지
금 성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구룡리 294번지
청 풍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144-3번지
수 산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내리 168-2번지
덕 산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도전리 425번지
한 승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한수면 승계리 753번지
백 은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 600번지
화 당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화당리 84-1번지
승 학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승학면 시곡리 1164번지
입 석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승학면 입석리 609-2번지
남 성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남성면 이목리 108-1번지
남성초등학교 갈산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남성면 갈산리 341-1번지
미 원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 298-3번지
미원초등학교 옹곡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옹곡리 291번지
미원초등학교 종암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종암리 387번지
미원초등학교 기암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기암리 251-1번지
금 관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금관리 306-1번지
가 덕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병암리 125번지
가덕초등학교 상야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상야리 351-1번지
행 정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행정리 29-1번지
남 일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쌍수리 321-33번지
신 승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신승리 411번지
동 화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화당리 361-1번지
두 산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두산리 106-1번지
남 이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대련리 255번지

명 칭	위 치
갈원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갈원리 143-1번지
문의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미천리 228번지
도원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두모리 243번지
현도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 달계리 548-1번지
옥포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 죽전리 622-4번지
부강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432-3번지
외천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외천리 294번지
강내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다락리 348-1번지
강의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강의면 오송리 60-1번지
상봉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강의면 상봉리 242-1번지
만수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강의면 만수리 163번지
옥산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223번지
옥산초등학교 호죽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호죽리 300-3번지
소로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소로리 313-1번지
오창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장대리 238번지
가좌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가좌리 129번지
각리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각리 28-3번지
유리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유리 394번지
북이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 내추리 10-2번지
석성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 내둔리 344번지
대길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 대길리 228번지
내수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북일면 마산리 171번지
비상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북일면 비상리 200번지
수성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북일면 내수리 263-1번지
구성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북일면 구성리 265번지

명 칭	위 치
삼 산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156-3번지
삼산초등학교 동정분교장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동정리 20-1번지
삼산초등학교 중초분교장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중초리 408번지
동 광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54-1번지
종 곡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강신리 54번지
학 림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중동리 9-1번지
수 정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181번지
수정초등학교 법주분교장	충청북도 보은군 내속리면 상판리 210번지
수정초등학교 북암분교장	충청북도 보은군 내속리면 하판리 43번지
수정초등학교 삼가분교장	충청북도 보은군 내속리면 삼가리 140번지
속 리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외속리면 장내리 243번지
관 기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 294번지
세 중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세종리 575-2번지
탄 부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덕동리 63번지
탄부초등학교 사직분교장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사직리 151번지
삼 승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상가리 333번지
판 등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내망리 536-1번지
송 죽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송죽리 192-4번지
수 한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소계리 35번지
회 남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회남면 거교리 249번지
회 인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회북면 중앙리 96번지
내 북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동산리 119번지
내북초등학교 아곡분교장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상궁리 46-2번지
산 외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구티리 52-2번지
산외초등학교 장갑분교장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장갑리 318번지

명 칭	위 치
죽향초등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83번지
삼양초등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마암리 5-1번지
근남초등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서대리 279번지
동이초등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평산리 72-1번지
동이초등학교 우산분교장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833-1번지
안남초등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 연주리 416번지
안내초등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현리 171번지
청성초등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산계리 234번지
청성초등학교 모금분교장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모금리 19-1번지
청성초등학교 화성분교장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화성리 295-1번지
능월초등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도장리 496번지
청산초등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지전리 34번지
이원초등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14-7번지
지탄초등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지탄리 754-1번지
대성초등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의평리 276-2번지
군서초등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동평리 551번지
증약초등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641번지
증약초등학교 대정분교장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대정리 577번지
영동초등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674-4번지
이수초등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485번지
부용초등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225번지
화곡초등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주곡리 44-1번지
구룡초등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구촌리 141-1번지
황간초등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남성리 167-1번지
웅암초등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웅암리 642번지

명 칭	위 치
노 승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700번지
추 풍 령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추풍령면 추풍령리 375-1번지
매 곡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노천리 54번지
상 촌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임산리 357-1번지
양 강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묘동리 331-2번지
미 봉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유점리 697-3번지
웅 화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웅화면 웅화리 760번지
학 산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서산리 738-1번지
학산초등학교 봉산분교장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봉산리 563-1번지
범 화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범화리 748-1번지
양 산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가곡리 293-2번지
심 천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심천리 528번지
초 강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초강리 459번지
진천상산초등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357-1번지
진천삼수초등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333-1번지
진천삼수초등학교 매산분교장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산수리 465-1번지
성 암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679-2번지
이 월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 452-4번지
학 성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종산리 597-7번지
금 구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 579번지
옥 동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359-2번지
한 천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용몽리 518-3번지
한천초등학교 두촌분교장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100번지
초 평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금곡리 593번지
구 정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용산리 236-1번지
구정초등학교 오상분교장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 290-1번지

명 칭	위 치
문백초등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봉죽리 297번지
문상초등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사양리 38-1번지
백곡초등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구수리 144번지
만승초등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만승면 광혜원리 79번지
상신초등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신월리 330-18번지
괴산명덕초등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335번지
등인초등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485번지
감물초등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감물면 오성리 81-1번지
장연초등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 349번지
광진초등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광진리 814-1번지
연풍초등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삼풍리 162번지
철성초등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철성면 도정리 311번지
외사초등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철성면 외사리 152번지
문광초등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광덕리 294번지
청천초등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청천리 77-1번지
청천초등학교 신월분교장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신월리 144번지
송면초등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송면리 116-2번지
덕평초등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덕평리 280번지
청안초등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읍내리 221번지
백봉초등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부흥리 428번지
백봉초등학교 장암분교장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장암리 401번지
증평초등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읍 증평리 1056번지
죽리초등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읍 죽리 308번지
삼보초등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읍 초중리 1105-2번지
도안초등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도안면 화성리 87번지
보광초등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사리면 사담리 576-1번지

명 칭	위 치
보광초등학교 화곡분교장	충청북도 괴산군 사리면 이곡리 452번지
보광초등학교 백마분교장	충청북도 괴산군 사리면 중흥리 1-1번지
소수초등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소수면 수리 554번지
목도초등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목도리 290번지
추산초등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추산리 575-1번지
수봉초등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209번지
남신초등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757-6번지
남신초등학교 덕생분교장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삼생리 94번지
평곡초등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815번지
무극초등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86번지
웅천초등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0번지
오선초등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오선리 233-2번지
쌍봉초등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쌍봉리 413번지
소이초등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금고리 68번지
대장초등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대장리 374번지
원남초등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보룡리 371번지
원남초등학교 문암분교장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문암리 593번지
하당초등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하당리 433번지
맹동초등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 94번지
대소초등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 186-1번지
부윤초등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부윤리 392번지
삼성초등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508-1번지
능산초등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능산리 203번지
청룡초등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청룡리 352-7번지
생극초등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신양리 451-1번지

명 칭	위 치
감 곡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 489-2번지
상 평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상평리 344번지
오 갑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오궁리 2-1번지
원 당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원당리 159번지
단 양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도전리 405번지
단양초등학교 금곡분교장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기촌리 107번지
상 진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734번지
상진초등학교 적성분교장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하리 59번지
단 천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북상리 108번지
단천초등학교 가산분교장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가산리 290번지
대 강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91번지
대강초등학교 장정분교장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장정리 30번지
가 곡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467번지
가곡초등학교 보발분교장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보발리 711-1번지
가곡초등학교 대곡분교장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대대리 220-1번지
영 춘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상리 640번지
영춘초등학교 의풍분교장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의풍리 760번지
영춘초등학교 동대분교장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 806번지
별 방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별방리 540번지
어 상 천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어상천면 임현1리 456-1번지
어상천초등학교 선암분교장	충청북도 단양군 어상천면 석교1리 69번지
매 포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2리 271번지
가 평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가평리 181-2번지
대 가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대가리 191번지

초등학교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계		정		안	
명	칭	위	칭	명	칭	위	칭	위	칭
	주성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동 48-1번지		()		()		()
	() 생	()	()		()		()		()
	생극초등학교관성분교장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 13번지		()		()		()
	() 생	()	()		()		()		()
	생극초등학교오생분교장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생리 570번지		()		()		()
	() 생	()	()		()		()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41조(교육기관의 설치) ① 교육감은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추진 지침

□ 통·폐합 추진기준

○ 초등학교

- 본 교 - 학생수 100명 이하
- 분교장 - 학생수 20명 이하
- 1면 1본교 유지원칙
벽지 등 특수한 지역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추진

○ 중 학교

- 학생수 100명 이하

○ 고등학교

- 학생수 100명 이하

□ 통·폐합 추진시기

- 2000년 통·폐합 예정교는 금년 중 통·폐합 실시
- 2001년 이후 통·폐합 계획교도 최대한 기간을 단축하여 실시

(별첨 3)

의안번호	제 100-2호
의 결 년 월 일	1999. . . (제 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1999. 7. 20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0-7

제출년월일 : 1999. 3. 20.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제안사유

- 외국인투자촉진과 지방의 자율·책임성의 제고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 정부에서는 지난 '98. 7. 16.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개정하고 '99. 1. 21. 지방재정법을 개정 공포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 납부대상 확대 (안 제22조)
 - 현행 중요재산의 매각시만 분할 납부가 가능하나
 - 지방자치단체간의 업무용 토지 매각시
 -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 점유 사용자에게 매각할 때
 -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가, 저소득층에게 소규모토지를 매각할 때
 -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한 경우 등을 추가하여 경제 여건으로 인한 매각대금의 연체 및 이자 부담을 줄이고자 함.
-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인하 (안 제23조)
 - 학교급식 실시에 따라 학생들의 급식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급식용 재산은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으로
 -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는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25로
 - 외국인투자의 활성화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이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대부료를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으로 인하하고자 함.

○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 특례 인정 (안 제23조의3)

- 공유재산 사용시 사용료 감면

- 전액감면 : 외국인 투자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제조업, 고용창출 효과가 300명 이상인 제조업, 전체 생산량의 50%이상 수출하는 업체로 부 품은 100% 국내에서 조달하는 외국 기업 등
- 일부감면 : 전액감면에 비하여 투자액 및 고용 효과 등이 낮은 외국인 기업을 대상으로 차등 적용

○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산출방식 개선 (안 제25조)

- 현재까지 건물의 사용료 산출시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건물부지 사용료를 건물바 닥 면적의 3배에 대한 재산 가액으로 산정하여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부 담하게 함에 따라 과도한 사용료 납부에 따른 부담이 있었으나 건물의 실제사용 비율에 따라 면적을 계산 사용료를 납부토록 하여 사용인의 부담을 경감코자 함.

○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규정 (안 제28조)

- 현행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은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율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은행의 종류별 연체요율이 상이하고 수시 변경됨에 따라 연체요율 기준 을 15퍼센트로 규정함.

○ 관사 사용료 면제대상 확대 (안 제52조)

- 현행 관사 사용료를 면제하는 대상이
 -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 관사를 일시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로 되어 있으나
 -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함.

개정근거

- 지방재정법 개정('99. 1. 21)
-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98. 7. 16)
- 교육부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관련 조치('98. 11. 7)

조례안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관련법규발췌 : 별첨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을 “부동산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7조제5항제2호중 “재무과장”을 “관리국장”으로 하고 괄호안의 “및 각 업무담당주사, 업무담당장학사”를 삭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파악) 총괄재산관리관은 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88조제1항제10호, 제89조, 제90조제1항제2호, 제91조제3항, 제92조의2, 제95조제2항제27호, 제96조제10항, 제100조제2항제5호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0조의3(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 등)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 지역내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6.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공유재산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때
2.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지구안에 있는 토지중 도지사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②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제36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3.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③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95조제2항제6호, 제11호,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 매각하는 때
3. 교육감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교육감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4.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때

④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원의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인구의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4.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제23조제1항중 “1000분의 30으로”를 “1000분의 25로”로 하고, 동조 제2항중 “토지과세가표준액”을 “토지시가표준액”으로 하며, 동조 제5항을 삭제하고, 동조에제6항내지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

⑦ 영 제92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이 대부료등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교육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학교의 학교급식용으로 사용되는 재산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
2. 교육감이 교육행정목적, 교육지원사업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되는 재산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
3. 재산관리관이 위탁하는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사용되는 재산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

⑧ 영 제8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⑨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기술연구 집단화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와 개발사업시행자, 기술연구집단화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3(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영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 기업에 공장건설 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액감면을 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수반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 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

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

다. 고용창출 효과가 300명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외국인 투자사업

마.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2. 75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 2천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나. 고용창출 효과가 200명이상 300명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라.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

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3.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이상 1천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나. 고용창출 효과가 100명이상 200명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 비율이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라.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으로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사. 제20조의3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단지내 또는 아파트형 공장내의 공유 재산

제24조제4항중 “인근의 매매 실례조서, 사정정통단체, 조합”을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으로 한다.

제2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물 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당해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의 건물사용자가 전용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4.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당해 재산의 평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begin{array}{l} \text{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 \text{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end{array} \times \frac{\begin{array}{l} \text{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 \text{사용하는 면적} \end{array}}{\begin{array}{l} \text{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 \text{전용으로 사용하는 총 면적} \end{array}}$$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대부료등의 납기) ①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1년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60일이내로 한다.

③경작목적으로 대부한 농지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수입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종료 연도의 대부료는 대부기간 종료전에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금) ①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

②교육감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

제3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폐교·폐과등으로 교육활동 목적을 상실한 공유임야는 공공목적이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수의계약 매각범위등) ①영 제95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 10,000제곱미터 이하까지 매각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5년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중인 농지로서 당해 경작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로 한다.

③영 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을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토지(시의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7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폐구거, 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기존 공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소유자나 산업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한다.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제45조중 “본청 및 청·소의 장 또는 간부직공무원”을 “교육감, 부교육감, 청·소의 장 및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사용료의 면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제23조의3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6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생략)</p> <p>1. 보상금액은 <u>부동산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 한 가액이 5백만원 이하까지는 100분의 20까지로 하고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금액에 100분의 2를 추가 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 서 조정할 수 있다.</u></p>	<p>제6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현행과 같음)</p> <p>1. <u>부동산시가 표준액에</u></p>
<p>제7조(공유재산심의회) ①~④ (생략)</p> <p>⑤ (생략)</p> <p>1. (생략)</p> <p>2. 위원장은 <u>교육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 리과장(단, 청주교육청은 재무과장)이 되 며, 위원은 각 업무담당주사, 업무담당장 학사(단, 청주교육청은 각 과장 및 각 업 무담당주사, 업무 담당장학사)가 된다.</u></p> <p>3~4.(생략)</p>	<p>제7조(공유재산심의회) ①~④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u>관리국장</u> <u>(삭 제)</u></p> <p>3~4.(현행과 같음)</p>
<p>(제10조)<u>(재산증감 및 현재액 파악) 공유재산 의 종류별로 증감부를 비치하고 재산의 증 감 및 변동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현재 액을 상시 파악하여야 한다.</u></p>	<p>제10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파악) <u>총괄재산 관리관은 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매 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u></p>
<p>(제20조)<u>(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대부분 잠종 재산상에 영구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만, 영구시설물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부채납 또는 철거한다는 규정을 계약서상 에 명백히 규정하여 재산의 회수활용에 지 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u></p>	<p>제20조(삭 제)</p>
<p><신 설></p>	<p>제20조의2(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u>영 제88조 제1항제10호, 제89조, 제90조제1항제2호, 제91조제3항, 제92조의2, 제95조제2항제27호 제96조제10항, 제100조제2항제5호 규정에 의 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 진법을 준용한다.</u></p>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20조의3(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등)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서 설립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 지역내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6.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공유재산
<p>제22조(재산매각대금의 납부등) ①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액을 일시에 전액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대금의 1할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납토록 하여야 한다.</p> <p>②중요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계약체결 당시 결정 고시한 시중은행의 일반여신금리에 의한 이자를 붙여 5년이내의 기간으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때에는 계약시 계약보증</p>	<p>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영 제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때 2.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지구안에 있는 토지중 도시사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

현행	개정안
<p>금으로 대금의 1할과 1회 분납금으로 대금의 2할이상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에 의한 이자율이 영 제100조제1항에서 정한 이자율의 하한율에 미달할 경우에는 하한율을 적용하고 상한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상한율을 적용한다.</p>	<p>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p> <p>②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제36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3.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p>③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95조제2항제6호, 제11호,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 매각하는 때 3. 교육감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교육감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4.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때 <p>④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원의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에 관

현행	개정안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2. 교육감이 교육행정목적, 교육지원사업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되는 재산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p> <p>3. 재산관리관이 위탁하는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사용되는 재산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p> <p>⑧영 제8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p> <p>⑨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기술연구집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기술연구집단지 단지의 지정을 받은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p> <p>제23조의3(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영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율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p> <p>1. 전액감면을 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p> <p>가.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수반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p>

연	행	개	정	안
				<p>나. <u>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u></p> <p>다. <u>고용창출 효과가 300명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u></p> <p>라. <u>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외국인투자사업</u></p> <p>마. <u>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u></p> <p>바. <u>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u></p> <p>사. <u>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u></p>
				<p>2. <u>75퍼센트를 감면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u></p> <p>가. <u>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u></p> <p>나. <u>고용창출 효과가 200명이상 300명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u></p> <p>다. <u>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u></p> <p>라. <u>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u></p> <p>마. <u>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u></p> <p>바. <u>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u></p>

현행	개정안
<p>제24조(토석채취료등) ① ~ ③(생략)</p> <p>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u>인근의 매매실례조서, 사정정통단체,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u></p> <p>⑤(생략)</p> <p>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생략)</p> <p>1. <u>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건물의 부지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구획이 명백한 토지를 말함. 다만,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와 부지면적이 광할하여 부지면적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바닥면적의 3배에 해당되는 토지를</u></p>	<p>3.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p> <p>가. <u>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u></p> <p>나. <u>고용창출 효과가 100명이상 200명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u></p> <p>다. <u>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u></p> <p>라. <u>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 미만으로 수출하는 사업</u></p> <p>마. <u>가목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u></p> <p>바. <u>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u></p> <p>사. <u>제20조의3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단지내 또는 아파트형 공장내의 공유재산</u></p> <p>제24조(토석채취료등) ① ~ ③(현행과 같음)</p> <p>④..... <u>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u></p> <p>⑤(현행과 같음)</p> <p>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현행과 같음)</p> <p>1. <u>건물 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당해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의 건물사용자가 전용하는 토지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u></p>

현행	개정안
<p>건물부지로 본다) 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p> <p>2. ~ 3. (생략)</p> <p><신설></p>	<p>2. ~ 3. (현행과 같음)</p> <p>4.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당해 재산의 평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p> <p>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p> $\frac{\text{대부분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text{대부분 받은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times \text{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 면적}$
<p>제26조(대부료등의 납기) ①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이하 "대부료"라 한다)는 당해 연도분을 다음에 기재한 납기내에서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체결 및 사용허가연도의 대부료는 계약체결 및 사용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p> <p>1.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11월 1일부터 11월말이내</p> <p>2. 경작이외의 목적으로 대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대부계약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p> <p>② 계약 및 사용허가 종료의 연도에 있어서도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부 및 사용허가기간 종료전에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p>	<p>제26조(대부료등의 납기) ①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p> <p>③경작목적으로 대부한 농지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수입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종료 연도의 대부료는 대부기간 종료전에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p> <p>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p>
<p>제28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지방자치단체</p>	<p>제28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p>

현행	개정안
<p><u>의 교육비특별회계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연체 이자율을 준용한다.</u></p>	<p><u>연 15퍼센트로 한다.</u> <u>②교육감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연체 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u></p>
<p>제3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경제성, 장래의 활용 가능성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리하여야 한다.</p> <p><u>< 신설 ></u></p>	<p>제33조(처분의 제한)</p> <p>.....</p> <p>.....</p> <p>.....</p> <p><u>다만, 폐교·폐과등으로 교육활동 목적을 상실한 공유임야는 공공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u></p>
<p>제36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u>영 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u></p> <p>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토지(시지역에서는 300㎡이하, 기타지역에서는 400㎡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p> <p>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폐구거, 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기존 공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도</p>	<p>제36조(수의계약 매각범위등) ①영 제95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 10,000제곱미터 이하까지 매각하는 때</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5년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중인 농지로서 당해 경작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로 한다.</p> <p>③영 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을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토지(시의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7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p> <p>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폐구거, 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기존 공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소유자나 산업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에</p>

현행	개정안
<p>지 소유자나 산업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한다.</p>	<p>는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한다.</p> <p>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 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환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p>
<p>제45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행정재산으로서 <u>본청 및 청·소의장 또는 간부직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된 공용주택(공용전세주택 포함)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u></p>	<p>제45조(정의) <u>교육감, 부교육감, 청소의 장 및 소속공무원</u></p>
<p>제52조(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 ① 관사를 사용한자는 매월 봉급지급일 다음날까지 당해 재산 평정가액의 100분의 6 범위내에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관사입주 첫달과 마지막달의 사용한 날을 기준한다.</p> <p>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p> <p>1. <u>사용대상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u></p> <p>2. <u>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u></p>	<p>제52조(사용료의 면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p> <p>1. <u>사용대상 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u></p> <p>2. <u>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u></p> <p>3. <u>시설의 보호·감시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u></p>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제 23조의3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p>

관련법규발췌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재정운영상황의 공개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회계년도마다 1회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잡종재산의 대부) ①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대부신청자가 2인이 상인 때에는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
2.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실경작자에게 대부하는 때
3.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을 대부하는 때.
4. 임야를 목축, 공업, 채석 등의 목적으로 대부할 때
6.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한 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경우 그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당해 재산을 대부할 때
7.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할 때
8.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대부할 때
9. 유휴 잡종재산을 6월 이내의 기간동안 사용할 목적으로 대부할 때
10.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때
11.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 싸인 부지를 대부하는 때
12. 건축이 불가능한 소규모 자투리부지로서 이해관계가 있는 인접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그 부지를 대부하는 때
13. 재산평가액이 1천만원이하인 재산을 대부하는 때
14. 2회에 걸쳐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

제89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법 제82조제1항 및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는 허가 또는 대부받은 재산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재산의 관리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기부를 조건으로 한 축조 및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한 축조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대부기간 또는 사용·수익 허가기간의 만료시 기부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공장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0조(잡종재산의 대부기간) ①잡종재산의 대부는 다음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삭 제>

2. 토지와 정착물은 5년.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토지와 그 정착물을 대부하는 때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토지와 그 정착물을 대부하는 때는 20년

3. 기타의 물건은 1년

② 제1항의 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제91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매년 정기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 또는 사용초년분과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건설한 공장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최초로 준공된 공장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2조의2(대부료 등의 감면) 9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공유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아 외국인 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의 공유재산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의 공유재산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대부분로 감면대상지역의 범위를 정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공유재산

제95조(잡종재산의 매각) ①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1.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제2항 각호의 수의계약 매각사유에 해당하는 때
3. 기타 규모, 형상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산재한 잡종 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하여 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때

②잡종재산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2. 농경지를 대부분은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매각하는 농경지의 범위·면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삭 제
4. 제88조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부계약의 조건에 따라 대부 재산을 그 대부를 받은 자에게 매각할 때
5. 예정가격이 1건당 1천만원이하의 재산을 매각할 때
6.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한 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경우 그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당해 재산을 매각할 때. 이 경우 매각하는 재산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7.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위치와 형태가 건축부지로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그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철거주민에게 주거용으로 재산을 매각할 때
9.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 대상자에게 매각할 때
10. 관광진흥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을 입주계획에 따라 소정지구에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할 때
11.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지원 또는 권장하기 위하여 주택 또는 공공 이용시설부지로 사용하게 될 재산을 마을주민에게 매각할 때
12.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에 의하여 재산의 매각을 비밀히 할 필요가 있을 때
13. 천재, 지변 기타 재해가 발생하여 재해복구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할 때
14. 인구분산정책에 따른 정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을 매각할 때
15. 주식의 매각을 증권업자에게 위탁할 때
16. 지방자치단체가 취급하던 업무에 제공되고 있던 재산을 이관받는 자에게 매각하고자 할 때
17. 지방자치단체가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어린이 육영단체에 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
18. 지방공기업법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 지방행정 공제회에 그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19.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할 때
 20. 도시계획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가 정하여진 토지를 그 정하여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매각 하는 때
 21. 사 제
 2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지정하는 농공단지등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집단복지공장이 직접 사용할 업무용 토지를 매각할 때
 - 22의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휴양지 개발로 조성된 재산을 농어민에게 매각할 때
 23. 재공고 입찰에 붙인 경우에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
 24.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의한 도서벽지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를 폐지하는 경우 그 학교재산을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청소년교육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사업을 위하여 매각하고자 할 때
 25.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등으로 보아 일반경쟁 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 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때
 26.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점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27.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 제96조(잡종재산가격의 평정등) ①잡종재산을 매각 또는 교환하는 경우의 당해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2이상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설립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에 의뢰하여 평가한 평가액을 포함한다)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이 있을 때에는 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의 노후 또는 지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당해 재산의 가격이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상회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재산가격이 300만원(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지역에 있어서는 1천만원)미만으로 추정되는 재산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할 수 없는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가격을 결정하는 때에는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고, 그 평정조서에는 평정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감정서 및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참고가 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로부터 1년내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10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당해 재산의 가격으로 한다.

⑦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 또는 토지수용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당해 사업의 사업시행자 또는 기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법률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액을 당해 재산의 매각가격으로 한다.

⑧공유림을 대부받아 조림·산림사업시설·초지조성 또는 기타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 대부지를 교환하는 경우 임야가격의 평정 등에 관하여는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 1항중 “공유재산”은 “공유림”으로, “매각”은 “교환”으로 보고, 동조 제3항중 “매수”는 “교환”으로 본다.

㉑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간에 재산을 이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가격은 유상이관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중 1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만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이관의 경우에는 당해 공유재산의 대장가격으로 한다.

㉒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가격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하거나 그 재산가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0조(대금납부와 연납) ①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 5퍼센트 내지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 3퍼센트 내지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할 때
2. 전원개발·다목적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3.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인구의 분산정책에 따른 정착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법인세 등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재산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3.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13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매각) ①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공장 기타 국·경유제신(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관계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대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동법 제36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동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0년의 범위내로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 및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동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토지위에 공장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토지 등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동법 제38조 및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동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필요한 때에는 이를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소유의 토지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장배치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6조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 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있는 토지등
 2.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있는 토지등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업단지"라 한다)에 있는 토지등
-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 및 동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 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⑧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는 토지등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의 토지등인 경우 그 임대기간은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50년의 범위내로 할 수 있다.
- ⑨제2항 및 제8항의 임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2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아파트형공장) ① - ④ 생략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조성원가로 취득하여 그 국·공유지에 아파트형공장을 건설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건설원가로 분양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부료로 임대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원가로 분양을 받은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는 이를 매각할 수 없다. 다만, 파산등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1 국가산업단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지역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산업단지로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 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업단지의 지정후에 제3호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또는 제8호의 사항을 정하여 이를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4. 사업시행방법
5. 주요유치업종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7. 자원조달계획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7조(지방산업단지의 지정) ①지방산업단지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방산업단지의 지정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지방산업단지를 지정함에 있어서 그 면적이 대통령이 정하는 면적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없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지정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6조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과정에서 관계기관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정을 요청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농공단지의 지정) ①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농공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농공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8조의4(외국인을 위한 산업단지의 지정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통상산업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을 위한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개발되는 외국인을 위한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아 외국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5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교육기본법】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을 설립 경영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외국인의 주식취득제한에 대한 특례) ①외국인(대한민국에 6월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개인을 말한다) 또는 증권거래법 제2조 제16항의 외국법인 등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취득에 관하여는 동법 제203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

제197조(정의) 농지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지 :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벼와 특수작물(이하 이 절에서 “농작물”이라 한다)을 재배하는 토지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수입금액 :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써 인하여 수입한 또는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3. 농지소득금액 : 농지로부터 얻은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4. 특수작물 : 과수, 인삼, 연초, 유채, 묘목9관산수를 포함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을 말한다.

【농지법】

제30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①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②제1항의 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은 다음 각호의 용 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진흥구역 :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
 - 가. 농지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2. 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확보, 수질보전등 농업환경등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별첨 4)

의안번호	제 10-3호
의결년월일	1999. 3. . (제 회)

2001학년도 학교설립계획(안)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1999. 3. 20

2001학년도 학교설립계획(안)

의안 번호	100-7
----------	-------

제출년월일 : 1999. 3. 20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설립목적

- 택지개발지구내 주택건축으로 인한 교육인구의 집중에 따른 수용
- 과대학교 분리 및 교육여건 개선 도모

□ 설립계획

- 신설학교 현황

학교 급별	교육청	학교명(가칭)	위 치	규 모	개교예정 년 월 일
중	청 주	비하중학교	청주시 흥덕구 하북대 택지개발지구내	36학급	2001. 3. 1.

- 학생수용계획

학교명 (가칭)	수 용 계 획			소 요 교 실 수				관 련 학 교 현 황				
	학급수	학생수	급당 평균	보통	특별	관리실	계	학교명	분리전		분리후	
									학급	학생수	학급	학생수
비하중	36	1,372	38.1	36	35	4	75	서원중	39	1,546	35	1,391
								가경중	37	1,455	35	1,386
								경덕중	40	1,579	36	1,425
								사대부중	18	718	18	716
								비하중			10	380

소요예산

(단위 : 천원)

학교 급별	교육청	학교명 (가칭)	부 지		건축비 예정액	계
			면적(m ²)	금 액		
중	청 주	비하중	15,052	8,069,935	8,619,288	16,689,223

소요재산 확보계획 : 교부금 및 자체재원으로 충당

- 설계용역비, 부지매입비 : 99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
- 건축비는 2000교특회계 당초예산에 반영

참고사항

- 신설학교 위치도
- 근거법령
 - 근거법령발췌서 별도

학교설립 근거법령

교육기본법 제11조(학교등의 설립)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한다.

초·중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등)

- ①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조(학교의 설립기준)

초·중등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설비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2조(학생수용계획)

- ① 교육감은 그가 관할하는 학교의 적정한 학생수용을 위하여 학년도별로 학생수용계획을 수립하여 당해학년도 개시 30월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수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당해 계획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2조(시설·설비기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각급학교”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기준은 제3조 내지 제12조 및 제17조와 같다.

(별첨 5)

의안번호	제 100-4 호
의 결	1999. . .
년 월 일	(제 회)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계획(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1999. 3. 20.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100-4
----------	-------

제출년월일 : 1999. 7. 20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이유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사유가 추가발생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골자

□ 공유재산의 취득

0 충북공업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증축	900㎡
0 청주 (가칭)비하중학교 학교부지 매입	15,052㎡
0 청주 서원초등학교 유치원사 신축	789.35㎡
0 청주 상당초등학교 교실, 계단실, 화장실 증축	1,254.6㎡
0 충주 양성초등학교 교실 및 부속시설 확충	4,365㎡
0 충주 목행초등학교 교실, 계단실, 화장실 증, 개축	873㎡
0 제천 백운초등학교 교실, 계단실, 화장실, 숙직실 개축	1,008㎡
0 옥천 삼양초등학교 교실, 계단실, 화장실 증, 개축	1,311.75㎡
0 진천 이월중학교 교실, 계단실, 화장실 개축	1,253.6㎡

0 괴산 증평초등학교 교실, 계단실, 화장실 증축	873.45㎡
0 음성 용천초등학교 교실, 계단실 증축	700.65㎡
0 음성 대소초등학교 교실, 계단실, 화장실 증축	791.25㎡
0 음성 대소중학교 교실, 계단실, 화장실, 창고 증축	1,200㎡

□ 공유재산의 처분

0 괴산 청안초등학교 잡종재산 매각	
- 괴산군 청안면 금신리 384-4번지 1필지	3,868㎡
0 폐교재산 매각 4교	
· 청원 (구), 문의초등학교 소전분교	
- 청원군 문의면 소전리 653번지외 2필지	4,568㎡
- 위 지상 건물 5동	382.4㎡
- 위 지상 공작물 4종	
· 옥천 (구), 삼화초등학교	
- 옥천군 안남면 청정리 510-1번지외 6필지	13,142㎡
- 위 지상 건물 5동	1,157.68㎡
- 위 지상 공작물 3종	
· 옥천 (구), 청동초등학교	
- 옥천군 청산면 효목리 675-1번지외 1필지	16,931㎡
- 위 지상 건물 4동	1,050㎡
- 위 지상 공작물 3종	
· 괴산 (구), 명덕초등학교 제월분교	
- 괴산군 괴산읍 제월리 289번지외 2필지	12,991㎡
- 위 지상 건물 7동	1,082.56㎡
- 위 지상 공작물 6종	

3. 제안근거

- 0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 0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4.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계획서 : 덧붙임

5. 관계법령발취서 : 덧붙임

6. 설명자료 : 별책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계획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7-1)

기관명 : 충청북도교육청

(단위:㎡,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취	계	토지			1	15,052	8,069,935	1	15,052	8,069,935
		건물			12	15,320.65	13,196,587	12	15,320.65	13,196,587
		기타								
	1. 매 입	토지			1	15,052	8,069,935	1	15,052	8,069,935
		건물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12	15,320.65	13,196,587	12	15,320.65	13,196,587	
	기타									
처	계	토지			5	51,500	145,875	5	51,500	145,875
		건물			4	3,672.64	292,273	4	3,672.64	292,273
		기타			4		27,360	4		27,360
	4. 매 각	토지			5	51,500	145,875	5	51,500	145,875
		건물			4	3,672.64	292,273	4	3,672.64	292,273
		기타			4		27,360	4		27,360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	토지									
	건물									
	기타									

취득대상 재산목록 (7-2)

[기관명 : 충청북도교육청]

(단위:㎡,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주소·성명	비고
	기관명	구 분	소 재 지	수 량					
1	충북공고	건 물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666	900	631,189	하반기	교육환경개선	교육감	1쪽
2	(가칭) 비 하 중	토 지	청주시 하북대 택지개발지구내	15,052	8,069,935	·	학교신설(2001년)	·	2쪽
3	서 원 초	건 물	청주시 흥덕구 북대동 977	789.35	559,990	·	독립유치원사 교육환경개선	·	3쪽
4	상 당 초	건 물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062	1,254.6	1,270,463	·	교육환경개선	·	4쪽
5	양 성 초	건 물	충주시 양성면 용대리 275	4,365	4,000,000	·	농촌현대화시범 학교	·	5쪽
6	목 행 초	건 물	충주시 목행동 577-1	873	643,700	·	교육환경개선	·	6쪽
7	백 운 초	건 물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 600	1,008	916,855	·	·	·	7쪽
8	삼 양 초	건 물	옥천군 옥천읍 마암리 5-1	1,311.75	1,146,732	·	·	·	8쪽
9	이 월 중	건 물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 455-5	1,253.6	1,007,182	·	·	·	9쪽
10	증 평 초	건 물	괴산군 증평읍 증평리 1050	873.45	590,876	·	·	·	10쪽
11	응 천 초	건 물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0	700.65	843,459	·	·	·	11쪽
12	대 소 초	건 물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 186-1	791.25	783,441	·	·	·	12쪽
13	대 소 중	건 물	음성군 대소면 삼정리 613-7	1,200	802,700	·	·	·	13쪽
계		토 지	1 교	15,052	8,069,935				
		건 물	12 교	15,320.65	13,196,587				
		계	13 교		21,266,587				

매각대상 재산목록 (7-4)

[기관명 : 충청북도교육청]

(단위:㎡,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금 액	매 각 시 기	매 각 사유	매수희망자 주소, 성명	비고
	기관명	구 분	소 재 지	수 량					
1	청안초등학교	토 지	괴산군 청안면 금신리 384-4	3,868	12,338	상반기	잡종재산매각		14 쪽
2	구 문의초등 학교소전분교	토 지	청원군 문의면 소전리 653외2	4,568	11,030	상반기	폐교재산매각		15-18 쪽
		건 물	·	382.4	40,882				
		공작물	·	4종	3,901				
3	구 삼화초등 학교	토 지	옥천군 안남면 청정리 510-1외 6	13,142	41,474	상반기	폐교재산매각		19-22 쪽
		건 물	·	1,157.68	29,597				
		공작물	·	3종	3,699				
4	구 청동초등 학교	토 지	옥천군 청산면 호목리 675-1외 1	16,931	47,059	상반기	폐교재산매각		23-26 쪽
		건 물	·	1,050	23,472				
		공작물	·	3종	6,612				
5	구 명덕초등 학교제월분교	토 지	괴산군 괴산읍 제월리 289외2	12,991	33,974	상반기	폐교재산매각		27-31 쪽
		건 물	·	1,082.56	198,322				
		공작물	·	6종	13,148				
계		토 지	5 교	51,500	145,875				
		건 물	4 교	3,672.64	292,273				
		공작물	4 교	16종	27,360				
		입목죽							
		계	5 교		465,508				

관계 법령 발췌서

□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第77條 (公有財産의 管理計劃)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豫算을 編成하기 전에 매년 公有財産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計劃(이하 '管理計劃'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②제 1 항의 管理計劃에 포함하여야 할 公有財産의 범위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하고,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3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 관한法律 제10조 (公示地價의 適用)

제10조 (公示地價의 適用) ①國家, 地方自治團體,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에 의한 政府投資機關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共團體가 다음 各號의 目的을 위하여 土地의 價格을 算定하는 경우에는 당해 土地와 유사한 利用價値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이상의 標準地의 公示地價를 基準으로 하여 당해 土地의 價格과 標準地의 公示地價가 均衡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算定된 地價를 다음 各號의 目的에 따라 加減調整하여 適用할 수 있다.

1.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 사용에 대한 보상
2. 국, 공유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3. 삭제
4.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1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희지의 매수 또는 동법 제21조의14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수
5. 징발법에 의한 토지의 징발에 대한 보상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가격의 산정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4조 (공유재산관리계획) ①교육감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속하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관리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의안번호	제1005호
의결 번호	1999. 3. . (제 회)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1999. 3. 20.

1999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안 번호	100-5
----------	-------

제출년월일 : 1999. 3. 20.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한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주요골자

○ 세입예산중 국가부담수입 74억 2,078만원,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 부담수입 40억 2,594만 6천원,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1,007억 9,799만 9천원을 증액 하였으며,

○ 세출예산중 교육위원회비 291만 6천원, 급여관리 462억 8,374만 8천원, 교육행정비 77억 2,732만 2천원, 교육사업비 21억 2,859만 9천원, 학교비 128억 3,380만원, 사학지원비 47억 9,040만원, 시설비 400억 6,466만 5천원, 제지출경비 7억 2,616만 8천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23억 1,289만 3천원을 감액하여

○ 추가경정예산액을 당초예산 6,366억 2,045만 6천원에서 세입·세출예산 각각 1,122억 4,472만 5천원이 증액된 7,488억 6,518만 1천원으로 함.

예산(안) : 별책

사항별설명서 : 별책

(별첨 7)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9. 4.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조례심사소위원회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년 3월 20일, 충청북도교육감
- 나. 회부일자 : 1999년 3월 29일
- 다. 상정일자 : 1998년 3월 29일(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1999년 3월 29일)
 -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1999년 4월 1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가. 개정사유

농촌지역의 학생수가 급속히 줄어 2~3개 학년이 한 학급으로 복식수업을 받는 소규모학교 학생들에게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소규모학교를 통·폐합

나. 주요골자

- 분교장폐지(2분교장)

명 칭	위 치	폐지년월일	폐지사유
생극초등학교 관성분교장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 13	'99. 5. 1.	농촌교육발전을 위한 소규모학교 통폐합
생극초등학교 오생분교장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생리 570	'99. 5. 1.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 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본 개정조례안은 농촌지역 소규모학교 학생들의 교육과정 정상화 및 교육적 효과증대, 인력 및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화 도모를 위하여 분교장을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고 적정히 작성되었다고는 볼 수 있으나,

동 분교장 폐지와 관련한 행정절차에 있어서 행정예고는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라 볼 때 예고기간중에 본 개정조례안이 제출된 것은 절차상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며,

학기중간에 통·폐합이 이루어져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차질이 예상되고, 교직원의 재배치, 예산배정상의 문제점 등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향후 소규모학교 통·폐합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학생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이 이루어지고 제반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별첨 8)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9. 4.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조례심사소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년 3월 20일, 충청북도교육감
- 나. 회부일자 : 1999년 3월 29일
- 다. 상정일자 : 1998년 3월 29일(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1999년 3월 29일)
 -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1999년 4월 1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가. 제안이유

- 외국인투자촉진과 지방의 자율·책임성의 제고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 정부에서는 지난 '98. 7. 16.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개정하고 '99. 1. 21. 지방재정법을 개정 공포하였는 바, 이와 관련하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 납부대상 확대 (안 제22조)
 - 현행 중요재산의 매각시만 분할 납부가 가능하나
 - 지방자치단체간의 업무용 토지 매각시
 -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 점유 사용자에게 매각할 때
 -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가, 저소득층에게 소규모토지를 매각할 때
 -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한 경우 등을 추가하여 경제 여건으로 인한 매각대금의 연체 및 이자 부담을 줄이고자 함.
-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인하 (안 제23조)

- 학교급식 실시에 따라 학생들의 급식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급식용 재산은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으로,
 -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는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25로,
 - 외국인투자의 활성화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이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대부료를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으로 인하하고자 함.
-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 특례 인정 (안 제23조의3)
- 공유재산 사용시 사용료 감면
 - 전액감면 : 외국인 투자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제조업, 고용창출 효과가 300명 이상인 제조업, 전체 생산량의 50%이상 수출하는 업체로 부품은 100% 국내에서 조달하는 외국 기업 등
 - 일부감면 : 전액감면에 비하여 투자액 및 고용 효과 등이 낮은 외국인 기업을 대상으로 차등 적용
-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산출방식 개선 (안 제25조)
- 현재까지 건물의 사용료 산출시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건물부지 사용료를 건물바닥 면적의 3배에 대한 재산 가액으로 산정하여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부담하게 함에 따라 과도한 사용료 납부에 따른 부담이 있었으나 건물의 실제사용 비율에 따라 면적을 재산 사용료를 납부토록하여 사용인의 부담을 경감코자 함.
-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율 규정 (안 제28조)
- 현행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은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율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은행의 종류별 연체요율이 상이하고 수시 변경됨에 따라 연체요율 기준을 15퍼센트로 규정함.
- 관사 사용료 면제대상 확대 (안 제52조)
- 현행 관사 사용료를 면제하는 대상이
 -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 관사를 일시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로 되어 있으나
 -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함.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의 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 촉진과 지방의 자율·책임성 제공 및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개정으로,

조례개정 후 교육재정 수입에 다소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교육재산의 사용허가와 임대 등과 관련한 각종 자료관리 및 홍보에도 힘써 교육재정 확보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며,

도내 시·군(특히 시지역)에 있는 소규모 잡종재산의 관리에 있어서도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 주민편의 차원과 교육재정 확보 측면에서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별첨 9)

(제100회 임시회)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999. 4.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예산·결산소위원회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년 3월 20일, 충청북도교육감
- 나. 회부일자 : 1999년 3월 29일
- 다. 상정일자 : 1999년 3월 29일(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1999년 3월 30일)
 -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1999년 4월 1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한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세입예산중 국가부담수입 7,420,780천원,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 4,025,946천원,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100,797,999천원을 증액하였으며,
- 세출예산중 교육위원회비 2,916천원, 급여관리 46,283,748천원, 교육행정비 7,727,322천원, 교육사업비 2,128,599천원, 학교비 12,833,800천원, 사학지원비 4,790,400천원, 시설비 40,064,665천원, 제지출경비 726,168천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2,312,893천원을 감액하여,
- 추가경정예산액을 당초예산 636,620,456천원에서 세입·세출예산 각각 112,244,725천원이 증액된 748,865,181천원으로 함.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1999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추가되는 세입재원의 교부목적 이행과 재원의 합리적 배분 등을 심사기준으로 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예산편성 개요

□ 예산규모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636,620,456천원보다 112,244,725천원이 증액된 748,865,18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6% 증가되었는데, 기관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증 △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비 율 (%)
합 계	748,865,181	100.0	636,620,456	100.0	112,244,725	17.6
교육위원회	687,825	0.1	684,909	0.1	2,916	0.4
본 청	580,574,349	77.5	512,828,853	80.6	67,745,496	13.2
지역교육청	163,945,098	21.9	117,135,892	18.4	46,809,206	39.9
예 비 비	3,657,909	0.5	5,970,802	0.9	△2,312,893	△38.7

□ 세입예산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국고지원금 등 국가부담수입 7,420,780천원과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 4,025,946천원,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100,797,999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재원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재 원 별	예 산 액	구성비(%)	세 입 내 역
합 계	112,244,725	100.0	
보통교부금	3,268,417	3.0	○경상교부금 3,268,417
특별교부금	245,500	0.2	○세입업무전산화 10,000 ○교무실환경개선(OA시스템설치) 235,500

재원별	예산액	구성비(%)	세입내역
증액교부금	337	0.0	○증액교부금 377
양여금	2,400,426	2.1	○지방교육양여금 2,400,426
보조금	1,506,060	1.3	○귀국학생담당교사연수 395 ○과학실험보조원임용 42,000 ○학교전산망구축 610,150 ○종합정보관리시스템구축 140,000 (생활기록부전산화) ○교원용 컴퓨터보급 58,032 ○실습용 컴퓨터보급 330,215 ○실습용 S/W보급 33,140 ○고등학교교육과정통합운영시범학교 30,000 ○환정보전시범학교운영(10,000→8,000) △2,000 ○한글뉴스수신료 36,000 ○영어보조원 임용 60,000 ○교과교육연구활동지원 160,000 ○학급보조 자원봉사자 연수 8,128
법정전입금	3,520,946	3.1	○99년도 도세 전입금 3,520,946
비법정전입금	505,000	0.5	○안전교육시범학교운영 5,000 ○자영자양성고 지원 500,000
기타	100,797,999	89.8	○교원임용후보자선정시험검정수수료 26,250 ○98년도 순세계잉여금 56,900,678 ○재특회계 융자금(기타차입금) 40,000,000 ○입학금및수업료수입 3,549,772 ○지역교육청 자체세입 321,299

□ 세출예산

세출예산은 교육위원회 2,916천원, 본청 67,745,496천원, 지역교육청 46,809,206천원, 예비비 2,312,893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관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관별	교육위원회	본청	지역교육청	예비비	계	구성비(%)
합계	2,916	67,745,496	46,809,206	△2,312,893	112,244,725	100.0
교육위원회비	2,916				2,916	0.0
급여관리		46,283,748			46,283,748	41.2
교육행정비		6,586,437	1,140,885		7,727,322	6.9
교육사업비		2,001,537	127,062		2,128,599	1.9

관 별	교육위원회	본 청	지역교육청	예 비 비	계	구성비(%)
학 교 비		2,369,619	10,464,181		12,833,800	11.4
사학지원비		2,705,477	2,084,923		4,790,400	4.3
시 설 비		7,137,510	32,927,155		40,064,665	35.7
제지출경비		661,168	65,000		726,168	0.6
예 비 비				△2,312,893	△2,312,893	△2.0

□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역

○ 교육공무원 인건비 조정	48,572,748천원
○ 교육환경개선사업비	19,064,892천원
○ 신설학교토지매입비및설계비	8,309,935천원
○ 고등학교 급식시설	2,000,000천원
○ 제천청암학교 이전	900,000천원
○ 충북공고 공동실습소 증축	630,000천원
○ 수용 및 일반시설비	12,307,469천원
○ 교단선진화	2,505,945천원
○ 학교전산망 구축	2,618,300천원
○ 종합정보관리시스템구축(생활기록부 전산화)	597,090천원
○ 교원용 컴퓨터 보급	290,160천원
○ 실습용 컴퓨터 보급	2,236,520천원
○ 실습용 S/W 보급	165,700천원
○ 결식아동 중식지원비	1,108,413천원
○ 교육환경조성비	1,796,000천원
○ 경제사정곤란자 학비감면	1,354,133천원
○ 재특용자금 이자	650,000천원
○ 소규모학교 통폐합지원	817,246천원
○ 행정장비 보급	511,100천원
○ 교무실 근무환경개선	235,000천원
○ 열린교육시범단지 운영	150,000천원
○ 무선어학실습실 설치	140,000천원
○ 교원 연수	195,900천원
○ 교원연수 사이버시스템 구축	120,000천원
○ 열린교육 Home Page Network 구성	30,000천원
○ 아가모 운동의 사회화 운동	50,000천원
○ 5~6학년 영어학습자료 개발	40,200천원

○ 열린학습-교수마이크로 영상자료 개발	56,080천원
○ Web 활용 특수재능아 교육	80,000천원
○ '98.학교 운영평가	720,000천원
○ 특기·적성교육 시범단지운영	60,000천원
○ 특기·적성교육활동 프로그램 개발	55,000천원
○ 특기·적성교육 활동 지원	88,357천원
○ 초등 영어 보조교사 임용	60,000천원
○ 열린교육 시범단지 운영	150,000천원
○ 기초학력 부진아 책임지도	106,200천원
○ 충북교육발전기획단 운영	49,140천원
○ 재정효율화 우수학교 지원	59,000천원
○ 기타 각과 및 교육청 사업	1,568,197천원 등임.

나. 삭감내역

삭감액 : 1,374,280천원

삭감내역 및 사유

○ 본청 청사보수 △1,374,280천원

본청시설중 청사보수 사업비로 1,421,280천원을 계상하였는 바, 본청 건물이 노후하여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나 일선 교육현장의 시급한 사업과 경제난에 의한 교육재정의 실태를 감안하여 볼 때 당장 시급한 장애인 편의시설 27,000천원, 화장실 보수 20,000천원 총 47,000천원의 사업비를 제외한 1,374,280천원은 보다 시급한 사업에 투자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어 감액하였음.

다. 종합의견

금번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양여금 조정, 재정융자특별자금 차입,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부당금 편성, 특별교부금·국고보조금 및 일반회계전입금 사업계상, '98.순세계잉여금의 사업계상 등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는 바,

삭감조정하기로한 본청 청사보수 사업비 1,374,280천원을 향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 시급한 학교의 교육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라며,

결식학생에 대한 지원에 있어 소요예산이 부족하여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등 유관기관, 그리고 지역사회등과의 적극적 협조를 모색하여 결식학

생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

또한 각종 학습교재를 매년 예산에 편성하여 개발·보급하고 있으나 각급 학교에서는 그 활용이 미흡하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보다 활용이 활성화되게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붕방수, 화장실보수 등의 학교건물 보수예산이 교육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학교신·개축 및 각종 공사추진시 공사감독 및 학교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

6. 수정안의 주요내용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 4. 1.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나. 수정이유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보다시급한 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해 본청 청사보수예산을 감액하고자 함.

다. 주요골자

- 본청(장), 시설비(관), 기관시설비(항), 행정및지원기관시설(세항)
 - 본청 청사보수 시설비 1,421,280천원중 1,374,280천원을 감액함.
- 예비비 3,657,909천원을 5,032,189천원으로 함.

7. 심사결과 : 수정안 의결(참석위원 : 5명, 찬성위원 : 5명)

8.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1999년도총회

1. 제안

1999

출예산

감액

2. 주요

가. 분기

나. 예비

3. 수정

4. 수정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 한다.

장) 본청 관) 시설비 항) 기관시설비 세항) 행정및지원기관시설

본청 청사보수 시설비 1,421,280천원을 1,374,280천원을 감액한 47,000천원으로 한다.

장) 예비비 관) 예비비 항) 예비비 세항) 예비비

예비비 3,657,909천원을 1,374,280천원을 감액한 5,032,189천원으로 한다.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수정안 대비표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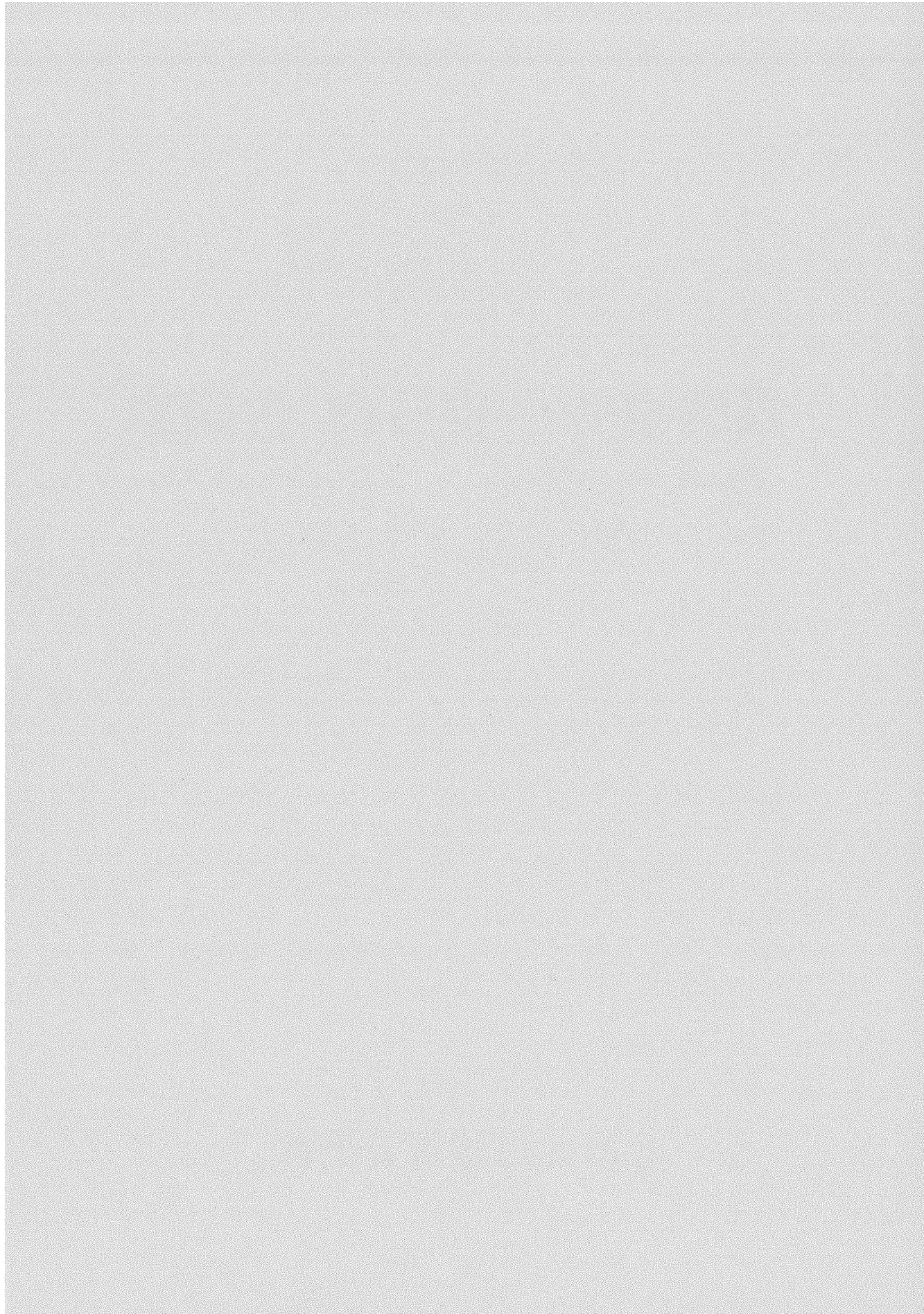
장	관	항	과		교육감제출 예산액	교육위원회의결		예산액	수	정	내	용
			세	항		감	증					
02	본청				580,574,349	1,374,280		579,200,069				
	06	시설비			11,901,799	1,374,280		10,527,519				
		03	기관시설비		1,754,907	1,374,280		380,627				
			01	행정및지원기관시설	1,754,907	1,374,280		380,627				△1,374,280
												(1,421,280 → 47,000)
14	예	비	비		3,657,909		1,374,280	5,032,189				
	01	예	비	비	3,657,909		1,374,280	5,032,189				
		01	예	비	비	3,657,909		5,032,189				
			01	예	비	비		1,374,280				1,374,280
					3,657,909		1,374,280	5,032,189				○ P239. 예비비 (3,657,909 → 5,032,189)
				합	584,232,258	1,374,280	1,374,280	584,232,258				

第100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條例審查小委員會 會議錄

('99.3.29 ~ 4.1.)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 I. 제10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3
- II. 제10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21
- III. 부 록
 - 1. 의사일정(안) 25
 - 2.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조례 제정내용 27
 -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안) 37
 - 4.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
심사보고서(안) 41

條例審查小委員會 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9년 3월 29일 (월요일) 14시 00분

議事日程 (제100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附議된 案件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00분 개회)

● 위원장직무대행 송진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14시 01분)

● 위원장직무대행 송진하

바로 이어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충원 위원

이상일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송진하

이상일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일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교대)

● 위원장 이상일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이 대수롭지 못하더라도 잘 도와 주셔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와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선출의건

(14시 03분)

● 위원장 이상일

그러면 다음에는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방금전의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충원 위원

같은 이씨끼리 하시는게 어떠세요?

● 위원장 이상일

이충원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충원 위원

부의장님 한번 더 하시지요.

● 위원장 이상일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기수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었습니다.

이기수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기수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기수

조례심사소위원회 간사로 선출된 이기수 위원입니다.

소위원장님의 하시는 일을 잘 보필해서 이 소위원회가 원만하게 끝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

(14시 05분)

● 위원장 이상일

다음은 의사일정을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편의상 의사일정안을 본 위원장이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소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4월 1일 까지로하여 오늘은 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고, 31일날은 의안과 관련하여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4월 1일 10시에 제2차 소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바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06분)

● 위원장 이상일

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오전에 본회의에서 들은 바 있으므로 생략을 하고, 본 개정조례안 작성에 직접 참여한 기획관리과장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기획관리과장 이기수입니다.

위원님들께 설명자료라는 유인물을 한부씩 나눠드렸습니다. 그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 조 : 개정조례안 보충설명자료 (별첨2)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기획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0회-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수 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방금 이 설명자료를 보면 학생이 학급수는 매년 늘어나지 않고 12학급 그대로고, 선생님도 21명은 21명 그대로 있는데, 여기 관성분교장하고 오성분교장에서 7명이 남네요.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네, 선생님이

● 김광수 위원

7명이 남는 것은 어떻게 다른 데로 가게 되나요?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예, 그것은 5월 1일자로 만약에 통폐합이 된다고하면 5월 1일자로 인사발령을 해서 결원되는 학교나 아니면 타지역 결원이라도 인사조치를 인사발령을 낼 계획입니다.

● 김광수 위원

지금 결원된 데가 있어요?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예, 지금현재 한 4명 내지 5명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결원이 이 7명보다 적을 경우에는 본교나 다른 학교에다 중치교사로 있다가 9월 1일자 되면 다 해결이 될 것입니다.

● 위원장 이상일

이기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기수

이 사항에 대해서 간담회때 위원들끼리 얘

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조사한 것을 조사한 위원님께도 들었는데 이게 간담회에 서는 절차상의 문제가 너무 촉박하지 않겠느냐, 결국은 학부형들이나 국가시책에 따라가지고서 꼭 해야할 문제지만 이 시기에 해야할 문제지만 절차를 3월이전에 했든지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학기에서 9월에 통폐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절차상 맞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한번 현지를 갖다와서 다시한번 의견을 물어서 하겠다 이런 얘기로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청에서는 열심히 하시고 있고 하지만 부득이한 입장이고 하지만 이것은 시기적으로 좀 일찍 했든지 또는 늦혔든지 이랬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저희들이 원 계획은 이것이 내년 그러니까 2000년 3월 1일자로 생극초등학교로 합치는 그런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것을 9월 1일자로 폐지를 했으면하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학부모님들도 실제 복식학급 운영을 해보니까 학생들의 교육에 지장이 있다 이것은 본교로 합쳐야 된다는 것은 대다수 학부모님들의 실제로 느끼신 공감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도교육청에서 이것을 4월 1일자나 또는 5월 1일자로 빨리하라고 혹시 하신 것으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단지 저희들도 학년말이나 이때 통폐합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학기중에 하는 것은 약간 문제는 있습니다. 담임선생님 바뀌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했는데, 9월 1일자보다 하는 것을 권유를 했었는데 지역주민들이 9월 1일자 학기중에 어차피 우리 통폐합 할거면 하루라도 빨리 해서 그 학교 본교 학생들하고 공부도 같이하고 나중에 졸업때도 더 낫겠다해서 그걸 원했던 겁니다.

그런 절차속에서 저희들이 3월초에 얘기가 되니까 학부모님들이 4월 1일자로 해달라 그런 절차과정에서 행정예고라든지 이런 절차를 또 교육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용 하고, 도의회를 거치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5월 1일보다 이걸 도저히 4월 1일엔 안되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학부모님들한테도 거긴 한달이라도 빨리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혹시 행정예고 얘기가 그게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게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압니다만 행정예고라는 것은 이해 당사자들한테 저희들이 미리 알려가지고 거기 의견수렴인데 이것이 3월 저희들이 8일 또는 3월 10일에 양 학교에 다 예고를 해서 한군데는 27일에 끝났고, 한군

데는 오늘까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다수 많은 인원이 있을 적에 일일이 알리지를 못하니까 하는 것인데 여기에 학부모님은 아까 학생수 21명, 29명 보셨습시다만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그 사항을 충분히 말씀드릴 기회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또 그 전에 100% 의견수렴도 했고, 그런 절차는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그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 이기수

지금 기획관리과장님 말씀 충분히 듣고 또 전에도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학생수나 교직원수라든지 이런데에 전혀 변화가 없고하니까 요새같이 교육재정이 어려운 입장에서 사실 학급수도 3학급 그대로고, 교직원도 사실 통폐합한다고 해서 그 학교에 더 지금 생극으로 합친다해도 학생수나 학급수나 교직원수라든지 이런데에 결국은 생극초등학교에 어느 변화 없이 다 수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지만 지금같이 교육재정이 어려울 때는 속히 하는 것이 좋을 것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바라고 하니까 면면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논의했던 사항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다 하셨습니까?

● 감사 이기수

예.

● 위원장 이상일

이기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송진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진하 위원

학교 통폐합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신 결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기관을 없앤다고 할 때 자연 반대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고, 또 우리 도의 실정을 봤을 때 통폐합의 필요성 같은 것은 학부모님들은 어느정도 잘 이해가 된 것 같아요, 해서 통합하는 데서 별 이의가 없는 것 같은데 학부모가 아닌 동창회라든가 그런 분들은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일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는데 지금 이기수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여하튼 두달만 관성분 교장하고 오생분교장도 두달만 더 앞당겼다면 아무 이의없이 되는건데 가급적이면 학년 초에 이게 통폐합이 되는 것이 교원들의 인사문제나 여러가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다소의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년초인 3월 1일자로 될 수 있는데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일

송진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충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 이충원 위원

이충원위원입니다.

다들 말씀을 하셨는데 중복되는 말씀이 될는지 모르는데 제 말씀은 세가지 요점입니다.

첫째는 시기적으로 조금 매끄럽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서로 다 아는 것이니까, 금년에는 불가피한 것이지요.

두번째는 예산을 이미 배정했는데 손질을 좀 해야될 필요가 있겠지요?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네.

● 이충원 위원

보고를 해주시던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세번째는 중요한 문제인데요.

교원의 이동문제입니다. 왜그런가하면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분들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적어도 같은 모르지만 농진점수 때문에 갔다던지 벽지학교 때문에 가신 선생님들이 있으실 겁니다. 같은 몰라요, 제가 조사는 안 해봤는데 이 분들이 만일 뜬다라고 그랬을 때에 생활근거지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아마 본청에서 고려를 해줘서 우대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대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걸 상당히 고려해 주셔야 되겠다는 얘기하고, 또 하난데 기능직 있죠?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예.

● 이충원 위원

기능직은 아마 생활근거지가 분명히 그 근처일 겁니다. 그런데 이 분들을 많이 그 근처에 소규모학교이기 때문에 둘을 다 더할 수도 없고, 불가피하게 어디로 보내야 할텐데, 그렇죠,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네, 신분보장 되어 있습니다.

● 이충원 위원

그러니까 기관이 없으면 자연적으로 없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닌거고, 역시 이 분에게도 아마 그런 배려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거기 오생에 있는 분을 저 탄데다 갖다 옮겨 놓기도 어렵고, 불편하실테지만 이런 것은 조금 연구를 하셔야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요구 사항만 좀

●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통폐합문제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이나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원들의 어떤 벽지 가산점이라든지 가서 있는 사람들이 없어질 경우에 그게 없어지니까 별로 찬성치 않은 선생님들이 혹시 있을까하는 염려도 저희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여기에 있는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그 점수에 부여되지 않고 여하튼 중간에 이렇게

이동하는 것은 또 특히 통폐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선생님들에 대해서 인사상 불리한 대우는 할 수 없다. 저희들 간부회의 끝나고 나서 서로 직원간에 오고가는 얘기가 있었으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 위원장 이상일

네, 김광수위원님 추가질문 하시지요.

● 김광수 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 속에 생각이 나는 것이 있는데 행정예고라고 하는 것이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행정예고는 어떤

● 김광수 위원

기간이 20일간 되는가요?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네, 20일간입니다.

● 김광수 위원

그게 법적근거가 어떻게 되지요?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행정예고는 위원님들 아시겠습니까만 어떤 시책이나 정책을 바꿀적에 그때 이해당사자들한테 그걸 미리 알려가지고 의견수렴을 해서 그 정책이나 시책을 수렴하는데 거기 바탕을 두고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20일간 행정예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광수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인데요. 그것을 행정예고

[제100회-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를 하게 되어있는 것이라고하면 그래도 기간을 지켜줘야지만이 되는 것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저희도 그 절차를 해서 20일간 공고를 했으면 20일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하는 생각은 위원님 말씀하고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 행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해서 하는데 결국은 아주 다수인이었을 적에 일일이 개별예고를 못할 경우에 신문지상이나 또는 방송이라든지 언론매체에 통과하는 방법도 있고 게시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 여기 관성하고 오생문제는 지역 부모님들한테 개별예고, 개별 저기가 전부 되어가고 그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20일간이라는 그 기간을 다 필요.....

● 김광수 위원

오생분교하고 관성분교가 21명, 29명 이렇게 때문에 개별로 접촉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여론수렴에 별 문제가 없다 이 얘기인데, 그러면 학부모한테만 의견수렴을 하는 것인지 그 지역에 의견수렴을 하는 것인지 그게 문제예요. 학부모한테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라면 21명만하면 되는데 그 학교라고하는 것이 그 학부모 학교가 아니예요. 그 지역의 주민들의 전체에 해당되는 학교지,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하는 방향이 무엇인가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싶어서 제가 재차 묻는 거예요. 21명, 29명이라고 할 것 같으

면 지금마냥 가정방문해서 충분히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허나 이 학교는 그 지역사회 학교지 학부모 학교만은 아닌거예요. 그래서 이 행정예고 기간을 충분히 주어서 의견수렴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지요?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김광수위원님 말씀 다 끝나셨습니까?

● 김광수 위원

예.

● 위원장 이상일

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서 주문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좀 소규모학교 통·폐합 절차가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때 완전무결하게 바로 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30분)

● 위원장 이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학교운영 지원과장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입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 조 : 개정조례안 보충설명자료
(별첨2)

(끝에 실음)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앞에서와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수 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근본적인 이유가 뭐니까, 근본적인 목적?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개정사유에서 말씀 드렸었는데요. 이 상위법인 국유재산법하고 지방재정법, 또 지방재정법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청에서는 99년 1월 15일자로 이런 내용을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방자치단체안에서 어느 행정관청은 예를 들어서 대부율이 1000분의 50이고, 또 어떤 관청은 1000분의 25고 이걸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걸 형평에 맞게하기 위해서 개정한 것입니다.

● 김광수 위원

무슨 법이라고 했지요?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국유재산법과 동법시행령, 또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그리고 또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육부에서 시·도 교육비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시안도 왔습니다.

● 김광수 위원

참고하라고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예, 각 시·도가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 김광수 위원

그렇게함으로써 우리로 봐서는 매각하는 데도 지금까지는 그냥 일시불로 다 받았던 것을 5년 내지 20년까지도 받을 수 있고, 또 교실같은 학교재산 임대해 주는 것도 그 전에 여기 프론테이지가 많이 내려왔네요?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네, 좀 내려왔습니다.

●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현재 학교를 임대하고 있는 사람도 이것에 의해서 임대료를 낮춰주게 되는 것이지요?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아니, 조례는 개정 공포하고 시행하기 때문에 금년도 이 기한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했기 때문에 현행 조례를 적용하게 됩니다.

● 김광수 위원

이미 계약된 것은 계약대로 그대로 이행을 하고.....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예

● 김광수 위원

다시 계약할 때는 이대로 준한다.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예

● 김광수 위원

그러나 이제 임대는 그렇고, 말하자면 매각하는 것은 이것에 준하게 되겠네요?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이후에는 이것을 전부 준용합니다.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글쎄 이것이 통과가 된 후에.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예

● 김광수 위원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예

● 김광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기수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간사 이기수

이와같이 그 요율을 낮춤으로 해서 충북 재정에 전체적인 그 1년 손실에 대한 것은 한 번 어느 정도 되는지 계산은 아직 안됐습니까?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대충 사전에 산출을 해 봤는데요 현행보다 한 2,300만원 정도가 연액에 감소가 됩니다.

● 간사 이기수

1년에 그것 밖에 안되는 것입니까?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예

● 김광수 위원

지금 임대하고 있는 것 얘기죠?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예

● 간사 이기수

아니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임대하고 있는 요율도 낮추고 또 이제 사용면적도 축소

해서 보고 말입니다. 먼저 300까지 봤던 것을 또 보니까 더 적게 보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계산한 것은 아니죠?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전부 다 계산했습니다.

저희가 임대수입이 현재 금년도에 4,800만원이 되는데.....

● 간사 이기수

임대 수입하고 그 다음에 또 임대수입의 효율도 낮추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양쪽에.....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사실 면적은 얼마 안됩니다.

● 간사 이기수

그래 2,300만원밖에 안됩니까?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예

● 간사 이기수

그리고 이 효율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디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1,000분의 50이다 이렇게 구체화 한 것은 어떤 기준이고 또 그 다음에 그 10년의 기간은 5%이고 뭐 10년이내 그러니까 타지방 종목별로 보는 사항, 대금 납부기간하고 프로테이지(%)가 이자가 전부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규정하는 것입니까?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조례상의 내용이 되는 것은 국유재산법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 간사 이기수

거기에 맞춘 것입니까? 상위법에 맞춰가지고.....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예 거기에 맞춘 것이고 도청하고 형평에 맞췄습니다. 도청 조례하고요.

● 간사 이기수

그러시고 관사의 정의가 14번에 현행 본청 청소의 장 또는 간부 공무원을 교육감, 부교육감 청소의 장 및 소속공무원으로 했을 경우에 범위가 확대된 것입니까 그게 축소된 것입니까? 실제 장. 그 아주 표현 자체가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그래서 현재는 현행 본청의 청소의 장 또는 간부직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간부직 공무원이 이게 모순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시골학교같은 데는 학교의 일하는 아저씨들도 사용할 수 있고 말입니다. 입주자가 없으면은 여러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데 간부직 공무원이라고 뜻을 박으니까 실제 활용하면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청소의 장 및 소속공무원으로 바꾼 것입니다.

● 간사 이기수

그러면 학교 교장은 여기에 안들어 가는 것입니까?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들어가죠. 청소의 장이니까요.

● 간사 이기수

청소.....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범위를 넓힌 것입니다.

● 간사 이기수

범위가 넓어진 것입니까?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예. 그렇습니다.

● 간사 이기수

그럼 학교교장이 청소의 장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예.

● 간사 이기수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일

이기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송진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진하 위원

개정된 것이 사용자에게 유리하도록 엄청 유리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상위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교육재정면에서는 엄청난 현재로 봐서는 많은 손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희망자가 있을 때에는 무조건 처분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교육재산을 처분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재산처분은 그 처분의 필요성이나 타당성·객관성을 검증해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만 팔기 때문에, 매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매각사유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이런 절차를 걸쳐서 팔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행정 추세가 뭐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 편의를 증진하는 그 방향으로 바뀌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신 데에다가 대부율을 낮춰서 다소 우리 예산에는 손실이 있습니다만 대국민 행정면에서는 그만큼 또 효과가 있습니다.

● 송진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지금까지는 비싸서 안사다가 지금은 이제 금리도 인하되고 대금납부도 연장이 되고 여러가지 엄청 유리하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가지고 다 처분할 것이냐,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그 앞으로 우리 재산은 그러니까 불용재산이라고 해서 우리 교육적으로 아직까지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서 된 것 중에서 선별적으로 매각이 되겠습니다만은 시골학교 폐교가 돼서 앞으로 도저히 학교설립이 재설립이 필요가 없다. 이런 데는 점진적으로 매각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또 필요한 땅을 누가 산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 쫓아가서 팔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용재산은 되도록 매각을 해 나가 되 그걸 탄력적으로 해야지 살 사람 있다고 무조건 팔고 그렇게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송진하 위원

탄력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일

송진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충원 위원

이충원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거의 다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 두가지만 여쭙 보겠습니다.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있잖아요, 그 경우에 기 매각한 것은 해당이 안되지요?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안되지요.

● 이충원 위원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5년이고 이렇게 값을 것도 연장이 안되겠다 그대로 실행하겠다.

그 다음에 또하나 말씀은 요율같은 것은 전부 준칙으로 거의 내려온 것이죠. 우리 마 음대로 할 수 없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시내에 충주나 청주에 짜투리 땅, 뭐라고그러나 불용지가 있을텐데 저는 요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채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결국 나중에 들어보니까 기 채해봐야 우리가 값질 않고 나라에서 값아 줄 것이다라고 해서 다행스러운데, 조각땅 들을 팔아서 부족한 액수를 우리가 조금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교육용지에서 큰거 야

요전에 그거 어떻게 되었어요?

●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청주농고요?

● 이충원 위원

팔렸어요?

●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안 팔렸습니다.

● 이충원 위원

그거 안 팔리면 또 입찰하면 또 내려가는 거 아니예요. 아닌가?

●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아니예요.

● 이충원 위원

한 번 정해 놓으면, 왜 대개 보면 공매할 때보면 최저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거 이하는 안내려 가겠구만요.

●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저희들이야 그걸 싸게 팔아야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매각을 다시 공고를 안했습니다. 두 번하고서 안했습니다.

● 이충원 위원

대체적으로 추상봐서 청주시내나 충주시내, 제천 이런데에 앞으로 팔아야 할 땅이 꽤 있습니까?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다수 있어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올리기로 했고, 또 한가지는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관사관리계획에서 우리가 불용관사를 매각해서 말이죠, 재정에 투입하고자 공고를 했는데 안 팔려요, 희망자가 없습니다.

● 이충원 위원

시내에도 그래요?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네. 지금 거기 입찰공고를 몇번을 했어요.

● 이충원 위원

시내는 팔릴텐데 어째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아니 원매자가 없습니다. 조금 경기가 좋아지면 모를까 현상태에서는 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그리고 그 짜투리땅 문제의 말씀을 들으셨는데요. 사실은 청주시내도 사택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이 옛날보다 희박스럽습니다. 괜히 헌집, 일본 때 지은 집 개축도 못하는 것 가지고 있느니 지금 학교운영지원과장 말씀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그걸 매각할 계획이 있

는데 현재 그 감정가격을 가지고 매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또 아셔야 될 것은 재산을 매각한 것은 재투자가 또 재산형성비로 해야 됩니다. 이걸 갔다가 인건비로 주거나 저쪽 어떻게 그리로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비 땅을 산다거나 건축을 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되도록 투자를 해야지 이걸 갔다가 운영비로 쓰거나 이렇게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은 재산매각대는 재산형성비로 가야 됩니다. 점진적으로 경기가 나아지면 그렇게 불용재산 임대도 안되고 이런 것은 정리를 해서 각각 필요한 사람한테 파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 김광수 위원

그런데 그 불용재산만 매각한다고 하면 그게 지금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폐교후 매각한다는 것이 지금은 매각한 것이 일시불로 들어와 가지고서 교육용으로 재투자한다고 하는게 얘기가 되었는데 앞으로는 5년, 10년, 20년까지 분할납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서 뭐가 재투자가 돼요. 또 지금 매각한다고 하는 것이 임대도 안나가고 팔리는 것도 안나가고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요. 그건 얘기할 것도 없는 거고, 임대가 잘 되고 잘 팔릴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임대 안나가는 거야 아무리 사라고해도 안사고 그렇게 해서 남아 있는 거니까 얘기 될 것도 없는 것이지만 지금

내용같으면 잘 팔리 것, 임대도 잘 나갈 것,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재투자가 뭐가 재투자가 되요. 가급적이면 팔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요.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저희도 폐교학교 이렇게 봐서 경관지역이라든지 앞으로 재산가치가 있고, 또 앞으로 그 학교에 혹시 인구가 증가가 돼가지고 학교를 또 세울 필요가 있는 이런 지역은 되도록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전망으로 봐서도

● 김광수 위원

재투자가 앞으로는 안되는 거예요. 외국인들한테 줄 적에는 20년까지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이지 이게 무슨 재투자 효과가 있어요. 그냥 이게 국가에서 너희들 학교 내 되라하면 할수 없이 내놓는 것은 모르지만, 나 한가지 더 물어볼게 있는데, 지금 폐교가.....

● 위원장 이상일

이충원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 이충원 위원

네, 다 끝났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광수 위원

미안합니다. 폐교가 전체 몇 개가 있습니까, 몇개교가 있어요?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대상학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광수 위원

지금 폐교, 지금현재 이전 학교

● 간사 이기수

폐교된 학교.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저희 총 폐교학교수가 162개교인데요. 그 중에서 자체활용하는 학교가 8개 학교가 있고,

● 김광수 위원

자체활용.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네, 기관에 매각된 학교가 58개가 있습니다.

● 김광수 위원

58개 팔렸어요?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네 58개교가, 임대하고 있는 학교 44개 학교고요. 순수하게 보존하고 있는 학교가 52개 학교입니다.

● 김광수 위원

이것은 임대도 만나가고 매각도 안되고 하는 것이 52개.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네.

● 간사 이기수

과장님 그 자료좀 복사해서 하나 교육위원들

● 김광수 위원

그것좀 하나 우리들 좀 줏으면 좋겠네요.

▶ 참 조 : 폐교현황 (별첨3)

(끝에실음)

● 이충원 위원

그것도 그렇고 보도자료로도 좀 내주세요.

● 김광수 위원

그렇게하고 지금 현재와서 99년도 8월말까지 폐교나 분교가 될 학교가 몇 개나 있어요? 금년도에 이루어질 거지요.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금년도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폐교 대상학교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 기획관리과장 조신행

금년 9월에 추진예정교가요, 본교가 5개교고요, 분교가 16개교입니다.

● 김광수 위원

아까 그거 있는 것 그건가?

● 기획관리과장 조신행

네, 그렇습니다.

● 김광수 위원

분교되는 것도 폐교되는거 아니예요, 아닌가?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분교는 일단 갔다가 그것이 복식학급되고 그러면 나중에 학생수가 줄어들면 폐교가 되어서 본교로 합쳐집니다.

● 김광수 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에 초등학교 전체 몇 개인데 100명이하는 다 대상이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네.

● 김광수 위원

100명이하 대상교가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교가 68개교, 분교가 16개교, 중학교 9개교가 되겠습니다.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준우

2002년까지 하는 거죠.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2002년까지 할, 그러니까 100이내 대상학교가 그렇습니다.

● 김광수 위원

지금현재.

● 이충원 위원

그리고 분교니 뭐니 해서 폐교된 학교를 매각한 뒤에 관리는 조금 저희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땅을 그냥 무상으로 희사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역사에 영 묻혀버리면 그래서 팔 때에 큰 조건이 아니니까, 치울 때 옆에서 치워 놓으라든지, 또 뭐하나 비석을 세워 놓는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네요. 왜냐하면 실제로 거기가 보면 역을 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폐교 됨으로써 과거에 선조들이 땅을 희사했는데 그냥 흔적도 없이 나라에서는 뺏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비석을 하나 세웠으면

● 위원장 이상일

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축조심사가 있겠습니다.

축조심사는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을 한 조문씩 본 위원장이 읽고 위원님들과 논의하면서 가·부를 묻는 방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 소위원회 의결로 질의 및 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생략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

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들께서는 개정조례안 심사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

[제100회-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0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이상일, 간사 이기수,

위원 김광수, 손만재, 송진하, 이충원.

0 출석공무원 : 3명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0 의사일정 : (별첨1)

0 개정조례안 보충설명자료 : (별첨2)

0 폐교현황 : (별첨3)

條例審查小委員會 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9년 4월 1일 (목요일) 10시 30분

議事日程 (제100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충청북도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附議된 案件

1. 충청북도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0분 개회)

● 위원장 이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어제 현장방문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까지 심사한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표결과 심사보고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1분)

● 위원장 이상일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현장방문을 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마쳤다고 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시지요.

의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금 의결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

사보고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를 이미 배부하여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해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심사보고서를 나눠 드렸는데 다른 것은 별로 중요한게 없고, 5번 심사보고 주요내용을 한번 읽어 주시면 거기에 함축적으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십니까?

● 김광수 위원

거기 그 끝에 우리 도내 시·군 특히 시 지역에 있는 소규모잡종재산의 관리에 있어서도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은 주민편의 차원과 교육재정 확보 측면에서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이란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 의안담당 연승흠

이건 다른 겁니다. 이건 다음에 의결할 내용입니다.

● 김광수 위원

아, 다른 거예요.

● 송진하 위원

짚을 것은 다 짚었다고 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다른 위원님 어떠십니까?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나왔던 얘기가 여기 다 포함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송진하 위원

예, 다 포함되었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다른 말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말씀이 안계시므로 그럼 보완할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보고서는 그대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5분)

● 위원장 이상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미 제1차 소위원회에서 질의 및 답변이 끝났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김광수 위원

아니 여기 설명 좀 듣고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낭독한 것, 그 5번 끝에 교육재정 확보 측면에서라고 하는 측면이 말이죠.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하여 달라고하는 그것 측면이라고 하는 것.....

● 위원장 이상일

그것은 그 밑에 심사보고서 내용 검토사항 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심사보고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해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게 맨 끝 장 5번 심사보고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 보시고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수 위원

누가 이거 얘기좀 해줄 수 있어요?

● 의안담당 연승흠

이충원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건데 시 지역이라든가 그런데 보면 자투리땅 같은 것이 현재 크게 활용가치를 못하고 있는 땅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산심의할 때 이충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 김광수 위원

알았습니다.

● 이충원 위원

지금 5번 얘기하는 거예요?

● 의안담당 연승흠

예.

● 이충원 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농촌지역 소규모 이거 얘기하는 겁니까?

● 위원장 이상일

아닙니다. 맨 끝에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의 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 촉진과 지방의 자율·책임성 제공 및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개정으로, 그 사항입니다.

그 끝에 보면 도내 시·군 특히 시지역에 있는 소규모 잡종재산의 관리에 있어서도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 주민편의 차원과 교육재정 확보 측면에서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이 심사보고에 더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보고서는 보완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일정속에서도 심도있는 의안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고 아울러 본 조례심사소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제100회-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0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이상일, 간사 이기수,

위원 김광수, 손만재, 송진하, 이종원.

0 출석공무원 : 3명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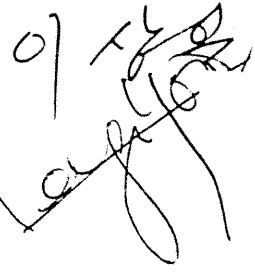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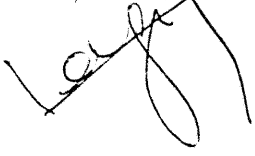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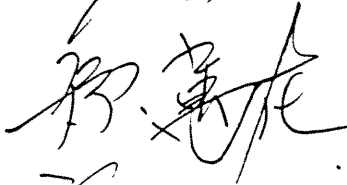


음성교육청 관리과장 신건환

0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안) : (별첨4)

0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안) : (별첨5)

제10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1999. 4. .

위원장	이상일	
간사	이기수	
위원	김광수	
위원	손만재	
위원	송진하	
위원	이충원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제 10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1999. 3. 29 (월) 14:00~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최]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	
1999. 3. 31 (수)	1. 의안관련 현장방문 - 음성 생극초등학교관성분교장 및 오생분교장	
1999. 4. 1 (목) 10:00~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최] 1.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 (의결) ※ 폐회	

(별첨 2)

제10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

개정조례안 보충설명 자료

-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심사소위원회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계획

1. 목 적

- 농촌지역 학생들의 교육과정 정상화 및 교육적 효과 증대
- 인력 및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화 도모

2. 추진기준

학교급별	추진계획	비 고
초등학교	○ 본교 - 학생수 100명 이하 ○ 분교장 - 학생수 20명 이하	○ 1면 1본교 유지 원칙 (1면 1본교라도 30명 이하교는 예외) ○ 지역 여건을 고려 존속이 불가피한 학교 예외
중 학교	○ 학생수 100명 이하	
고등학교	○ 학생수 100명 이하	

3. 연도별 통·폐합 추진 계획('98.12월 수립)

구 분		1999	2000	2001	2002	계	
본교폐교	초	10	5	5	18	38	
	중				1	1	
분교장폐지	초	9	7			16	
	중						
분교장개편	초	6	23			29	
	중	1				1	
통합운영	초			1		1	
	중		1	3	3	7	
계	초	본교	16	28	6	18	68
		분교	9	7			16
	중	1	1	3	4	9	

4. '99.9월 추진 예정교

- 본교 폐지(5개교)

충주 수상초, 제천 공전초, 청원 구성초, 영동 용암초, 범화초

- 분교장 폐지(16분교장)

지역별	충주	제천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진천	괴산	음성	단양	계
학교수	2	1	1	2	1	1	1	1	3	3	16

※ 음성 3분교장 중 2분교장은 '99. 5. 1. 폐교 예정임

- 분교장 개편

지역별	청원	옥천	진천	괴산	음성	계
학교수	5	1	2	1	1	10

5. 음성지역 학부모 조기 통·폐합 요구

- 대상학교: 생극초등학교 관성분교장, 오생분교장

- 통·폐합 시기: '99. 5. 1

- 사 유: 복식수업의 폐단해소와 정상적인 교육을 위하여 어차피 할 바엔 조기 통·폐합 요구

- 대상학교 현황

구 분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수	비고
관성분교장		3	21	4	교원 3
오생분교장		3	29	5	교원 4
생극초	통합전	12	313	21	
	통합후	12	363	21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서

□. 개정사유

- 외국인투자촉진과 지방의 자율·책임성의 제고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
-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98. 7. 16)
- 지방재정법 개정 ('99. 1. 21)
- 교육부 시·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 시안 시달('99. 11. 7)
- 국유재산법과 일반지방자치단체조례와 형평유지 (도조례'99.1.15개정)

□. 주요골자

- 1. 용어 수정 (제6조, 제23조, 제24조)
- 2.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작성시기 규정 (제10조)
 - 현재 작성시기 없음 → 매년 1월 31일
- 3. 직제개정에 따라 청주시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조정(제7조)
 - 부위원장 : 재무과장 → 관리국장
 - 위 원 : 주사, 장학사 → 각 과장
- 4. 외국인투자 기업의 범위 정함(제20조의2):외국인투자촉진법 준용
- 5.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부·매각대상 공유재산(제20조의3)
 - 국가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 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 0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 0 외국인투자 지역내의 공유재산
- 0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 0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외국인투자 유치에 필요한 지역의 공유재산

6.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0 현 행

- 중요재산에 한하여 5년이내의 기간으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고시한 일반여신금리이하로 분할 납부

0 개 정

- 10년이내의 기간 : 5%
 - 타지방자치단체의 업무용 토지
 - 도시재개발사업시 사유건물 점유 토지
- 10년이내의 기간 : 8%
 - 철거 주민의 주거용재산
 - 농업진흥지역안의 농경지
 - 사유건물 점유 토지
- 5년이내의 기간 : 8%
 - 국가에 공공·공공용으로의 매각
 - 교육감이 납부기간 및 명도일을 따로 정할 때
 - 교육감이 일시에 전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 20년이내의 기간 : 4%
 - 전원·다목적개발 관련 재산
 - 인구분산 정책에 필요한 재산
 - 천재·지변,기타 재해시

· 외국인투자 기업에 매각할 때

7. 대부료 사용요율 조정(제23조)

0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 50/1000 → 25/1000

0 학교급식용 재산 : 50/1000 → 10/1000

0 교육행정목적,교육지원사업,교육감위탁사업: 50/1000 → 25/1000

0 외국인투자기업·벤처기업 : 50/1000 → 10/1000

8.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사용료 감면(제23조의3)

0 전액감면

- 고도기술 수반 사업으로 미화 100만달러 이상 투자시

- 2천만달러 이상인 제조업인 사업

- 고용창출 효과 300명 이상

- 50퍼센트 이상 수출 국내부품 100퍼센트 사용

- 100퍼센트 수출

0 75% 감면 : 전액감면 보다 낮은 조건

0 50% 감면 : 75% 감면보다 낮은 조건

9.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의 명확화(제25조)

0 현행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 건물면적의 3배로 산출하는 것을
건물의 사용비율에 따라 면적 계산

10. 대부료 등의 납기 조정(제26조)

0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 60일이내

0 경작목적으로 대부시 계약종료년도 대부료

- 당초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 대부기간 종료전

0 천재·지변,기타 재해시 일정기간 유예

11.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제28조)

0현행금융기관의 일반연체 이자율연18%를 인하여 연15%로규정

- 천재·지변,기타 재해시 일정기간 감면
- 12. 공유임야 처분제한 완화
 - 현행 공유임야는 공공목적에 필요한 경우 매각 가능
 - 폐교,폐과등으로 교육활동 목적을 상실한 공유임야의 공공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처분
- 13. 수의계약 매각범위 확대
 -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
 - 시이외의 지역 400㎡ → 700㎡
 - 농업진흥지역안의 10,000㎡이하 토지
- 14. 관사의 정의
 - 현행 본청 및 청·소의 장 또는 간부직공무원을
교육감·부교육감· 청·소의 장 및 소속공무원으로 함
- 15. 관사 사용료 면제범위 확대
 -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면제

(별첨 3)

폐교현황

99.03.29 현재

구분	자체활용	유상허가	무상허가	매각	보존관리	계
합계	8	44	0	58	52	162
청주	0	0	0	0	1	1
충주	1	7	0	6	7	21
제천	2	3	0	19	8	32
청원	2	3	0	5	3	13
보은	0	5	0	2	5	12
옥천	0	6	0	3	3	12
영동	1	3	0	13	9	26
진천	0	4	0	0	1	5
괴산	1	6	0	6	8	21
음성	1	2	0	1	0	4
단양	0	5	0	3	7	15

(별첨 4)

(제100회 임시회)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안)

1999. 4.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조례심사소위원회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년 3월 20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회부일자 : 1999년 3월 29일

다. 상정일자 : 1998년 3월 29일(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1999년 3월 29일)

○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1999년 4월 1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가. 개정사유

농촌지역의 학생수가 급속히 줄어 2~3개 학년이 한 학급으로 복식수업을 받는 소규모학교 학생들에게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소규모학교를 통·폐합

나. 주요골자

○ 분교장폐지(2분교장)

명 칭	위 치	폐지년월일	폐지사유
생극초등학교 관성분교장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 13	'99. 5. 1.	농촌교육발전을 위한 소규모학교 통폐합
생극초등학교 오생분교장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생리 570	'99. 5. 1.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 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본 개정조례안은 농촌지역 소규모학교 학생들의 교육과정 정상화 및 교육적 효과증대, 인력 및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화 도모를 위하여 분교장을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고 적정히 작성되었다고는 볼 수 있으나,

동 분교장 폐지와 관련한 행정절차에 있어서 행정예고는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라 볼 때 예고기간중에 본 개정조례안이 제출된 것은 절차상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며,

학기중간에 통·폐합이 이루어져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차질이 예상되고, 교직원의 재배치, 예산배정상의 문제점 등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향후 소규모학교 통·폐합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학생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이 이루어지고 제반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별첨5)

(제100회 임시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안)

1999. 4.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조례심사소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년 3월 20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회부일자 : 1999년 3월 29일

다. 상정일자 : 1998년 3월 29일(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1999년 3월 29일)

○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1999년 4월 1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가. 제안이유

- 외국인투자촉진과 지방의 자율·책임성의 제고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 정부에서는 지난 '98. 7. 16.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개정하고 '99. 1. 21. 지방재정법을 개정 공포하였는 바, 이와 관련하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 납부대상 확대 (안 제22조)
 - 현행 중요재산의 매각시만 분할 납부가 가능하나
 - 지방자치단체간의 업무용 토지 매각시
 -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 점유 사용자에게 매각할 때
 -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가, 저소득층에게 소규모토지를 매각할 때
 -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한 경우 등을 추가하여 경제 여건으로 인한 매각대금의 연체 및 이자 부담을 줄이고자 함.
-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인하 (안 제23조)

- 학교급식 실시에 따라 학생들의 급식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급식용 재산은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으로,
 -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는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25로,
 - 외국인투자의 활성화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이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대부료를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으로 인하하고자 함.
-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 특례 인정 (안 제23조의3)
- 공유재산 사용시 사용료 감면
 - 전액감면 : 외국인 투자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제조업, 고용창출 효과가 300명 이상인 제조업, 전체 생산량의 50%이상 수출하는 업체로 부품을 100% 국내에서 조달하는 외국 기업 등
 - 일부감면 : 전액감면에 비하여 투자액 및 고용 효과 등이 낮은 외국인 기업을 대상으로 차등 적용
-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산출방식 개선 (안 제25조)
- 현재까지 건물의 사용료 산출시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건물부지 사용료를 건물바닥 면적의 3배에 대한 재산 가액으로 산정하여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부담하게 함에 따라 과도한 사용료 납부에 따른 부담이 있었으나 건물의 실제사용 비율에 따라 면적을 재산 사용료를 납부토록하여 사용인의 부담을 경감코자 함.
-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율 규정 (안 제28조)
- 현행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은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율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은행의 종류별 연체요율이 상이하고 수시 변경됨에 따라 연체요율 기준을 15퍼센트로 규정함.
- 관사 사용료 면제대상 확대 (안 제52조)
- 현행 관사 사용료를 면제하는 대상이
 -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 관사를 일시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로 되어 있으나
 -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함.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의 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 촉진과 지방의 자율·책임성 제공 및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개정으로,

조례개정 후 교육재정 수입에 다소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교육재산의 사용허가와 임대 등과 관련한 각종 자료관리 및 홍보에도 힘써 교육재정 확보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며,

도내 시·군(특히 시지역)에 있는 소규모 잡종재산의 관리에 있어서도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 주민편의 차원과 교육재정 확보 측면에서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第100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豫算・決算小委員會 會議錄

('99.3.30 ~ 4. 1.)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I. 제10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3
II. 제10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47
III. 부 록	
1. 의사일정(안)	49
2. 1999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	51
3. 서면질문답변서	61
4. 1999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안)	71

豫算·決算小委員會 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9년 3월 30일 (화요일) 10시 02분

議事日程 (제100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附議된 案件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2분 개회)

● 위원장 직무대행 송진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위원장선출의건

(10시 02분)

● 위원장 직무대행 송진하

인사는 생략을 하고, 바로 이어서 위원장을 선출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수 위원

손만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송진하

손만재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만재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교대)

● 위원장 손만재

저는 위원장을 맡아 본 적이 처음입니다. 엄청나게 어색할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행과정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위원님, 또 여기 참석해 주신 여러 집행 관계관계에서 나오셔서 감개무량합니다. 협조를 잘 해주셔서 회의가 시간내에 끝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

(10시 05분)

● 위원장 손만재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방금전의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수 위원

간사 선출은 다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간사를 자원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손만재

김광수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서는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광수

간사로 선출된 김광수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열심히 예산심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 08분)

● 위원장 손만재

다음은 본 소위원회의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편의상 의사일정안을 본 위원장이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소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4월 1일까지로 하여 오늘과 4월 1일 2차에 걸쳐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바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10분)

● 위원장 손만재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심사에 앞서 기획관리과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기획관리과장 이기수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 조 :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별첨2)

(끝에 실음)

이상 간단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손만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위원님 좌석순에 의하여 각 위원님 별로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의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기수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기수 위원

이기수교육위원입니다.

제가 간단 간단하게 질의할테니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세요. 시간절약하기 위해서.

첫번 질의드릴 것은 예비비가 23억이 삭감되었는데 어떻습니까, 예비비는 몇 %의 비율로 세워야한다는 의무조항은 없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예비비를 적게 설정하므로써 불의에 어떤 투자할 곳이 생긴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재정을 융통성있게 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텐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예비비의 어떤 몇 %를 세워라하는 그 기

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은 통상적으로 한 2% 범위내에서 예비비를 책정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서는 59억 있던 것을 이번에 23억을 감해서 각종 사업비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논리를 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해년도 수입은 당해년도에 지출해야 되니까 너무 예비비를 많이 가지고 있지 말라하는 쪽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6억 원정도를 예비비로 놓고 23억을 감했는데, 꼭 몇 %하라는 것은 없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불의의 어떤 재정수요 이런 충당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정도는 해놓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예.

● 이기수 위원

교원명예퇴직 신청자를 400억을 기재하고 우리 기존예산 300억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신청자를 전원 수용할 수 있는 거며, 또 사립학교 61명중에 있는데 그건 사립학교도 같은 조건하에서 명퇴자를 받아 줄 수 있게끔 배려한 조치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예, 먼저 2월달에 조사했던 명퇴신청자는 전원 수용할 수 있도록 지금 예산편성을 했

습니다. 여기 400억하고 저희 자체부담액이 398억하고 해서 798억원을 명퇴수당으로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중등은 신청하면 100% 저희들이 시켜줄 수 있고, 초등은 다만 수급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지 이 명퇴수당이 부족해가지고 재정이 부족해서 못시키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 이기수 위원

아니 4월 몇일까지 다시 받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네.

● 교육국장 최성태

4월 17일까지.

● 이기수 위원

17일까지. 먼저 신청자보다 늘을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고 그렇겠지요?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늘어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늘어도 시킬 수 있습니까?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사립학교도요.

● 이기수 위원

사립학교까지.

그 다음에 아가모운동의 경우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운동인데 여기 예산이 3천만원 이상 소요가 되어 있는데, 예산을 늘리고서 아가모운동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또 아가모운동을 함으로써 1년에 예산절감을 어느정도 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계산인가 뭐 된 것이 없습니까?

● 교육국장 최성태

교육국장 최성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가모운동은 이 절약운동을 통해서 환경을 살리고, 또 예산절감 쪽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아가모운동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의 절감액이 25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23억 내지 25억으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는 주로 홍보 3천만원이 되는데 지도자료 제작이라든가, 이게 이제 아가모운동이 학교내의 운동에서 사회운동으로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과의 연계를 위한 홍보자료라든가, 토론회 개최라든가, 스티커라든가 뭐 이런 것에 주로 지출되는 경비입니다.

● 이기수 위원

네, 알았습니다.

페이지 42에 교육청에도 이제 이런 경비를 세우지 않은 교육청도 있고 한 데도 있고 하지만 매년 예산심의할 때 저희가 질의한 사항이지만 학습자료개발 같은 것도 페이지 42에 보면 영어교재라든지, 사실 이런 것은 한 번에 몇 년치를 개발해 갖고서 보급할 수도 있고, 또 교육청을 전부 수합을 해서 도교육청인 한군데서 말입니다 단가입

찰계 해서 예산절감하는 것만양 이걸 해마다 200부, 50부 이렇게 하지말고 전체교육청 것을 지역교육청 것을 전부 모으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금년할 것이나 내년할 것이나 큰 변동없다고 했을 경우는 하나로 모아가지고 많은 분량의 책자를 개발하고서 그 이듬해에 해마다 이걸 한다든지, 지역교육청마다 이걸 해가지고, 예산이라는 것은 대량으로 했을 때가 상당히 절감되는 얘기거든요. 해야되는데 아직까지도 지역교육청에서 이런 영어교재가 금년에 개발한 것하고 내년에 개발한 것하고 시차적으로 차이나는다고 해서 문제가 될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걸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최성태

초등학교 영어교재개발은 3학년서부터 시작해서 재작년 3학년, 작년 4학년, 금년에 5학년, 내년에 6학년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시행년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금년에 5학년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마다 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이 학년별로 금년에 5학년까지합니다. 내년에는 6학년 이래서 금년 여기에 학습자료개발 계획은 5학년 분의 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비단 영어교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교재도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다음 뒤에 넘어가서도 지역교육청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아니 지금 여기 개발비라든지 교재를 똑 같은 것을 도내 전체 활용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일괄해서 제작도 해주고 개발도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따따따로는 안합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런데 한 두군데가 또 교재개발하는 데가 있던데요, 지역교육청별로?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이것은 혹시 자체로 어떤 교재를 개발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도내 전체되는 것은 도에서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일괄해서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말씀하신 대로 수당도 절약되고, 인쇄비도 절약이 됩니다. 당연합니다.

● 이기수 위원

그건 뭐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만다 누차에 말씀 올렸던 사항이니까 그건

그리고 페이지 48페이지에 교원단체활동 지원비가 금년에 신설해서 바람직한 얘기인데 지원비 속에선 작품활동지원비도 포함된 것입니까?

● 교육국장 최성태

교원단체 직접 도와주는 그러한 동기가 아니고, 거기 교원단체활동경비는 저희들이 팀이 구성되었는데 그 세분들의 관내 관내의 여비, 그 다음에 교원단체활동지원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300만원인데, 이것은 협의회를 한다든가 교원단체가 지금 전문단체로서 교충이 있고,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합법화해서 하는 전교조 쪽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다시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분들과 협의 또는 토론이려한데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300만원 업무추진비, 그 밑에 있는 자산취득비는 우선 사무실을 만들어야 이 분들과 만나서 협의도 하고 업무추진도 할 것 같아서 지금 3층에 조그만 사무실을 만들고, 또 협의장소를 만들고 하는데 들어간 용품비입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런데 또 이 전에 보면 교원단체연합회에서 자료전을 하든지, 출판한 선생님들한테 보조정도로 해가지고 100여만원이 계상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없어졌습니까?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네, 없어졌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러면 금년부터는 그걸 지불을 안하나요? 왜 하던걸 예산도 얼마 안될텐데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해야될 사업같은

데요. 예산도 그렇게 많이 늘었는데, 해마다 하던 것을 편성을 안했습니까? 여기 경비가 300만원이었었죠?

● 교육국장 최성태

네, 300만원이요.

● 이기수 위원

300만원 편성한 것은 바람직한 얘기인데 이왕하는 김에 100만원 더 올려 가지고서 그 분들이 매해마다하는 자료전하고 난 다음에 격려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출품한 분들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얼마 안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런건 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건데 그걸 삭감하고

● 교육국장 최성태

저 지원비라고 지금 특별히 계상된 것들 저도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교원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시상등은 각 사업별로 또 시상 이런 것들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런데 국장님 해마다 교원단체연합회에서 자료전을 해서 출품합니다. 출품하면 거기 입상한다든지, 출품한 분들한테 다만 얼마만큼이라도 그 분들한테 격려하기 위해서 줬던 돈이 있어요. 그게 많지도 않고 한 100여만원 이렇게 범위안에서 되는 얘기인데, 그거 예비비라도 해가지고 교사들의 사기진작, 정년이 줄어가는데 여러가지 교사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하던걸 없앤다든지하면 더욱더 교사들의 사기가 침체되어 있고 이럴테니까 그건 예비비로라도 해서 예비비가 36억이나 넘었는데 그거 돈 100만원되는 걸 하던걸 안해준다면 좋아진 것은 금방 모르지만 하던걸 안해준 다든지 하면 교사들 금방 압니다. 그런거니까 그건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61에 통·폐합학교 버스구입과 임대로 둘로 나뉘어 있는데, 임대했을 경우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경비절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임대를 하고 구분한 얘기입니까?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저희들이 버스를 임대하는 것하고 직접 차량을 구입해서 운행하는 걸 비교해 봤습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 약간있어서 임대하는 것이 비용이 약 월 8만원정도 차이난다 이렇게 차이가 적게 들어가는데 학부모님들은 임대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아주 단독 학교버스를 사주어서 그 학교 학생들을 통학시키길 바라지, 관광회사라든지 영업용 버스를 임대해가지고 학생들 통학시키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조금 더 들어 가더라도 학부모들의 의견이나 학생들이 원하고 해서 통학버스를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59에 중앙도서관에 도서

구입비, 또 각 교육청에 도서관들이 대개 있는데 도서관구입비는 이 추경에서는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는데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당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예, 들어가 있지요. 그런데 그 청주 중앙 도서관 같은 경우도 가보면 도서관이 아주 빈약합니다. 여러가지 시설이나 그런 것도 그렇고, 서고에 들어가보면 아주 오래된 책으로서 불만한 책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이 생각되는데, 도서관구입 쪽에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교원임용시험이나 이런 경우에 관리·출제·감독수당 모든 기준들은 어떻게 국가에서 될 얼마큼 설정해가지고 해라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거지요?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예, 예산편성 단가기준이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페이지 96에 청주교육청에서 다른 데는 전부 없는데 연금업무추진비라든지, 예산작업에 소요되는 직원들을 동원해가지고서 4분이 물론 청주교육청은 예산이 590억이나 되고, 다른데 예산의 몇배가 되지요. 충주가 두 번째지만 220억 밖에 안되고, 60억되는 데에는 한 10배쯤 되는데, 거기만은 꼭 그렇게 한달씩, 4명씩 동원해가지고서 예산작업을 하고 하는데 경비설정하고, 또는 연

금업무는 어떤 연금업무추진하는데 비용이 계상되었는지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청주교육청은 산하 초·중학교가 타시·군에 비해서 거의 3배씩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원수가 그만큼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연금관리를 지역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야근이 많습니다. 그걸 관리하다보니까, 그래서 아마 거기에 필요한 예산작업도 그렇고, 그래서 특근매식비라고 그래서 5천원씩 저녁식사 아마 그것을 예산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끝으로 한가지만 더 문의를 하겠습니다.

104페이지에 책·결상을 구입하는게 있는게 어떻습니까 지금 농촌 폐교학교에 있는 책·결상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혹시 신설학교라든지 또는 이런 책·결상이 부족한 학교는 폐교한 학교의 책·결상을 쓸만한 것을 전부 모아서 거기에 충당할 수는 없습니까? 그게 어떤 상황입니까? 다시 구입해야 할 긴박한 사정이 있는건지?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폐교학교에서 남는 책·결상은 저희들이 전부 관리를 해서 다시 수선도하고 해서 기존학교에 부족한 학교에 전부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책·결상은 이게 9월 1일

자 개교할 신설학교 분에 대한 책·결상 구입비입니다. 신설학교까지 현책상 갖다주는 맞하고 신설학교만은 그 교실에 책·결상을 주고 기존학교는 그걸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앞으로 경제도 어렵고 한데 폐교학교의 책·결상문제는 아주 잘 아껴서 그 교구라든지 이런 것을 재활용할 수 있게끔 아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손만재

이기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일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일 위원

몇가지만 질문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쪽에 보시면 우수학교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00만원씩 28개교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어느 학교를 지원해 주는지 그 자료를 시간나는대로 하나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예, 이것은 교육국에서 작년 '98년도 학교평가를 했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 참 조 : 서면답변자료 (별첨3)

(끝에 실음)

● 이상일 위원

그리고 46페이지에 보면 교육비전 2002년 연수라고 그래가지고 연수교재를 2천원자리를 6천부 제작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원고료를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대개 집필지는 누가 이 책을 쓰게 되는 겁니까?

● 교육국장 최성태

연수교재 집필지는 저희 전문연수를 받은 교원들이 집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천부는 각 교과별로, 중·고등학교 교과별로 이 연수를 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많고.....

● 이상일 위원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도 교육청에서 상당히 많은 재원을 들여서 이런 각종 자료 이런 것을 제작을 하는데, 일선 학교에서 잘 활용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1,500만원이나 들어서 연수교재를 제작을 하는데 이게 활용이 과연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49쪽에 거기도 학교운영우수학교평가 그것도 자료를 어느 학교가 잘하고 있는지 참고자료로 쓰려고 그러합니다.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51쪽에 보면 충북교육발전기획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서 4,914만원이 되는데, 발전기획단은 누가 누구로 어떻게 구성하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발전기획단은 저희들이 운영하게 된 동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1999년이 마감하고 내년부터 2000년대가 되면서 충북교육의 하나의 계획이라고 그럴까요, 장기계획이라 그럴까 그것을 만드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어떻게 기획단을 구성했느냐 하면 단장은 부교육감님으로 되었고, 각 연구사님들, 또 학교 그 분야에 능력있는 선생님들, 그리고 행정직도 들어가고 기술직도 들어가고 해서 18명으로 기획단을 구성했습니다.

● 이상일 위원

18명이요.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예, 여기 보시면 저희 과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제가 팀장으로 되고, 간사 총괄적인 내용총괄은 교육과학연구원에 강병수 연구관님이 책임을 맡아서 가지고 1,2,3,4,5 개 분과로 나뉘어 가지고 1분과에 3명 정도씩 연구사님 한분, 선생님 두분, 또 분야별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명단까지 제가 가지고 있으니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그리고 이것은 사무실을 어디 별도로 개설을 하는 것이지요?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지금 3층에 저쪽 초등교직과가 있던 자리에 다가 개설해서 거기서 상주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이거 상설기관으로 해서 금년 1년간 운영하는 겁니까?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6개월간입니다. 3월 1일부터 8월말까지입니다.

● 이상일 위원

6개월간.

그 다음에 63페이지에 보면 그 평생교육 체육과에 학교보건급식관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제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하고 그래서 약 1억 1천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이것 지원범위를 대충 어떻게 정하시는 겁니까?

● 교육국장 최성태

지원범위는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실직자라든가 저희들 기준이 한 6, 7가지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학교에서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선정해서 온 전체 인원중에서 그것이 전체인원이 6,598명이 나왔습니다.

● 이상일 위원

6,598명.

● 교육국장 최성태

그중에서 학운위를 통해서 학교자체 해결

자가 2,497명이구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 이제 예산에서 지원해서 또는 성금으로 지원해야 할, 도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해야 할 학생이 4,461명입니다. 거기에 지금 지원되는 우리 추경에 이번에 들어가는 11억 841만원이 공·사립을 통해서 거기 지원됩니다.

● 이상일 위원

그러면 이 예산만 투입을 하면은 우리 도내에 결식아동은 없는 겁니까?

● 교육국장 최성태

이 예산이 들어가면 학기중 거의 해결이 됩니다만 방학중이 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돈이 총 약 14억 정도가 모자라는데 이 부분은 지금 앞으로 들어올 성금, 또 도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운동모금회 이쪽에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방학중 것이 해결이 안되어서 지금 노력중에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네, 저희들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게 아니고 지역의 유지라든지, 또는 뜻있는 분들은 사실 한참 커야할 나이에 점심을 못먹는다는 것, 사실 우리가 다른데 예산을 못써도 아이들 밥 먹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방학때만 못먹이고 이 예산이면 수업을 하는 날은 먹일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14억이 부족한데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 도내에서는 점심을 굶

는 학생이 없도록 좀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본청에 시설 청사보수비로 14억 2,1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청 건축한 연도가 언제입니까?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20년 되었습니다. 79년입니다.

● 이상일 위원

이번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수를 해야될 형편이 되었습니까?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제일 문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외벽에 타일이 자꾸 떨어지고, 자꾸 누수가 되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제일 위험한게

● 이상일 위원

외벽보수에 약 8억 8,800, 그럼 거기에 화강암 돌을 붙이는 겁니까, 아니면 타일을 다시 붙이는 겁니까?

● 시설과장 오형균

알미늄판넬을 붙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하얗게 알미늄판넬로

● 건축계장 박민수

위원님 혹시 샘플로 하나 가져 왔는데요. 알미늄판넬이라고 저희 건물이 단열이 안되어 있습니다. 건물자체가 그래서 단열을 겸

해서 타일을 떼지 않고 그대로 밖에 대는 공
법으로 그렇게 쉽게

● 이상일 위원

그러면 그것은 내구연한이라 그럴까 수명
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 건축계장 박민수

이 자체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20년은
되는 것 같습니다.

● 이상일 위원

물론 우리 도교육청 청사가 우리의 상징
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말끔한건 좋지요. 그
런데 과연 도교육청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
여서 수리를 해야 하느냐하는 것은 한번 같
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그 학생
종합야영장 본관 보일러 교체하는데 1억 예
산이 들어가는데, 이 학생야영장 운영실태
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광활한 땅에 그 많
은 시설을 들어서 야영하는데 그 만큼 효과
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역교육청별
로 야영장이 다 있습니다.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간이 야영장입니다.

● 이상일 위원

글쎄 간이 야영장인데 그것을 좀더 시설
을 보완을 해가지고 쓰면 많은 학생들이 진
천까지 안와도 되고, 더 효율적일 것 같다
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는 요 근래 폐교
된 학교중에서 학생야영을 할 만한 시설이

좋은 데가 참 많습니다. 그건 뭐 관리인이나
하나 두고 조금만 보수하면 쓸 수 있는 거
고, 또 여기서 예절교육 같은 것을 시킨다
고 그러는데 예절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전
도의 학생을 여기 불러 모아야 하느냐. 예
를 들어서 먼저 우리가 실패작 중의 하나가
충주에 언월초등학교라고 있었습니다. 거기
저희들 초대교육위원 때 한 5억을 들어서
거기를 여학생 예절교육을 한다는 안이 와
서 저희들이 회의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래서 1차로 한 1억 5천인가 들어서 축들을
쌓고하는 공사에서 저희들이 제동을 걸어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한번 생
각을 해보십시오. 한 6억정도면 충주에 3
억, 제천에 3억을 들이면 학생예절관 실컷
짓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애들을 버스로
거기에 와서 거기 산골짜기에 관리도 문제
고 여름한철 쓰기 위해서 하느냐. 지금 결
국 그거 매각도 안되고 그냥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생종합야영장도 앞으로는 가능한
지역교육청에 있는 야영장을 더 활성화 해
가지고 이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생각
해 보면 어떨까. 그렇게 거대한 시설을 유
지관리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
다. 심지어는 어느 지금 야영장에는 기능직
하나 배치되어 있는 것도 구조조정에 의해
서 그만 두어야 되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억이고 3억이고 투자를 해냈는데
거기 기능직 하나도 둘 형편이 못된다 그러

면 그거 밤에 경치 좋은데 애들이 와서 대학생들 담 타넘어 들어와서 야영한답시고 하면 시설 망가질거라고요. 그렇게 있는 시설도 관리가 안되는데 저렇게 거대한 시설을 운영하는게 재정면이나 교육적인 면에서 효과가 있겠느냐하는 문제도 한번 짚어 보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조금 정책적인 것이 되어서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런데에 예산이 조금 줄더라도 지역교육청에 있는 조그만한 야영장 같은 데를 좀 알차게 운영되도록 예산이나 인적배치나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교육국장 최성태**

저 생활관 관계, 예절교육 관계는 지금 도내 가정과 교사가 없는 곳에도 여학생이 있는 곳이 있고, 생활관이 없는 학교를 뽑아서 생활관 준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학교 여학생들을 그 쪽에 종합야영장에 보내서 지금 예절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찻 버스를 타고 멀리 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 야영생활은 학교장이 인근의 폐교 또는 방학때 같은 때는 초등학교 경관이 좋은 초등학교 시설을 이용하든지, 지역의 야영장을 이용하든지, 종합야영장을 이용하든지, 또 필요하면은 사설야영장까지도 학교의 형편에 따라서 이용하도록 그렇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종합야영장은 대개

6월서부터 8월까지만 야영시기에는 밀려가지고 제비뽑기를 해마다 하고, 운이 나쁘면 9월까지 밀려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만재**

이상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충원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충원 위원**

이충원위원입니다.

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발전기획단 운영에 대해서 조금 여쭙 보겠습니다. 이게 한시적인 기구같은데 지금 뭐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대충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이럴 필요가 있느냐하는 것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한시적이라고 하면서 여기 보면 월간도서 구독료, 신문구독료 6개월 한다는데, 기왕에 운영을 하기로 작정한 것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표현을 다른 데다 넣더라도, 그렇잖아요. 여기다가 바로 3층에 있다면서 컴퓨터, 프린터, 컴퓨터도 5대 조금 표현이 돈 자체를 깎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넣을 때 잘 이걸 좀 하셨으면하는 생각이 듭니다. 6개월간도 이젠 아니잖아요. 8

월까지 하신다면서요.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예, 8월말까지입니다.

● 이충원 위원

그렇죠. 4, 5, 6, 7, 8 5개월인데, 컴퓨터는 5대씩이나 사고, 물론 사가지고 두었다가 떼내 쓸테지요 가져가는게 아니지만, 이런건 검용할 수 있는데 지금 자꾸 아끼자 아끼자하는데 그래서 이런건 제가 보기에는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거 보면 예산작성해 놓고 어디가 뜯어 놓을 때가 없으니까 분산하는 느낌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느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6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잘 못했습니다. 학생야영장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1억 5천이 투입이 됩니다. 서해해양수련원 운영이 것이 금년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더 투자를 안해도 되겠어요?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이 서해수련원에는 이것만 투자를 하면 더 투자 안해도 됩니다. 지금 거기 땅은 사 놓고 원 건축은 아직 못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기다 웬스를 치고 조립식으로 접었다 설치했다하는 간이 조립식으로 그 샤워실이라든지, 화

장실이라든지, 또 관리사무소, 학생들이 가면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물막 이런 시설을 최소한 저희들은

● 이충원 위원

두번을 일부러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아직은 안되었고, 바로 시작이 될겁니다.

● 이충원 위원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에요. 처음에는 그것에 대한 건물을 짓는다고 한건데 여차피 못하면 매년 이렇게 자꾸 계속적으로 투입을 한다고하면 그 효과면으로 봐서 얼마만큼 교육효과가 있느냐 해서 지금 여쭙보는 겁니다. 금년에 이게 들면 더 들지 않는 것이다. 잘 못했다는 말씀은 책임자되시는 분이 아마 모르긴 하지만 학생야영장에 있지요?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예.

● 이충원 위원

여기 있던 이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좀 자세히 들어 봤으면 했는데 제가 미처 그걸 못해서 오늘 안오신 것 같은데, 더 들어가지는 않는다.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그 기존 시설만 하면 나머지 운영비 정도만 들어가면 내년에도 더 안들어 갑니다.

● 이충원 위원

제가 가보니까 할 것 투성일 것 같아요. 할게 보통 많은게 아닌데, 애들 데려다가 여름방학에 수영 며칠씩 다가도 못하는 것 이거든요. 그걸하기 위해서 계속 저렇게 들어가는 것을 차라리 돈을 나눠주고서 그 돈을 가지고 너희들 마음대로 가서 수영을 하라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봐 주십시오.

이거 제가 잘 몰라서 여쭙 보는데요. 7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상교육지원하는데 기획관리과에 있는 것 경상교육지원사업비를 책정했는데 이걸 뭐예요, 늘었는데 얼마가 늘었는가 하면 1억 6천이 늘었나요?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5억 3,600이 늘은 겁니다. 두가지 합쳐가지고

이것은 뭐냐하면 특별재정수요지원비라는 것은 이걸 예산지침에 총 예산액의 0.3% 범위내에서 이렇게 책정을 해가지고 어떤 예측불허한 사항이 학교나 현장에 발생했을 적에 이걸 지원해주는 그런 예치금입니다.

● 이충원 위원

제가 그래서 바로 여쭙보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선심성 예산이 될 수가 있는 느낌을 받고 실제 현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조금 한번 짚어 봐야 하지 않느냐하는 말씀을 제가 여쭙는 것이죠.

다음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혜원고등학교의 사유지 매입하고, 105페이지에 수용시설 중에서 비하중학교 토지매입비입니다. 이것도 제가 법규정을 잘 몰라서 여쭙보는 겁니다. 보게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고 하는데 있죠. 그래서 제77조에 보게 되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과 취득에 관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공유재산취득을 하려고 하겠다는 계획을 먼저 의회에 통과가 되고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과 관계 없이 예산을 하는 것인지. 이따가도 그 얘기가 나올텐데 이번에 내주신 것 중에서 비하하고 여기 두군데에 학교 토지매입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제 개인적인 상식에는 이 계획안이 먼저 통과가 되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해서 여쭙 보는데, 그 선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은 계획이 먼저 되고, 그 계획에 예산이 쫓아가고 그러니까 계획이 먼저 되는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 확정된 후에 저희가 예산이 뒷받침 돼야 되는데, 그것이 저희들 예산이 계획된 대로 쫓아갈 수 있다면은 그렇게 미리하고 그렇게 됩니다. 뭐 국가예산도 그렇고, 저희 지방예산도 그렇고, 기획예산

제도라는 것이 계획이 먼저 되고, 예산이 뒤 쫓아가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지금 많습니다. 저희들이 잘 못되는걸 알고 있으면서도 예산을 이걸 나중에 편성할 적에 이 예산이 여기까지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하는 재원 배분이 되어야지 그 계획이 되지, 계획은 해놨는데 예산이 뒤쫓아가지 못하니까 지금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건 먼저하는 것이 맞습니다.

● 이충원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가정할 수 있습니다. 도심지역의 토지매입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미리 계획서가 나가게 되면 땅을 안팔려고 하거나 지가상승과 하락 관계없이 상당히 사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려움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서 어차피 예산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계획서부터 해서 그것이 의회 통과가 된 뒤에 이걸 하는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건 법절차이니까 잘 모르니까 여쭙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같은 질문인데 시설과건데 87페이지 아까 이위원님이 상세히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신문도 제가 오려가지고 왔습니다만 물론 우리 학생이 바로 도민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구차한 방법에 의해서 아이들 급식을 논의하고 있는 판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떨때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책적인 얘기지만 이복에 쌀 보내는 대신 애들 먼저 먹여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개인적인 내 생각입니다. 그런데 정치는 정치이고, 교육은 교육인데 지금 37억이 필요한데 12억만 확보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 14억 정도가 부족하다하는 말씀을 했죠. 이렇게 한데 저는 이렇게 아이들이 점심을 못먹는다고 자꾸 신문에 나고 있는 판에 당장 들어갈 때가 없으면 모르지만 저기다 뭘 지금 화려하게 붙인다라고 했을 땐 조금은 어찌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년이고 후년에 치장을 하는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봤어요. 여러군데 떨어져서 참 창피스럽데요. 그런데 때가 이런 때가 되어가지고 말이죠. 조금 이해할 수 없나 이런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본청 시설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이게 '98년도 예산에 이미 확정이 됐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설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하반기에 IMF로 인한 국가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제일 먼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유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유보를 하고 이월금을 넘기고 하다 보

니까 아까 저희 직원께서 말씀드렸듯이 우선 난방이 안되어 있습니다. 단열이, 그래서 난방, 열소모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엉망입니다. 이쪽 뒷편에는 유리창이 단면 하나로 되어 있어가지고 바람이 솔솔솔 들어오고 이런 문제가 되어 있고, 벽은 벽대로 또 누수되면서 떨어지고 이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이충원 위원

저희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봤을 때에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 같은, 8억 들거든요. 저게 외벽만 하는데 그렇죠?

● 시설과장 오형균

예.

● 이충원 위원

8억 8천이면 9억정도 드는데, 그래서 같이 걱정스런 생각에서 제가 여쭙보는 겁니다.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충분히 느끼고 있고, 저희들도 저것을 시설하면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건 솔직한 심정이고 단지 중식비지원 예산을 100% 책정 안한 것은 저희들이 하나의 의도적인 것도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희 도교육청에서 중식비 예산을 100% 책정을 해놓으면 저쪽 도청이라든지 일반인들 그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100% 해 났기 때문에

안옵니다. 그래서 그런 유도책도 필요해 가지고 저희들이 학기중에 그러니까 학교 나올 적에는 저희들이 해결을 하고 방학중에는 외부지원유치도 좀 국가에서 자꾸 외부 지원유치자금 끌어들이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것도 있습니다.

● 이충원 위원

그 이외에는 다른 위원님들이 여쭙봤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만재

이충원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1시간이상 지났는데 위원님들 한 10분 정회를 하시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 위원장 손만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진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진하 위원

송진하 교육위원입니다.

본도는 지난해 물품단가입찰제를 창안해서 많은 예산을 절감한 바 있고 김영세 교육감께서 올해는 계획된 사업에 차질없는 수행, 교육기관운영의 효율성 등 5개항을 밝힌 바가 있는데 이와 같은 시책이 금년 예산에 반영되어 세계화를 주도하는 인재육

성이라는 본도 교육행정의 기본목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히 짜여진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서 물어 보겠는데요.

이 법정전입금이 35억 2천여만원이 되는데 이걸 몇 %입니까?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도세수입에 2.6% 되겠습니다. 도세입금에 도에서 받아 들이는 세금에 2.6%를 저희한테 주는 겁니다.

● 송진하 위원

예산의 5%는 뭐예요?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아닙니다. 그 법정전입금은 100분의 2.6, 1000분의 26입니다.

● 송진하 위원

그럼 이걸 다 받은 겁니까?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아직 안 받았습시다. 여기 예산을 넣어야지 도에서도 예산을 같이 넣어서 도청에서 저희한테 넘겨주는 것이죠.

● 송진하 위원

그래서 항상 다 받는 건지 못 받는 건지 그게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저희가 예산이 서야지 저쪽에서 넘겨 줍니다.

●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지난해는 다 받아 왔었습니다.

● 송진하 위원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서요. 화장실보수개선 예산 문제인데 화장실보수에는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역교육청에서 31억여원, 또 고등학교에서 7억여원, 지원기관까지 합하면 무려 38억 4,522만원의 예산으로 화장실보수개선하려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여기 숫자는 다소 차이가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이 38억여원은 화장실 47실을 신축할 수 있는 예산이고, 교실을 67실을 신축 또는 개축할 수 있는 예산이고, 도내 11개 지역교육청 교육행정비 예산이 45억이 있는데 여기에서 10%를 절감한다면 화장실보수 예산은 본도 지역교육청 교육행정비와 맞먹는 예산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막대한 예산으로 화장실을 보수해야만 되는가 하는 겁니다. 부실공사로 인한 것인가, 아니면 겨울 동파 등 관리소홀로 인한 것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 시설과장 오형균

시설과장 오형균입니다.

여기에는 신설학교분까지 지금 들어가 가지고서

● 송진하 위원

아니요. 순전히 보수만 새로 짓는 것은 아니고.

● 시설기획담당 이흥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p>시설기획담당 이흥무입니다.</p> <p>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전체 포함해서 말씀하신 사항인데</p> <p>● 송진하 위원 보수하고 개선.</p> <p>● 시설기획담당 이흥무 저희들이 학생화장실은 신축비가 8,130만원이고, 또 다시 지을 때는 일반 보수할 때는 5,660만원 정도 계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년수가 오래했기 때문에 어떤 관리상에 하자는 없는 것이고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관이 낡았다던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p> <p>● 송진하 위원 글쎄, 그래서 금년도에 38억을 들여가지고 전부 보수를 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더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고한다면 모르지만 여하튼 38억원이라는 예산을 화장실보수개선에 쓴다고 하는 것은 제고해야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한번 개선해 보세요. 여기 예산상에 나타난 보수개선만 한 것입니다. 신축은 안하고, 이것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오래되어서 보수는 다소는 해야되지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느냐하는 문제는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p> <p>● 시설기획담당 이흥무 저희들이 자원배분할 때 지역교육청 교육</p>	<p>장님이 최대한으로 존중해가지고 지역교육청의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관리를 잘 해가지고 뭐 그런쪽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p> <p>● 송진하 위원 그것보다도 내년에는 최소한도로 들어가도록 돼야지요.</p> <p>● 시설기획담당 이흥무 예, 알겠습니다.</p> <p>● 송진하 위원 그 다음에 교원편의시설 문제인데 그 편의시설 확충문제를 보니까 초등학교에는 약 8억 6천여만원, 중학교에 1억 1천여만원, 고등학교에 1억 2천여만원 해서 토털 10억 9,940만원인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교원편의시설하는데 그런데 지역교육청 중에는 2억 5,640만원의 예산을 세운 군도 있고, 전혀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군도 있습니다. 교원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교원의 사기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도내 각학교에서 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교원에게 고루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는데 하나도 안 세운 군과 2억 5천여만원 세운 군은 교육장의 관심에 따라서 관심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지역교육청에 편의시설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확충이 필요한 만큼만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우도록 한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p>
--	---

● 시설기획담당 이흥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원편의시설 기본원칙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첫째로 여유교실을 활용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세운 것입니다. 여유교실이 있는 학교를 조사를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억 5,640만원 되는데는 음성입니다. 그런데도 있고 하나도 없는 데는 거꾸로 말씀드리면 여유교실이 없다는 그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여유교실이 있는데는 저희들이 내부시설 개조하는데 1천만원을 생각했구요. 거기에 편의실 비품비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12억 2,780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 송진하 위원

글쎄요. 여유교실이 군내에 한칸도 없는 그런 군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고루 혜택을 준다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느냐하는 생각됩니다.

● 시설기획담당 이흥무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송진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만재

송진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광수

김광수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기 전에 시·군교육청 단위로 예산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사전에 지정 배분해 주시고 교육청 단위로 이번에 20억이다 30억이다 이렇게 나눠주고서 그 범위내에 예산을 편성을 하라고 하는 것인지, 사전에 그 자료를 현황사업자료를 전부 받아가지고서 거기에 안배를 해 주는 것인지, 또 그렇게 해가지고서 시·군단위로 지금 송진하위원님이 질문한 것과 관계가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시·군단위로 그것을 적절하게 안배형식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지역교육청 예산은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가지를 다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목적을 지정해서 이것은 어떤 사업이다 해가지고 그 사업비로 배분해 주는 것하고, 또 교육장님이 직접적으로 편성하실 수 있게 저희들이 재원만 배분을 그것이 얼마냐하면 이번에 44억 정도를 지역교육청에다가 재원만 배분해 주고 교육장님이 판단 하셔서 세워 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이 된 것하고 재원만 배분한 것하고 두가지가 교육청에 가가지고 편성이 되겠습니다.

● 간사 김광수

목적사업은 이렇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했고, 그렇지 않고서는 교육청단위로 얼마씩

취가지고서 이 범위내에 예산을 짜봐라.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작년도 '98년도 예산을 지역교육청에서 절감한 부분은 전부 교육장님한테 그냥 어떤 목적없이 그냥 재원배분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야 지역교육청에서 아낀 보람도 있고 그런것도 필요하고 이렇게 되어서

● 간사 김광수

그것이 인제 그 예산을 보면 어떤 시·군에는 들어있고, 어떤 군에는 안 들어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학교 학생숫자나 그것하고도 균형을 맞춰야지 또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명퇴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중등은 별 이상이 없었다 했는데, 초등에는 얼마만큼의 문제가 오게 됩니까?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니까 서울은 내년도에 퇴직금이 명퇴금이 조정이 되고 적게 준다고 해가지고서 지금 명퇴신청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국립에.

● 교육국장 최성태

교육국장 최성태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년도 2월달 전년도가 아니라 지난 2월달 명퇴시에 아시는 바와 같이 중등교원은 전부 희망자를 다 해주었고, 초등교원은 수급관계 때

문에 명퇴희망자 중에 정년퇴직 말고 명퇴희망자가 400여명 나왔었는데 그 중에서 132명을 내보내고 한 250여명이 지난번에 못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 올린대로 4월 10일 서부터 17일까지 저희들이 상반기 명퇴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지상보도 된대로 연금이 줄어드느니 하는 이런 통설 때문에 저희도도 지금 받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알수 없습니다만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큼니다. 타시·도의 지상보도를 보면은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아까 관리국에서 얘기대로 예상되는 희망자에 대해서 명퇴금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수급관계도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최대한 다 시킨다는 좋은 쪽으로 다 시키는데 그 수급관계를 우선 복수교감 다 없애고 단수로 하고, 소규모학교 교감은 최악의 경우 담임을 담당하도록 하고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인해서 나오는 교원, 또 231명에 달하는 초등 교과전담교사를 전부 중등으로 교체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지금 예정되어 있는 숫자는 그렇게 하면 230명에 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여러가지 것을 해서 하여튼 최대한 한다하는데 참 전년도 전년도가 아니고 2월달에 못한 사람들은 거기에 알파정도는 다 수용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상외로 지금 타시·도에서 일고 있는 그러한 바람이 불어서 예상외로 400명, 500명 이렇게 쏟아져 올

때는 지금 그 해결방안이 수급 해결방안이 지금 좀 막연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신학 연도초 같으면은 다른 방법, 저희 도가 평균치로는 타시·도에 비해서 학급당 평균인원이 작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2학기에는 조정하기가 학급당 인원을 조정하기는 지금 검토할 수가 없는 것이 학급을 재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학급담임을 맡기는 것도 어려운데 학생들을 이동시키는 것은 지금 사실상 불가능하고 해서 아까 말씀올린 것이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최대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동원해서 희망자를 모두 내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배의 희망자가 나타났을 때는 정말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좀 막연한 형편입니다.

● **간사 김광수**

알았습니다. 차질이 없어야 될텐데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학교중·개축을 하는데 지금현재 추경에도 교실신축하는 것, 개축하는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의결을 하고, 그 다음에 도의회에 가서 최종적으로 의결을 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그때가서 하게 됩니까? 한 다음에 이것을 발주가 될려면 금년도에 내년 3월 1일자 수업을 맞춰서 이게 할려고 하는 것인지, 이 공기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공기는 이게 몇

개월로 잡고 있습니까? 지금 추경하는 거요.

● **시설과장 오형균**

지금 설계자체는 도의회 심의가 끝나서 예산에 확정될 때부터 설계가 들어 갑니다.

● **간사 김광수**

아니 지금 추경에 하는 것이 설계가 다 되었어요?

●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추경한 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 **시설과장 오형균**

글쎄 도의회 승인이 나면 그때 설계가 됩니다.

● **간사 김광수**

설계가 되지요. 그렇게 되면 금년말까지 이게 공기를 언제까지 잡고 있는 건가요?

● **시설과장 오형균**

그래서 지금 소규모 개축사업 같은 것은 금년도에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전면개축하는 20실 이상 하는 것 같은 데는 대형교실을 사용해서 수업을 하면서 내년도까지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실제 내년 3월 1일 증설되는 학급에 대한 예산은 이번 추경에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건 미리미리 공기를 감안해서 예산반영을 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내년 3월 1일은 추경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 **간사 김광수**

본 예산에 서있는 교실신축 같은 것은 보

편적으로 공기를 몇 개월로 보고 있습니까?
발주해서 완공 공기를

● 시설과장 오형균

통상적으로 신설학교 같으면 한 365일 정도 이렇게 근 1년간 들어갑니다. 그렇게하고 보통 증축정도하면 6개월 내지 8월 그런 상태에서 끝납니다.

● 간사 김광수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것 같으면 본 예산에 편성이 된 것 말이지요. 아직까지도 발주가 안되었잖아요?

● 시설과장 오형균

일부 발주하고 지금 4월중엔 거의 발주가 될 예정입니다.

● 간사 김광수

4월중에 그전에 볼 것 같으면 4월이나 5월중에 발주가 되더라고요. 발주가 되면 그 예로 봐서는 12월말까지 이렇게 잡혀있는데 12월말에는 추워서 좀 앞에 단축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볼 것 같으면 360일이 안되지요.

● 시설과장 오형균

보통 큰 학교는 360일씩 걸리는데 보통 우리가 7교실이나 몇교실을 증축할 때에는 12월에 다 끝날 수가 있습니다.

● 간사 김광수

그래서 그전에도 그런 얘기가 되고 했습니다만은 공기를 충분히 주어서 완전한 교실을 완전한 학교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이 예산상에도 본 예산에도 있고 추경에도 또 들어와 있는데 이 지붕방수관계 말이지요. 이런 것이 이러한 건물 공기 또는 건축할 적에 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게 지붕방수라고 하는 것은 뭐 지붕이 새기 때문에 방수는 해야되지만 이게 그 원인이 어디서 지붕누수가 생기는 것입니까?

● 시설과장 오형균

지붕방수는 통상적으로 그전에 교실을 이어 짓다 보니까 그 이은 부분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는데 그 방수방법도 사실 여러가지고 공법도 여러가지인데 해보면 보통 전체적으로 한층 막으로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안생기는데 중간에 두번 내지 세번 이어지는 것에는 거의 방수하는 데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 최대한 저희가 방지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간사 김광수

아니 지금 제가 물어보는 얘기는 이음이 라든가 이런데서 방수가 생기는 것은 그럴 법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음이 아니고 교실전체가 누수가 된단 말이지요. 지붕이 이런 것이 상당히 있는데 이런 것은 설계자체부터, 또는 시공하는 과정부터 이게 근본적으로 잘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엔 추경에 좀 빼보

려고 하니까 다 못 빼겠어요. 각 시·군에 들어 있는 것 같은 것 말이죠. 지방방수 예산이 총 얼마나 소요되었는가 하는 것을 좀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과장 오형균

예, 따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 참 조 : 서면답변자료 (별첨3)

(끝에 실음)

● 간사 김광수

그렇게하고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는 중에서 그 추경예산안개요 중에서 있는 것인데 5쪽에 보면 자영자양성고지원이라는게 뭐예요?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그게 자립농고라고 그래가지고 보은농고가 되겠습니다. 보은농고에 자립영농자를 자영자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겁니다. 도청에서 옵니다.

● 간사 김광수

보은농고에 이 5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원예과가 자립영농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 간사 김광수

거기는 작년에도 그렇고 해마다 국고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지정학교인가, 시범학교인가 해가지고 국

고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 간사 김광수

그렇게하고 어제 제안설명에서도 봤는데 제안설명 7쪽에 보면 그 세수면에서 국가부담금수입이라고 해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증액교부금 이렇게 나왔는데 증액교부금이라는게 이게 될 37만 7천원인데 37만 7천원이 증액교부금이라는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증액교부금이라는게 과목이 교부금을 그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주면서 보통교부금 과목이 있고, 특별교부금 과목이 있고, 증액교부금 과목이 있는데 그것은 기준교부금 산정외에 거기다 더 주는 것을 이쪽에다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수, 교사수, 교실수 이런 기준산정외에 다가 탄 방법으로 증액교부금 과목이 있습니다.

● 간사 김광수

이게 특별교부금이나 증액교부금, 국고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에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예산편성을 끝낸 다음에 교육부에서, 이게 말하자면 시·도교육청에서 잘 로비할 것 같으면 더 주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예요?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특별교부금 같은 것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하고 증액교부

금은 당초에서 다 주질않고 가지고 있다가 시·도에 어떤 문제가 있던지, 또 요청이 있던지 똑같이 하면 뭐하니까

● 간사 김광수

교육부장관 재량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그 성격이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간사 김광수

그러니까 문제가 여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정상적인 예산편성에 나눠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아까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교육부에서도 정치인들이 와서 얘기하고 뭐하고 지방에 문제있고 그러면 이 특별교부금에 다가 그걸 해결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 간사 김광수

그래서 세입면에서는 그렇고, 세출면에서 그냥 몇가지 그냥 드문드문 물어 볼께요.

저희들이 전문적인 것이 못되어서 이 용어같은 것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 예산 상에 나온 용어같은 것이 말이지. 그래서 43쪽에 보면 DBMS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을 잘 모르겠어요.

● 교육국장 최성태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는게 더 나올 것 같아서

● 간사 김광수

시에서 유보라든가 뭐 이렇게 자료를 주려고 준비를 했어요?

● 교육국장 최성태

아, 예, 어려운 용어

● 간사 김광수

그럼 이걸로 대체 하지요. 이거 설명해 주려면 길테니까 이걸로 대체합시다.

● 초등교육과장 김천호

그 개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원연수를 보통 저희들이 하려면 지금 영동있는 교사가 연수 받으려면 단재교육원 까지 와야되고, 이쪽 선진화지원관까지 와야 되는데 교통문제, 시간문제 이런 것을 절약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컴퓨터시스템을 해서 재택연수나 자기 직장에서 인터넷을 활용해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인터넷망을 통해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 는 집에서 하고 나중에 필요한 경우에 테스트할 때만 와서 해서 선생님들이 학교에 근무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또 와서 여기서 채류하는 데에 쓰는데 드는 경비 이런 것을 아무튼 시간과 예산 이런 것을 절감하는 방안을 첨단매체 특히 교단선진화를 통해서 우리 충북교육의 강점을 활용해서 연수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이런 운동을 한 번 시도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듭니다만 처

을 시작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처음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시도해 볼까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 간사 김광수

그 43쪽에 나온 DBMS라고 하는 것이 한세 트를 구입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럼 도교육청에 비치하고 있으면서 하는 것입니까?

● 초등교육과장 김천호

네, 거기에다 이 연수내용을 탑재를 해서 인터넷망에 띄워서 지역교육청에서 받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데이터베이스메인머드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운영관리체제입니다.

● 간사 김광수

그건 알았습니다. 그럼 유인물 준것에 용어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대체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까.

▶ 참 조 : 서면답변자료 (별첨3)

(끝에 실음)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다 잘 질문도 해주시고 해서 여기에 일괄적으로 목적사업 같은데 업무추진비도 이번에 각 시·군교육장에 주는 업무추진비인가요, 이것도 500만원, 400만원씩 다 상향이 되었지요?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예.

● 간사 김광수

그리고 교단선진화사업비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다 주는 것인가요?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예.

● 간사 김광수

이것은 얼마씩 주는가요?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그것은 지금 교단선진화사업이 4년차에 되고 있는데 각 학급에 컴퓨터하고, 43인치 텔레비전하고, 엔코더하고, 그 다음에 VCR하고 네가지가 기본품목이 아직 100%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마감하면서 초·중·고에 부족되는 그러니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학년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재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학교당이 아니라 금년에 완전히 됩니다.

● 간사 김광수

그 교육청단위로 이렇게 서있고 한데, 또 교육환경조성비는 그 400만원씩 해서 학교 별로 전체 다 주는 겁니까?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학교로 다 주는 겁니다.

● 간사 김광수

400만원씩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예.

● 간사 김광수

큰 학교고 작은 학교고 똑같이 줘요?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쪽으로 세웠느냐하면 봄되고 그러면 화단정리를 한다든지, 교사의학을 정리하는 비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걸 학교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초·중학교 배분할 적에 아마 신설학교 같은데는 또 할 때 없는데는 형편에 따라가지고 조금 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 간사 김광수

그리고 55쪽에 보면 학비지원이라고 하는게 거기에 있는데 경제사정 곤란중 고생자녀학비지원 해서 13억 5,400이 나와 있네요. 여기 중학교 학생이 1,167명, 고등학교 학생이 925명 그건 어떤 대상을 그렇게 한 겁니까?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학비지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4/4분기에 학비를 지원해 주거나 또 감면받은 학생이 교육청당 6,169명인데 금년도에 학비감면계획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4,077명, 거기서 제하니까 약 2,092명, 중학생이 1,167명이고 고등학생이 925명 2,092명이 생활이 아주 곤란한 자로 나타났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1년치의 수업료를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 간사 김광수

이게 본예산에도 있었지요?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본예산에서는 없었습니다.

● 간사 김광수

본예산에는 없었어요?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예.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이게 IMF이후에 실직자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해 주는 그런 시책입니다.

● 간사 김광수

그럼 어지간히 다 주는 건가요? 어떤가 모르겠네.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작년 상황을 봐서 거의 다 주는 겁니다.

● 간사 김광수

그렇게 하고 제가 신문에 한번 본 것 같은데 그 체육과장님들 회의때 소년체전문제 가지고서 회의하고서 그것이 신문에 나온 것을 봤는데 거기 정부에서 특별히 지원 안 해줄 것 같으면 소년체전을 보이코트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 교육국장 최성태

네,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서부터 얘기되고 있던 것인데, 훈련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1차적으로 우선 소년체전에 참여하지 않고 지방시·도별 체육대회로 끝내겠다하는 것이 시·도체육과장회의에서 그렇게 건의가 되었었고, 그 후 두차례에 걸친 교육감회의에서도 그

러한 얘기가 있었는데 지난 2월인가 3월초에 문화관광부에서 금년만, 금년은 예산이 책정 안되어 있으니 금년 7월까지 내년도 분을 예산지원을 할 참이니 이번에는 꼭 참여하도록 해달라는 아마 제가 듣기로는 담당부 뿐만 아니라 청와대에서도 그렇게 체육담당관이 와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교육감회의에서는 굳이 참여해야 된단니까 그러면 참여한다면 저희도 같은 경우에는 이왕 여태까지 20개 전종목의 선수들이 훈련하고 애써왔기 때문에 전종목이 다 참가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고, 서울과 대전에서는 교과서에 나오는 종목 13개만 참가해야 된다고 이렇게 의견이 팽팽했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해서 문화관광부로 교육부로 그렇게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의견만 그렇게 제시된 것 같습니다.

● 간사 김광수

내년부터는 지원해 주겠네요.

● 교육국장 최성태

네, 그런데 이제 내일 또 체육담당과장 회의가 대전에서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이왕 상급관청의 종용, 또는 그 형편에 의해서 참여한다면 그걸 없앨 수는 없으니까 참여한다면 전종목을 참여해야 된다, 일부에서는 그것이 안된다. 그래서 내일 그것도 조정하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감회의에서도 결정이 아마 거의는 전종목이 저희 도교육감님께서 전

종목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안으로 올라갔는데, 또 서울하고 대전쪽에서 일부 종목만 참여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 모여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찌 교육감님 회의에서 이미 그렇게 건의한 것을 과장회의에서 이걸 반복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그대로 전종목을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충분히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그걸하고나면 최종적인 것은 중앙부서에서 결정이 내려지겠습니다만 금년에는 일단은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고 7월달까지 문화관광부에서 내년도 지원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발표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간사 김광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76쪽에 보면 교무실환경개선 O/A시스템설치라고 했는데 그게 3군데 학교에 2억 3,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어느 어느 학교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육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서 나온 교부금인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학교, 신설학교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하라고 그러고 이 금액가지고 기존의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의 책상이나 결상이 현재는 O/A 컴퓨터 놓고하는 편리한 책상입니다. 현대적인 것인데 그 책상으로 교체해 주라고 그런 겁니

다. 그러면서 되도록 상고나 인문고등학교 쪽이 더 많이 활용을 하니까 그 쪽으로 하는 것인데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저희가 여기서 해가지고 교육부에다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간사 김광수

학교결정은 아직 안됐군요?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예, 금명간에

● 간사 김광수

책·결상을 싹 바꿔주는 거지요?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예, 이 전산기계고등학교를 그걸로 했는데 선생님들이 아주 좋아 하십니다. 상당고등학교도 일부 한 15~16명정도, 또 금년에 학급이 3학년이 차니까 그만큼은 해드렸습니다.

● 간사 김광수

그러니까 한 학교에 7,850만원씩 들어가네요.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이제 선생님들이 많은 학교 80명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저희는 학교수는 더 넓히고 그러니까 선생님들 되도록 다 해드리는데 한 학교에 약 50명, 60명 되는 학교에 4내지 5개학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간사 김광수

아까 책·결상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생각

이 나는건데 그 초등학교에 책·결상 관계가 열린교육을 하면서 재래식 나무로 된, 합판으로 된 책·결상이 아니고 지금은 분단식으로 되어 있는 책상에다가 등그렇게 둘러 앉았잖아요. 거기다가 의자를 회전의자를 놓고 쓰고 있더라구요. 그런 것을 볼적에 선생님은 이쪽에 있고, 분단식으로 이렇게 등그렇게 보고 있으면 선생님이 무슨 얘기 할적에는 이렇게 돌아서 앉으면 되더라고요. 영동가서도 그걸 보고, 보은가서도 그걸 본 일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그게 딱 이상적이고 학생들에게도 부담이 없고, 좋은 것 같아요. 그것이 차차로 그런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 나가줘야지 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납니다. 특히 저학년서부터 말이지요, 조금 주의산만한 것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저쪽에서 무슨 얘기 하니까 그 학생이 그대로 앉은 채로 돌더라고요. 또 뒤로도 돌고 그래서 딱 좋은 그런 것을 느꼈는데, 앞으로 책·결상을 그런 방향으로 환경개선에 해줘야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자료 좀 주십사하느 것인데, 학생 1인당 교육하는데 들어가는 소요경비, 일반계학교 학생하고, 또 실업계학교 학생하고, 또 특수학교 학생한테 들어가는 교육비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그것 좀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 참 조 : 서면답변자료 (별첨3)

(끝에 실음)

● 간사 김광수

89쪽에 나와있는 것 재특자금차액이라고 하는게 이것은 이자를 계산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다 이자계산을 해놓은 것인가요?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예, 저희들이 400억 이번에 예산승인이 되면은 이걸 빌려오는 걸 되도록 늦추려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8월달에 명퇴를 해서 선생님들이 나가시니까 명퇴금 지급을 9월에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에 한 200억 정도를 빌려오고, 또 나머지 200억은 11월에 가면 이 연금관리공단에다 퇴직자에 대한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그게 한 200억 되어서 11월경에 빌려오고 그럴려고 그러합니다.

● 간사 김광수

그 다음에 여기 청주교육청에서 오신 것 같은데 각 시·군교육청을 대표해서 청주교육청이 온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각 다른 교육청에서도 들어 있는 것인데, 95쪽에 보면 특기적성교육활동이라고 하는게 여기 들어 있습니다.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특기적성교육활동 시범단지운영, 그리고 특기적성교육활동 프로그램개발 이렇게 했는데, 이것

을 어떻게 해서 운영하는 것인지. 그것 좀 청주교육청에서 오셨습니까?

● 교육국장 최성태

제가 말씀드리지요.

특기적성교육이라는 것이 종전의 방과후 교육활동입니다. 이 특기적성교육시범단지가 청주시교육청이 시범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천만원이 나가는 것이고, 이제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개발은 역시 여러 종전의 우리 특별활동과 같은 그러한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종전의 방과후 교육활동 이것이 지금

● 간사 김광수

그럼 이것은 어느 학교에다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 교육국장 최성태

단지라는 것은 청주시교육청이 청주시 전체의 적성교육활동의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에 대해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학교는 학교대로 소요금액을 시교육청을 통해서 도교육청으로 오면 저희들은 이것을 교육부로 요청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15억이 아마 전체 풀려져 있을건데, 들어와서 이것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2, 3학년에 대해서는 신청액의 50%가 교육부에서 내려와서 지급이 되고,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는 2002년에 대비해서 100% 전액 신청액 전액을 지금 배부하고 있습니다.

● **간사 김광수**

그 다음에 96쪽에 보시면 중등교육과 소관에 학생해외교류라고 했습니다. 일본 돗토리시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는가요. 그래서 거기 방문학생 차량임차라고 해서 50만원이 되어 있어요. 두사람 가는데, 이게 어떻게 차량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 된가 싶어서

● **교육국장 최성태**

돗토리시에서 여기 방문을 하면 버스를

● **청주교육청 관리과장 나성찬**

청주교육청 관리과장 나성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본 돗토리시하고 청주시하고 자매결연을 '88년도에 맺었는데요. '97년도부터 일본학생이 한국에 오고, 작년 '98년에는 한국, 아, 97년에 한국학생이 일본을 갔네요. '98년 작년에는 일본학생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저희가 일본을 갈 차례가 되었는데 가려면 경비가 한 800만원정도 됩니다. 올해 예산이 어렵고 해서 예산은 전부 자부담으로 시키고 여기 예산 50만원은 서울 왕복하는 차량 한 대 임대료입니다. 그 학생을 개인별로 서울공항까지 집합하고 해산하고 하면 혼란이 될까봐 차량을 한 대 임대해서 서울공항까지 왕복하는 겁니다.

● **간사 김광수**

그러니까 올적에 데려오고, 갈적에 데려다 주고 그렇게 2일간 25만원씩 되는 거군요.

● **청주교육청 관리과장 나성찬**

예, 공항까지 왕복 차량 한 대 임대료요.

● **간사 김광수**

그리고 105쪽에 보면 소규모학교 환경정비라고 해서 1,000만원이 들어 있고, 운동장정비라고 해서 500만원이 들어 있고, 또 씨름장설치라고 해서 1,500만원이 들어 있고 이렇게 들어 있어요. 소규모학교 환경정비라고 하는 것이 한 학교만 1,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이게 됩니까?

● **청주교육청 관리과장 나성찬**

저희 소규모학교가 농촌학교가 서촌초등학교하고 내곡초등학교 두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고속도로 주변이고 대도로 주변인데 그 학교외곽이 상당히 낡고 또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하려고 1,000만원 내곡초등학교에 세웠습니다.

● **간사 김광수**

그럼 그게 1,000만원 가지고 돼요?

● **청주교육청 관리과장 나성찬**

그 비 새고

● **간사 김광수**

뭐가 비가 새요?

● **청주교육청 관리과장 나성찬**

슬라브에 3교실이 비가 새고, 굴뚝담이 상당히 비가 새서 아주 멀리서 봐도 흠이 보

입니다. 그래서 그걸 슬라브 고치고 굴뚝담을 다시 해주려고 그걸 해놓은 겁니다.

● 간사 김광수

이것은 예산을 그런거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항목예산을 잘 못세운 것 같아요. 그냥 1,000만원 들어가면 그게 다 되는 걸로 됩니까, 지금 현재 폐교가 되어 있는게 아니잖아요.

● 청주교육청 관리과장 나성찬

폐교가 아니고 거기가 6학년 한 13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적기 때문에 1,000만원이면 문제된 부분을 말끔하게 정비할 수가 있습니다.

● 간사 김광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정비라고 하는게 뭐예요?

● 청주교육청 관리과장 나성찬

운동장정비 500만원은 운천초등학교 것인데 운천초등학교가 위치가 무심천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비만오면 운동장에 한 30cm이상 물이 고입니다. 그래서 제비가 갈매기같이 날고 해서 애들 보기도 그렇고 해서 그 모래를 한 500트럭 정도 실어다가 운동장 복토를 좀 해주려고 합니다. 배수가 안되어 가지고요.

● 간사 김광수

그럼 500만원 들면 그게 다 잘 해결이 되겠어요?

● 청주교육청 관리과장 나성찬

우선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모래를 저기하고서 완벽하게 하려면 복토를 하고 배수로를 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 간사 김광수

이것이 운동장정비라고 하는 것이 그 다른 교육청에도 400만원씩 어떤데는 보면 300만원씩 이렇게 들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400만원, 500만원 다 이렇게 해서 그냥 만들은 것 아닌가 싶어서.

● 청주교육청 관리과장 나성찬

아닙니다. 이것은 학교교장선생님이 예산요구를 받아가지고 아주 현안사업으로 올려가지고 이걸 이렇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학교에서도 현안사업으로 올초에 연초에 1월 달에

● 간사 김광수

모래가 몇차가 들어갑니까?

● 청주교육청 관리과장 나성찬

15만원씩 해서 50트럭인가요.

● 간사 김광수

운동장이 교육에 지장없도록 잘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 청주교육청 관리과장 나성찬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간사 김광수

씨름장설치는 이것은

● 청주교육청 관리과장 나성찬

씨름장은 덕벌초등학교하고 모충초등학교에 씨름 지정종목입니다. 지정종목인데 지금현재 덕벌초등학교 가보니까 씨름장이 개설이 되어있는데 지붕이 함석인데 함석이 썩니다. 옆에 둘러친 천이 갑바인데 갑바가 펄럭거리 가지고 아주 흥해가지고 그걸 수선하려고 합니다. 모충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 간사 김광수

그리고 106쪽에 보면 합숙소 신축했습니다. 합숙소 신축했는데 이거 2,000만원가지고 합숙소 신축을 한다는 것은

● 청주교육청 관리과장 나성찬

합숙소 신축은 봉명중학교가 되겠는데요. 봉명중학교에 합숙소를 하기 위해서 탁구인데 전부 드는게 4,000만원 듭니다. 설계비하고 2층으로 하는데요. 학교발전기금으로 해서 한 1,500만원, 또 학교육성회에서 한 500만원 그래서 모자라는 돈이 2,000만원 지원해가지고 합숙소를 신축을 해가지고 선수훈련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도와 주려고 합니다.

● 간사 김광수

탁구요? 운동선수 여기 합숙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 청주교육청 관리과장 나성찬

예, 운동선수입니다. 학교발전기금이 지금 1,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지원회계에서 500만원, 그리고 저희들이

2,000만원 지원해가지고 4,000만원

● 간사 김광수

몇평 규모로 이걸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 청주교육청 관리과장 나성찬

2층 40명입니다. 아래 20명, 위에 20명. 잠만 자는데입니다. 식당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 간사 김광수

슬라브집으로 짓는 건가요?

● 청주교육청 관리과장 나성찬

아니 조립식입니다.

● 간사 김광수

그리고 그 밑에 106쪽에 조도개선이라고 하는게 나왔어요. 그게 그전에도 우리 이기수위원님께서 조도개선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하던건데, 이 학교만 이게 들어갈 것 같으면 청주시 관내에 전부 조도개선이 됩니까?

● 시설기획담당 이흥무

시설기획담당 이흥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조도개선은 강서초, 용담초, 금천초, 가경초인데요. 저희들이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

● 간사 김광수

그게 몇 개교 하는 거예요? 52실

● 시설기획담당 이흥무

강서초가 8.5실이고요. 용담초 11실, 금천초 22실, 가경초 11실 해서 52.5실입니다.

<p>● 간사 김광수 4개교예요?</p> <p>● 시설기획담당 이흥무 네.</p> <p>● 간사 김광수 연차적으로 하나갈 재원이군요.</p> <p>● 시설기획담당 이흥무 예, 재원이 허락하는 한 연차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p> <p>● 간사 김광수 그리고 107쪽에 보면 교원 편의실확충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개조하고 비품구입 하고 이렇게 하는데 1억 4,500만원이 들어 가는데 이거 한 학교에 들어가는 건가요? 몇 개 학교에 들어가는 겁니까?</p> <p>● 시설기획담당 이흥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개조가 석교가 2실, 중앙이 1실, 청남이 3실, 창신이 1실, 운동초등학교 0.5실, 새터가 2실 해서 전부 9.5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당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당 1,000만원을 내부개조비로 하고요. 또 비품비는 실당 500만원을 지금 계상했습니다.</p> <p>● 간사 김광수 이것도 이제 연차적으로 학교마다 전부 이렇게 해줄 참인가요?</p> <p>● 시설기획담당 이흥무 그것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도 일단 교원편의실은 여유교실을 한다는 차원</p>	<p>에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할 수 있으면 더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p> <p>● 간사 김광수 이것은 초등학교도 들어 있고, 중학교도 들어 있고 그러네요.</p> <p>● 시설기획담당 이흥무 네, 그렇습니다.</p> <p>● 간사 김광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천교육청에서 오셨나요?</p> <p>●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예, 오셨습니다.</p> <p>● 간사 김광수 제천교육청에 다른 지역교육청보다도 여기가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p> <p>● 제천교육청 관리과장 표순성 제천교육청 관리과장 표순성입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군보다 이번의 추경에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은 수산초·중학교 통합학교시설에 한 4억원 추가되고, 제천여중 강당신축 재추진에 한 5억 7,400, 그리고 교육환경개선비로 백운초등학교 개축공사비로 9억 3,000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교육청보다는 조금 많이 이번에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p> <p>● 간사 김광수 그 강당신축은 5억 7,400만원 가지고서 강당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p>
--	---

● 제천교육청 관리과장 표순성

이것이 '97년 4월에 계약이 되어서 공원 지역에 약간 문제가 돼가지고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 재사고이월이 안되어서 기투자한 것이 2억 7,000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 7,400만 되면 완성을 할 수 있습니다.

● 간사 김광수

2억 얼마가 투자가 되어 있어요?

● 제천교육청 관리과장 표순성

2억 7,000만원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 간사 김광수

2억 7,000만원, 그럼 이것만 들어가면 완공이 되요?

● 제천교육청 관리과장 표순성

네, 완공됩니다.

● 간사 김광수

그 몇평짜리 강당을입니까?

● 제천교육청 관리과장 표순성

275평입니다.

● 간사 김광수

그럼 275평 강당이면은 그 안에서 체육활동 등을 할 수 있어요?

● 제천교육청 관리과장 표순성

네, 할 수 있습니다.

● 간사 김광수

왜 이게 이렇게 늦어 졌어요?

● 제천교육청 관리과장 표순성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공원지역에 약간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원상복구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99년 2월 24일자로 도시공원지역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되면 바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 간사 김광수

아니 당초에 강당을 짓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설계가 그렇게 되어 가지고서 어떻게 남의 땅에다가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 제천교육청 관리과장 표순성

땅은 저희들 땅입니다.

● 간사 김광수

우리 땅이라고요.

● 제천교육청 관리과장 표순성

예, 우리 땅인데 도시공원지역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99년도 2월 24일자로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 간사 김광수

그러면 당초 강당을 지을 적에 공원지역에 걸리면 안된다는 건 몰랐던가요?

● 제천교육청 관리과장 표순성

그래서 지금 건축사 설계해서 납품한 사람은 부정

●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여중강당 신축문제는 '97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다가 원래 설계당시에 설계회

사로부터 도시계획이니 가로막이니 이런 등등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건축사무소에서 실수를 해서 잘못 해가지고 그게 그만 학교내에 있는 우리 학교의 부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히 학교 용지로만 알고 착각하고 좀 등안시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내에 공원부지가 겹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부지 일부를 이 강당이 물리개 건축이 되는 것을 늦게 골조 공사가 된 다음에 발견이 되어서 시로부터 공사 중지명령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완성을 못하고 '98년도로 사고이월 시켰는데 98년도에도 역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이월을 할 수 없지만 그간에 해결할 문제인 이 공원용지 해제를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결을 해야되는데 그것이 금년에 와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 간사 김광수

그럼 전체가 해결이 되었습니까, 그 부분만 해결이 되었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그 부분을 학교용지 다른 부분하고 교체를 했습니다. 공원용지하고 학교용지하고. 어차피 그 면적은 있어야 된답니다. 그 공원용지로서, 그래서 우리 학교부지내 중에서 사용에 불편이 없는 부분하고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해결이 되었고, 거기에

다른 건축사는 저희들이 부정당업자 재제로 해가지고 4개월 영업정지 명령을 취한바가 있습니다.

● 간사 김광수

강당 잘 짓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정부지원에 의해서 고등학교 급식소를 전부 고등학교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완비가 다 되었습니까?

● 교육국장 최성태

고등학교가 1차는 금년도분이 6월경서부터 급식을 시작하고 나머지 학교는 아마 9월 1일서부터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학기 중에 모든게 다 끝날 것 같습니다.

● 간사 김광수

그거 시설비는 전부 국고지원입니까?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작년엔 국고로 70억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국고교부금 중에서 30억은 다른 쪽으로 돌려가지고 교육부 승인을 받아서 100억 정도는 국고지원이 되고, 나머지 약 한 50억 정도는 자체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38개교는 금년 전반기에 급식시설이 되고, 나머지 약 한 38개교는 후반기에 되겠습니다.

● 간사 김광수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만재

김광수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몇가지 질문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 의결 기정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비교를 해보면 어느 교육청은 81%나 증액이 된 교육청이 있는가하면, 어느 교육청은 16%밖에 증액이 안되었습니다. 예산을 균등 배분해야만 한다는 이런 원칙이나 이런 점으로 봐서 쉽게 납득이 가질 않는데 이 교육청은 사업을 전혀 안한다는 교육청인지, 예산이 부족해서 배치가 안되는 것인지 납득이 가질 않아서 여쭙보는데 우선 제일 많이 증액이 된 교육청은 청원교육청입니다. 81%가 기정예산, 추경변경예산을 대비할 때 81%나 증액이 되었고, 충주교육청은 19%밖에 증액이 안되었습니다. 그 증액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장 지역교육청 예산이 늘어나고 덜 늘어나고하는 비중은 시설비에 있습니다. 수용시설이 있고 학교증축이 필요한 예를 들면 지금같이 제천이라든지 청원·청주 이런 지역은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예산증액비율이 높아졌고, 충주같은데는 수용시설 시설비 들어갈 사유가 적기 때문에 그게 적어진 것입니다. 나머지 운영비나 일반 교육사업비는 똑같이 배분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차이가 납니다.

● 위원장 손만재

시설비에서 차이가 나요?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예.

● 위원장 손만재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퇴신청 관계는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등학교 급식실시에 대한 문제점인데 이 고등학교에 잉여교실이 있는 학교에서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잉여교실이 없는 학교에서는 지금 대단히 곤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추가로 예산을 배정할 의사는 없으신지. 지금 가건물이라도 지어야 될 형편에 있는 학교가 여러학교 있는 것 같아요?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고등학교 급식시설은 작년도 예산책정하면서 우선은 조리실은 38개교에 다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생들의 식당, 조리실 옆에 당연히 식당이 붙어 있어야지 거기서 바로 배식이 되고 하는데 이게 거기까지 예산지원이 안되니까 조리실만 우선해서 학교교실에 날러다가 먹든지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앞으로 조리실이 들어간 학교에는 옆에 식당을 지을 수 있으면 간이경량철골로라도 식당을 지어줄려고 합니다.

● 위원장 손만재

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연수여비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수의 성격에 따라서 여비를 지급하는 연수가 있고, 지급하지 못하는 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교직원들이 불평이 대단한데 이 연수를 받으면서도 이 여비를 지급을 해주지 않는 연수는 어떤 것이 있으며, 앞으로 이 사람들 여비를 해 주실건지, 지급을 하지 않을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최성태**

자격연수와 상급관청의 필요에 의해서 꼭 지명되어서 나오는 연수는 그 연수는 연수비를 지급하고, 자율연수 선생님들의 의사에 의해서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서 참여하는 일반연수나 또는 직무연수는 연수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경제난국이 어느정도 해소되어서 예산사정이 좋아지지 않는 한 당분간은 지금 말씀 올린대로 자격연수와 상급관청의 지시에 의해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참여하는 연수는 연수비를 주고, 그외 자율연수에 해당되는 것은 수익자부담으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손만재**

알겠습니다.

다음엔 실업계고등학교의 실습의 장, 또는 기자재확보 문제인데요. 지금 정보화니 뭐니 해서 이 실업계고등학교가 홀대를 받

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충주농업고등학교를 한번 가봤더니 학생들 제도실이 없어가지고 소를 사육하던 우사를 개조를 해서 쓰는 것까지는 좋게 봤습니다만 몇십년전에 남아빠진 온실에서 원예과 학생들은 있는데 이거 하나 개축을 못해가지고 저러나가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농업의 중심이라고 하고, 또 학생들이 대부분 농고학생들은 그 학교를 졸업하면 직업전선으로 바로 모두 뛰어드는데 학교에서 충분한 실험실습을 시키지 않고 그대로 졸업을 시켰을 때, 또 지역사회에서 그 충주농업고등학교의 온실을 봤을 때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 집행청에서 그런 것을 전부 파악하고 계시는지, 또 파악하고 계신다고하면 그것의 개축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육정보화과장 윤주택**

교육정보화과장 윤주택입니다.

지금 실업학교 충주농고의 온실관계, 기타 등 등의 실업학교의 확충문제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희망에 따라서, 또 학교장의 요구에 의해서 그 학교의 장기발전계획 또는 5개년 발전계획 이렇게 발전계획에 따라서 신청이 들어오고 또 학교장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에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농고는 그것이 그런 요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청당시에도 다른 것으로 이렇게 요청이 되고 했

는데 뒤늦게 온실문제가 얘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저희들이 이 온실문제를 해결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만재

과장님이 보실 때 제일 시급하다고 보시지 않으십니까?

● 교육정보화과장 윤주택

제가 볼 때도 지금 충주농고가 온실이 없어서 필요한 시설내용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손만재

예, 알았습니다.

시설과장님 한가지 여쭙보겠습니다.

연초에 칠성초등학교 교실이 9개교 실인가요, 10개 교실이 붕괴가 된다고 해서 일대소동이 일어났었는데 그 후에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이번에 예산조치가 되었습니까?

● 시설과장 오형균

칠성중학교가 작년에 안전진단을 받았을 때 2급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용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전면적인 개축이 필요한데 거기가 지금 통폐합문제 때문에 걸려 있어가지고 현재 개축예산은 확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폐합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걸 개축 또는 재사용 문제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제가 부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칠성초등학교는 금년에 최소한의 위험을 방지하는 시설개수비는 들어 갔습니다. 6천만원인가 8천만원인가. 8,5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탱을 하다가 한 1, 2년 후에 칠성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어차피 초·중통합을 해야되지 않을까. 학생수는 자꾸 줄고 또 중학교 단독으로 유지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그 문제를 1, 2년 후에 검토하기로 하고 우선 보수비 8,500만원은 책정을 했습니다. 이번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손만재

시설비가 400억씩이나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충주농고에 온실관계나 칠성중학교의 붕괴우려성이 있는 건물이나 이런 시급한 것이 먼저 예산조치가 이루어져야 될게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이상일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 이기수 위원

보충질의를 있는 분들은 순서대로 하고 넘어가지요.

● 위원장 손만재

간단히 해 주세요.

● 이기수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권고사항으로 생각하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한 결식아동문

제에 대한 것이나 청소년폭력을 근절하는데 재원같은 것이 얼마나 보조가 되어 가지고서 청소년폭력 사회적으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결식아동문제, 청소년폭력문제 이런데 예산반영한 것이 혹시 없으시면 앞으로 사회적인 관심거리가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천여중에 설계가 잘못 되었다고 하는데 거기 혹시 그러면 설계사한테 그렇게 지연되었다든지 이런데에 대한 변상 조치라든가 어떤 상응한 조치가 있었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현재 부정당업자 재제만 가해졌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해서 손해에 따른 변상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지금 계속 검토중에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 대한 공사를 건설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불성실하게 해서 우리 교육재정을 손실을 보이는 업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치에 의해 가지고서 법적조치를 대응하셔가지고 변상할 것은 변상조치하고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에 의해 가지고 조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군의원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군 지방자치단체 같은데서 교육재정으로 보조할 수 있는 하고 싶은 의향은 있다고 하지만 지방재정법

에 문제가 되어서 주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해서 자기가 앞장서서 그걸 해보겠다하는데 법적인 조치가 어디가 문제가 되었는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교육위원 저희들이나 지방의원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국회에 토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개정할 부분은 개정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리 교육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내가 군의원을 통해서 어느 좌석에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연구·부탁 드리겠습니다.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그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하면 기초자치단체에 자체수입이 인건비를 충당을 하고 남을 경우에는 각 지역교육청에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는데 이게 보은이라든지 군단위는 자체인건비 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해주려고 해도 도에서 승인을 안해 줍니다. 그래서 그 법개정은 저희들 교육부에서 요전에 예산담당과장 회의때도 얘기를 해서 앞으로 꼭 이렇게 얽어매지 말고 규제완화 차원에서도 기초단체장이 뜻이 있다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좀 풀어준다하는 얘기가 되어서 교육부에서 그걸 같이 행사부하고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이기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일 위원

제가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 남산초등학교에 강당이 제가 알기로는 한 50년 가까이, 왜정 때 지어진 것 같은데 지금 비가 새고, 도괴의 염려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갑니다. 그런데 그 강당을 남산초등학교 뿐만아니라 예성학교에서도 체조부학생들이 긴요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당을 하나 새로 지으려면 8억 가까운 돈이 또 더 크게 지으려면 10억 가까이 드는데, 이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한번 하셔가지고 보수를 하면은 쓸수 있는 건물이라고 판단이 되면 얼마 돈 안들이면 잘 쓸수 있지 않겠느냐. 충주중학교 강당도 몇 년전에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하니까 지금 아주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이걸 한번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보수를 해서 쓸수 있는 거면, 돈을 좀 들여 주시고, 그렇지 않고 이것은 위험해서 수명이 다 되어서 안되겠다 그러면 사용을 못하게 하든지. 그래 전에 제가 그 학교를 가봤더니 교장선생님이 한걱정을 하고 이번 예산에도 아마 돈이 없어서 안전진단도 못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시설에 완급을 따져가지고 이런 것은 다른 것보다 상당히 급한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담당부서에서는 한번 충주교육청에만 맡기지 마시고 전문가를 파견을 한다든지 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시설과장 오형균

예, 남산초등학교 한번 가보고서 현장조사해 보고서 하겠습니다.

● 이상일 위원

지금 비도 여러군데 새고, 그래도 아이들은 체조부가 와서 교육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 다급한 실정입니다.

● 시설과장 오형균

아직은 교육청에서 남산초등학교 강당에 대해서는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한번 제가 현장에 가보고서 처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만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하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 송진하 위원

시설과장님 아까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화장실은 보수를 해줘야지 안하면 생활에 불편이 있습니다. 애들이 좀 불편할 거니까 조속히 보수를 하도록 하는데 특별지도를 하셔가지고 시·군교육청에서 완벽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교원편의시설은 다른데는 다 있는데 옥천교육청만 없어요.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그리고 지역교육청에 노인교실 한 학교에 100만원씩 주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 평생교육담당 임종복

평생교육담당 임종복입니다.

노인교실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 노인들 복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권장하고 교육개혁과제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는 학교에서 시설을 이용해서 평생교육원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노인을 대상으로하는 그런 교육이 사실 어려운점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지역교육청별로 1개 학교씩 지정운영 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그 지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100만원씩 보조해 주었습니다.

● 송진하 위원

과거에 노인교실을 운영했었는데 지금은 전부 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담당 임종복

앞으로 저희들이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이 기본이라고 보고요. 모든 학교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노인문제나 여성문제 이런 분야가 어려운 점이 많아서 1개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자 했습니다.

● 송진하 위원

그래 금년이 노인의해고 해서 한 학교에 만 100만원 줘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글썽 다른 방법이 없는가하는 생각이 되네요.

● 평생교육담당 임종복

그래서 우선은 금년도에 중심학교를 한군 데씩 운영을 해보고

● 송진하 위원

작년에는 지원이 없었잖아요?

● 평생교육담당 임종복

예, 지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선 시행을 해보고 필요하다면 더 내년에는 확충하는 이런 방안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 송진하 위원

아니 금년이 노인의 해이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손만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회의진행이 매끄럽지 못한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4월 1일 10시 30분에 제2차 소위원회에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0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손만재, 간사 김광수,
위원 송진하, 이기수, 이상일, 이충원.

0 출석공무원 : 13명

교육국장 최성태,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초등교육과장 김천호, 중등교육과장 이주원, 교원지원과장 유승덕,
교육정보화과장 윤주택, 총무과장 고일영,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시설과장 오형균,
교육과학연구원 총무과장 윤명구, 청주교육청 관리과장 나성찬,
제천교육청 관리과장 표순성.

0 의사일정(안) : (별첨1)

0 1999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별첨2)

0 서면질문답변서 : (별첨3)

豫算·決算小委員會 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9년 4월 1일 (목요일) 10시 40분

議事日程 (제100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附議된 案件

1.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40분 개회)

1.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손만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제1차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1차 소위원회 심사후 계수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통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

중 조정하기로 한 부분은, 본청시설비 청사 보수 예산 14억 2,128만원중 시급한 장애인 편의시설과 화장실 보수예산을 제외한 13억 7,428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입하고, 다음 추경예산 편성시 시급한 일선 학교 교육시설 개선에 투자할 것을 집행청에 권장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정내용과 같이 본 추경 예산안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서는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정된 사업

[제100회-제2차 예·결산소위원회]

비를 예비비에 편입하여 세입·세출 예산 각각 7,488억 6,518만 1천원으로 의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보고서에 보완할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본청수리비 삭감한 것은 금년도에는 2차 추경에도 안올리고 그 예산은 다음에 학교의 교육시설에 쓰도록 이렇게 못을 박는 거지요.

● 의사과장 홍재문

그렇죠. 되도록 그런 방면에 투자하도록 그렇게

● 김광수 위원

먼저번에 그렇게 얘기가 되었으니까 이것은 그런 방법으로 분명히 하는 거라고 이렇게

● 이충원 위원

결식학생하고

● 의사과장 홍재문

결식학생은 모금을 해서 많이 소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모금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결식학생에 대한 예산확보를 하라고

● 위원장 손만재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본 소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우리 소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칩과 아울러 제2차 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0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손만재, 간사 김광수,
위원 송진하, 이기수, 이상일, 이충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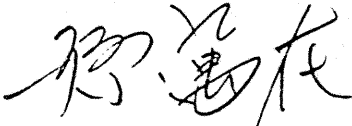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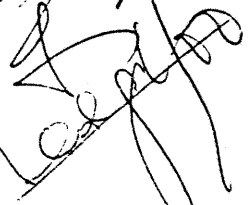



0 출석공무원 : 2명

관리국장 조신행,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0 1999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안) : (별첨4)

제10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1999. 4. .

위원장	손만재	
간사	김광수	
위원	송진하	
위원	이기수	
위원	이상일	
위원	이충원	

(별첨 1)

예산·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

제 10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1999. 3. 30 (화) 10:00~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개최]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999. 4. 1 (목) 10:30~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개최] 1.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 ※ 폐회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

충청북도교육청

I. 기본방향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양여금 조정
- 재정융자특별자금 차입
-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 부담금 편성
-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및 일반회계전입금 사업 계상
- '98. 순세계잉여금 계상

II. 재원별 개요

(단위:천원)

재원별	사업명	예산액	비고
보통 교부금	경상재정교부금조정	3,268,417	
특별 교부금	교무실환경개선비의 1건	245,500	
증액 교부금	증액교부금 조정	377	
양 여 금	지방교육양여금 조정	2,400,426	
보 조 금	학교전산망구축비의 12건	1,506,060	
도세 전입금	도세전입금	3,520,946	
일 반 회 계 전 입 금	자영자양성고 지원비의 1건	505,000	
자체 재원	재산수입	310,516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3,549,772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26,250	
	기타 잡수입	10,783	
순세계잉여금	'98.순세계잉여금	56,900,678	
국내 차입금	재정융자특별자금 차입	40,000,000	
합 계		112,244,725	

Ⅲ. 예산액 규모

1. 예산총액

(단위:천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 감	비 고
748,865,181	636,620,456	112,244,725	기정예산대비 17.6%증

2. 세입예산액

(단위:천원, %)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비율
국가부담수입	604,287,381	80.7	596,866,601	93.8	7,420,780	1.2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 담수입	4,182,897	0.6	156,951	0.0	4,025,946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 계부담수입	140,394,901	18.7	39,596,902	6.2	100,797,999	254.6
주민(기관등)부 담수입	2	0	2	0	0	-
합 계	748,865,181	100.0	636,620,456	100.0	112,244,725	17.6

3. 세출예산액

(단위: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비율
교육위원회비	294,292	0.0	291,376	0.1	2,916	1.0
급 여 관 리	500,732,969	66.9	454,449,221	71.4	46,283,748	10.2
교육행정비	20,606,246	2.8	12,878,924	2.0	7,727,322	60.0
교육사업비	7,363,889	1.0	5,235,290	0.8	2,128,599	40.6
학 교 비	70,671,979	9.4	57,838,179	9.1	12,833,800	22.2
사학지원비	50,850,346	6.8	46,059,946	7.2	4,790,400	10.4
시 설 비	93,819,600	12.5	53,754,935	8.5	40,064,665	74.5
제지출경비	867,951	0.1	141,783	0.0	726,168	512.2
예 비 비	3,657,909	0.5	5,970,802	0.9	△2,312,893	△38.7
합 계	748,865,181	100.0	636,620,456	100.0	112,244,725	17.6

IV. 세입 · 세출 예산 편성 개요

기정예산액 636,620,456

추경예산액 748,865,181

총 감 112,244,725

(단위:천원)

구분	세입		세출				예비비
	내역	금액	내역	금액			
				계	본청	시군	
보통교부금	경상교부금	3,268,417					3,268,417
특별교부금	세입업무진산화	10,000	세입업무진산화	10,000		0	
	교무실환경개선(OA시스템실치)	235,500	교무실환경개선(OA시스템실치)	235,500		0	
	소계	245,500	0	245,500		0	0
증액교부금	증액교부금	377					377
양어금	지방교육양어금	2,400,426					2,400,426
보조금	귀국학생담당교사인수	395	귀국학생담당교사인수	395		0	
	과학실험보조원임용	42,000	과학실험보조원임용	42,000		21,000	
	학교진신망구축	610,150	학교진신망구축	2,618,300		2,292,000	
	종합정보관리시스템구축(생활기록부진산화)	140,000	종합정보관리시스템구축	597,090		595,000	
	교원용 컴퓨터보급	58,032	교원용 컴퓨터보급	290,160		168,640	
	실습용 컴퓨터보급	330,215	실습용 컴퓨터보급	2,236,520		2,147,440	
	실습용 S/W 보급	33,140	실습용 S/W 보급	165,700		125,525	
	고등학교 교육과정통합운영시범학교	30,000	연구시범학교운영	30,000		0	
	환경보전시범학교운영(10,000→8,000)	-2,000	당초예산편성			0	
	한글뉴스수신료	36,000	당초예산편성			0	
	영어보조원 임용	60,000	영어보조원 임용	60,000		60,000	

(단위:천원)

구분		세 입		세 출				예비비
		내역	금액	내역	계	본청	시군	
	교과교육연구활동지원		160,000	교과교육연구활동지원	160,000	160,000	0	
	학급보조 자원봉사자 연수		8,128	학급보조 자원봉사자 연수	8,128	8,128	0	
	소계		1,506,060	0	6,208,293	798,688	5,409,605	-4,702,233
법정전입금	99년도 도세 전입금		3,520,946				0	
	소계		3,520,946	0	0	0	0	3,520,946
비법정전입금	안전교육시범학교운영		5,000	안전교육시범학교운영	5,000	5,000	0	
	지역자양성고지원		500,000				0	
	소계		505,000	0	5,000	5,000	0	500,000
기타	교원임용 후보자선정시험검정수수료		26,250				0	
	98년도 순세계잉여금		56,900,678				0	
	재특회계 용자금(기타차입금)		40,000,000	교원명퇴수당및퇴직수당부담금	40,000,000	40,000,000	0	
	입학금및수업료수입		3,549,772	본청각과요구사임	63,628,212	26,699,224	36,928,988	
	지역교육청 자체세입		321,299	지역교육청재원배분	4,374,053		4,374,053	
	소계		100,797,999	지역교육청자체세입사업	96,560		96,560	224,739
	세입합계		112,244,725	0	108,098,825	66,699,224	41,399,601	-7,300,826
				세출합계	114,557,618	67,748,412	46,809,206	-2,312,893

기정예비비 5,970,802
 예비비 합계 3,657,909

V. 세출예산 주요 투자 내역

(단위:천원)

사 업 명	예산액	비 고
교육공무원 인건비 조정	48,572,748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부담금
교육환경개선사업비	19,064,892	'98.불용액 재투자 및 '99.자체부담분
신설학교토지매입비및설계비	8,309,935	2001년 개교(비하중) 토지매입비 8,069,935천원 설계용역비 240,000천원
고등학교 급식시설	2,000,000	'98추진교 부족분 및 추가실시(31교) 공립시설비 1,878,760천원 사립지원비 121,240천원
제천청암학교 이전	900,000	제천 청암학교 이전비
충북공고 공동실습소 증축	630,000	공동실습소 증축
수용 및 일반시설비	12,307,469	수용시설 및 일반시설
교단선진화	2,505,945	교단선진화 사업비 증액 (기정예산 5,000,125천원)
학교전산망 구축	2,618,300	학교LAN망구축(초64교) 2,000,000천원 인터넷통신비(102교) 123,300천원 연동장비구입(본청,11시군) 495,000천원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생활기록부 전산화)	597,090	초33학급이상교 35교
교원용 컴퓨터 보급	290,160	중136,고91,특수7,계234대×1,240천원
실습용 컴퓨터 보급	2,236,520	컴퓨터 2,049,720천원 (초924, 중682, 고47, 계1,653대) 프린터 186,800천원 (초277, 중113, 고74, 특수3, 계467대)
실습용 S/W 보급	165,700	교당600×454교,급당25×7,082=449,450 천원 - 기정예산283,750천원
결식아동 중식지원비	1,108,413	공립 975,613천원, 사립 132,800천원 (기정예산 103,500천원)
교육환경조성비	1,796,000	초254,중113,고74,특수8교×4,000천원
경제사정곤란자 학비감면	1,354,133	중 534,953천원, 고 819,180천원
재특용자금 이자	650,000	재특용자금 이자

(단위:천원)

사 업 명	예산액	비 고
소규모학교 통폐합지원	817,246	학교통폐합지원 355,000천원 -본교 폐지10,000천원→30,000천원(9교) -분교 폐지5,000천원→20,000천원(11교) 분교장개편(본교→분교)7교 70,000천원 통학버스지원(18대) 392,246천원
행정장비 보급	511,100	복사기99, 운전등사기34,모사전송기36
교무실 근무환경개선	235,000	교무실 OA시스템 구축 3교
열린교육시범단지 운영	150,000	시범단지운영(3시군)
무선어학실습실 설치	140,000	무선어학실습실 10,000천원×14교
교원 연수	195,900	교원연수 242명
교원연수 사이버시스템구축	120,000	교원연수 시스템구축 및 프로그램개발
열린교육 Home Page Network 구성	30,000	각 학교 Home Page 제작 무료보급
아가모 운동의 사회화 운동	50,000	아가모운동 학교-가정연계 자료제작
5~6학년 영어학습자료 개발	40,200	초등 영어교육 학습자료 개발
열린학습-교수마이크로 영상자료 개발	56,080	20개 수업모형의 영상자료화
Web 활용 특수재능아 교육	80,000	특수재능아의 체계적인 교육 실시
'98.학교 운영평가	720,000	우수학교 : 초28,중12,고8×15,000천원
특기·적성교육 시범단지운영	60,000	시범단지 20,000천원×3시군
특기·적성교육활동 프로그램 개발	55,000	프로그램개발 5,000×11시군
특기·적성교육 활동 지원	88,357	특기·적성교육 활동 : 고 35교
초등 영어 보조교사 임용	60,000	초등영어보조교사 인건비 : 40명
열린교육 시범단지 운영	150,000	시범단지 50,000×3단지
기초학력 부진아 책임지도	106,200	초등 100×243교×2과목 중등 100×192교×3과목
충북교육발전기획단 운영	49,140	충북교육발전계획서 발간
교육환경조성비	1,796,000	초254,중113,고74,특8교×4,000천원
재정효율화 우수학교 지원	59,000	고 : 5,000천원×7교, 3,000천원×8교
기타 각과 및 교육청 사업	1,568,197	
합 계	112,244,725	

(별첨 3)

제10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

서 면 답 변 자 료

예산·결산소위원회

'98 초등학교 운영평가 우수학교 현황

초등교육과

시·군	학 교 명
청 주	중앙, 덕벌, 모충, 수곡
충 주	삼원, 남한강, 연수, 남산
제 천	동명, 용두
청 원	상봉, 내수, 옥산
보 은	내북, 삼산
옥 천	동이, 삼양
영 등	부용, 이수
진 천	성암, 성산
괴 산	덕평, 삼보, 증평
음 성	삼성, 수봉
단 양	가평, 상진

'99. 제1회 추경 지붕방수예산편성현황

단위:실/천원

구분	물량	단가	예산액	비고
침주	42	5.530	232.260	
층주	46.5	5.530	257.145	
계천	41	5.530	226.730	
침원	0	-	-	
보은	3.5	5.530	19.355	
옥천	15.5	5.530	85.715	
명동	18.5	5.530	102.305	
진천	0	-	-	
괴산	11	5.530	60.830	
음성	3.5	5.530	19.355	
단양	14	5.530	77.420	
본청	12	5.530	66.360	
합계	207.5	5.530	1,147,475	

교육용 S/W 개발

(학교, 교사 개인별 홈페이지 작성)

1. 목적

- 다양한 교육정보 자료를 학교별, 교사별 학교 홈페이지나 개인 홈페이지에 저장 관리하여 수업에 활용함으로써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 우수 자료를 컴퓨터 통신을 통해 쉽게 수집하고 교사 상호간 교환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
- 학생들이 우리 고장에 산재해 있는 각종 문화재, 산업시설, 교통, 도로 등을 안내하여 현장 체험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함.

2. 개발 절차

- 학교 및 개인별 홈페이지 작성계획 수립
- 홈페이지 작성
- 충청도내 학교와 전 교사의 교육정보 자료 입력
- 학교, 교사, 학생들이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활용토록 시스템 구축 (충청북도 교육청 홈페이지 Educacity에)

3. 예산 운영 계획

- 개발위원 및 급식
(각종 우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야간 작업을 하는 교사들의 식대)
5천원 × 20명 × 80일 = 800만원
- 개발 수당
홈페이지 디자인 명령 단추에 의해 실행되도록 명령어 부여

다른 홈페이지와의 연결 체제 구성 업무

3만원×20명×30일 = 1800만원

○ 기술지도

(운영할 수 있는 서버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비)

300만원×1명 = 300만원

○ 운영 관리

개발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까지의 운영 관리 지원비

5만원 × 20일=100만원

4. 기대효과

- 양질의 교육정보 자료를 각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공유함으로써 교육 자료 활용 기회 확대
- 우수한 교육자료를 교육에 적시에 활용함으로써 교실 수업 개선에 이바지
- 21세기 정보화 교육에 대비하여 교육 수요자의 욕구충족은 물론 선진 충북교육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됨.
- 학생들이 충북도내에 산재해 있는 각종 현장 체험 학습장을 교육을 통해 체험함으로써 애향심 고취.

Web 활용 특수 재능아 교육 시스템 구축

1. 사업 목적

- 영재아 교육을 학교 또는 가정에서 시행토록 하여 영재아의 사교육비 절감은 물론 우수 영재아의 욕구에 부응하는 교육을 시행하기 위함

2. 현황

서울은 교육 개발원에 개설 된 특수 재능아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 학교나 가정에서 영재 교육을 받을 수 있으나 교육 개발원 영재 교육 시스템의 소규모 및 영세화로 충북에서는 활용이 곤란하고 통신비 부담 때문에 활용이 잘 안됨

3. 사업 계획

- 학생 회관 3층 교단 선진화 지원관에 영재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 개발원 영재 교육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 청주 시내 3개 초등학교를 지정하여 국어, 산수, 사회, 과학 4과목의 영재 교육을 시범적으로 시행코자 함.
- 효과를 확인해 가며 청주 시내 학생뿐만 아니라 도내 전 학교를 확대하여 영재 교육을 시키고자 함.
- 명년에는 충북에서도 미개발된 영재 교육 교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 예정임.

4. 사업 내용

- 영재 교육 연수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서버구입
 - 영재교육 내용물 (강의 원고, 그림자료등을 저장하기 위한) 중앙 처리 장비가 필요함.

(현 도교육청 서버와 연구원 서버는 용량 부족으로 통합 관리가 안되고 학생들이 사용하는 관계로 잘못 사용시 행정 전산망이 불통 될 수 있음.)

- 서버 운영을 위한 S/W 구입 (서버 내부에 장착)
 - DBMS -서버에 있는 자료를 통신을 통해 수요자가 활용하기 위하여는 이를 구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DBMS는 사용자 수에 따라 가격이 차가 있으므로 영재교육 수용 인원에 적합한 8인이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DBMS를 구축코자 함.
 - Web - 영재 교육 프로그램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프로그램 이용자를 검색하고 보호하는 서버
 - 리얼미디어 서버 - 동영상 영재 교육 자료를 실시간에 보기 위하여는 리얼미디어 서버가 내장되어 연동 체제로 구성되어야 선진 영재 교육 모습을 잘 살펴보며 교육받을 수 있음.

5. 기대효과

- 양질의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보며
- 영재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되고
- 영재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은 누구든지 본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의해 영재교육이 가능할 것임.

학생 1인당 교육경비

(단위:천원)

구 분	학생수 (A)	운영비 (B)	1인당경비 (B/A)	비 고
초	120,378	43,346,360	360	
중	60,478	13,386,267	221	
고	인고	35,227	6,835,475	194
	농고	4,736	2,211,970	467
	공고	12,845	4,644,678	362
	상고	15,234	2,642,458	173
	특목고	1,520	1,256,507	827
	소계	69,562	17,591,088	253
특 수	1,451	1,616,744	1,114	
합 계	251,869	75,940,459	302	

(별첨4)

(제100회 임시회)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안)

1999. 4.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예산·결산소위원회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년 3월 20일, 충청북도교육감
- 나. 회부일자 : 1999년 3월 29일
- 다. 상정일자 : 1999년 3월 29일(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1999년 3월 30일)
 -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1999년 4월 1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한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세입예산중 국가부담수입 7,420,780천원,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 4,025,946천원,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100,797,999천원을 증액하였으며,
- 세출예산중 교육위원회비 2,916천원, 급여관리 46,283,748천원, 교육행정비 7,727,322천원, 교육사업비 2,128,599천원, 학교비 12,833,800천원, 사학지원비 4,790,400천원, 시설비 40,064,665천원, 제지출경비 726,168천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2,312,893천원을 감액하여,
- 추가경정예산액을 당초예산 636,620,456천원에서 세입·세출예산 각각 112,244,725천원이 증액된 748,865,181천원으로 함.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1999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추가되는 세입재원의 교부목적 이행과 재원의 합리적 배분 등을 심사기준으로 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예산편성 개요

□ 예산규모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636,620,456천원보다 112,244,725천원이 증액된 748,865,18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6% 증가되었는데, 기관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합계	748,865,181	100.0	636,620,456	100.0	112,244,725	17.6
교육위원회	687,825	0.1	684,909	0.1	2,916	0.4
본청	580,574,349	77.5	512,828,853	80.6	67,745,496	13.2
지역교육청	163,945,098	21.9	117,135,892	18.4	46,809,206	39.9
예비비	3,657,909	0.5	5,970,802	0.9	△2,312,893	△38.7

□ 세입예산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국고지원금 등 국가부담수입 7,420,780천원과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 4,025,946천원,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100,797,999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자원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자원별	예산액	구성비(%)	세입내역
합계	112,244,725	100.0	
보통교부금	3,268,417	3.0	○경상교부금 3,268,417
특별교부금	245,500	0.2	○세입업무전산화 10,000 ○교무실환경개선(OA시스템설치) 235,500

재원별	예산액	구성비(%)	세입내역
증액교부금	337	0.0	○증액교부금 377
양여금	2,400,426	2.1	○지방교육양여금 2,400,426
보조금	1,506,060	1.3	○귀국학생담당교사연수 395 ○과학실험보조원임용 42,000 ○학교전산망구축 610,150 ○종합정보관리시스템구축 140,000 (생활기록부전산화) ○교원용 컴퓨터보급 58,032 ○실습용 컴퓨터보급 330,215 ○실습용 S/W보급 33,140 ○고등학교교육과정통합운영시범학교 30,000 ○환경보전시범학교운영(10,000→8,000) △2,000 ○한글뉴스수신료 36,000 ○영어보조원 임용 60,000 ○교과교육연구활동지원 160,000 ○학급보조 자원봉사자 연수 8,128
법정전입금	3,520,946	3.1	○99년도 도세 전입금 3,520,946
비법정전입금	505,000	0.5	○안전교육시범학교운영 5,000 ○자영자양성고 지원 500,000
기타	100,797,999	89.8	○교원임용후보자선정시험검정수수료 26,250 ○98년도 순세계잉여금 56,900,678 ○재특회계 융자금(기타차입금) 40,000,000 ○입학금및수업료수입 3,549,772 ○지역교육청 자체세입 321,299

□ 세출예산

세출예산은 교육위원회 2,916천원, 본청 67,745,496천원, 지역교육청 46,809,206천원, 예비비 2,312,893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관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관별	교육위원회	본청	지역교육청	예비비	계	구성비(%)
합계	2,916	67,745,496	46,809,206	△2,312,893	112,244,725	100.0
교육위원회비	2,916				2,916	0.0
급여관리		46,283,748			46,283,748	41.2
교육행정비		6,586,437	1,140,885		7,727,322	6.9
교육사업비		2,001,537	127,062		2,128,599	1.9

관 별	교육위원회	본 청	지역교육청	예 비 비	계	구성비(%)
학 교 비		2,369,619	10,464,181		12,833,800	11.4
사학지원비		2,705,477	2,084,923		4,790,400	4.3
시 설 비		7,137,510	32,927,155		40,064,665	35.7
제지출경비		661,168	65,000		726,168	0.6
예 비 비				△2,312,893	△2,312,893	△2.0

□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역

- 교육공무원 인건비 조정 48,572,748천원
- 교육환경개선사업비 19,064,892천원
- 신설학교토지매입비및설계비 8,309,935천원
- 고등학교 급식시설 2,000,000천원
- 제천청암학교 이전 900,000천원
- 충북공고 공동실습소 증축 630,000천원
- 수용 및 일반시설비 12,307,469천원
- 교단선진화 2,505,945천원
- 학교전산망 구축 2,618,300천원
- 종합정보관리시스템구축(생활기록부 전산화) 597,090천원
- 교원용 컴퓨터 보급 290,160천원
- 실습용 컴퓨터 보급 2,236,520천원
- 실습용 S/W 보급 165,700천원
- 결식아동 중식지원비 1,108,413천원
- 교육환경조성비 1,796,000천원
- 경제사정곤란자 학비감면 1,354,133천원
- 재특용자금 이자 650,000천원
- 소규모학교 통폐합지원 817,246천원
- 행정장비 보급 511,100천원
- 교무실 근무환경개선 235,000천원
- 열린교육시범단지 운영 150,000천원
- 무선어학실습실 설치 140,000천원
- 교원 연수 195,900천원
- 교원연수 사이버시스템 구축 120,000천원
- 열린교육 Home Page Network 구성 30,000천원
- 아가모 운동의 사회화 운동 50,000천원
- 5~6학년 영어학습자료 개발 40,200천원

○ 열린학습-교수마이ক্র오 영상자료 개발	56,080천원
○ Web 활용 특수재능아 교육	80,000천원
○ '98.학교 운영평가	720,000천원
○ 특기·적성교육 시범단지운영	60,000천원
○ 특기·적성교육활동 프로그램 개발	55,000천원
○ 특기·적성교육 활동 지원	88,357천원
○ 초등 영어 보조교사 임용	60,000천원
○ 열린교육 시범단지 운영	150,000천원
○ 기초학력 부진아 책임지도	106,200천원
○ 충북교육발전기획단 운영	49,140천원
○ 재정효율화 우수학교 지원	59,000천원
○ 기타 각과 및 교육청 사업	1,568,197천원 등임.

나. 삭감내역

삭감액 : 1,374,280천원

삭감내역 및 사유

○ 본청 청사보수

△1,374,280천원

본청시설중 청사보수 사업비로 1,421,280천원을 계상하였는 바, 본청 건물이 노후하여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나 일선 교육현장의 시급한 사업과 경제난에 의한 교육재정의 실태를 감안하여 볼 때 당장 시급한 장애인 편의시설 27,000천원, 화장실 보수 20,000천원 총 47,000천원의 사업비를 제외한 1,374,280천원은 보다 시급한 사업에 투자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어 감액하였음.

다. 종합의견

금번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및 양여금 조정, 재정용자특별자금 차입,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부당금 편성, 특별교부금·국고보조금 및 일반회계전입금 사업계상, '98.순세계 잉여금의 사업계상 등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는 바,

삭감조정하기로한 본청 청사보수 사업비 1,374,280천원을 향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 시급한 학교의 교육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라며,

결식학생에 대한 지원에 있어 소요예산이 부족하여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등 유관기관, 그리고 지역사회등과의 적극적 협조를 모색하여 결식학

생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람.

또한 각종 학습교재를 매년 예산에 편성하여 개발·보급하고 있으나 각급 학교에서는 그 활용이 미흡하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보다 활용이 활성화되게하여 주시기 바람.

지붕방수, 화장실보수 등의 학교건물 보수예산이 교육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학교신·개축 및 각종 공사추진시 공사감독 및 학교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6. 수정안의 주요내용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 4. 1.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나. 수정이유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보다시급한 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해 본청 청사보수예산을 감액하고자 함.

다. 주요골자

- 본청(장), 시설비(관), 기관시설비(항), 행정및지원기관시설(세항)
- 본청 청사보수 시설비 1,421,280천원중 1,374,280천원을 감액함.
- 예비비 3,657,909천원을 5,032,189천원으로 함.

7. 심사결과 : 수정안 의결(참석위원 : 5명, 찬성위원 : 5명)

8.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제안년월일 : 1999년 4월 1일

제안자 :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1. 제안이유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중 사업우선순위를 검토하여 불 때 당장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비를 감액조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본청 기관시설비에서 본청 청사보수예산 1,421,280천원중 1,374,280천원을 감액함.

나. 예비비 3,657,909천원을 5,032,189천원으로 함.

3. 수정안 : 따로 붙임.

4. 수정안 대비표 : 따로 붙임.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 한다.

장) 본청 관) 시설비 항) 기관시설비 세항) 행정및지원기관시설

본청 청사보수 시설비 1,421,280천원을 1,374,280천원을 감액한 47,000천원으로 한다.

장) 예비비 관) 예비비 항) 예비비 세항) 예비비

예비비 3,657,909천원을 1,374,280천원을 감액한 5,032,189천원으로 한다.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수정안 대비표

(단위 : 천원)

장	관	항	과		교육감세출 예산액	교육위원회의결		예산액	수정내용
			세	항		감액	증액		
02	본청				580,574,349	1,374,280		579,200,069	
	06	시설비			11,901,799	1,374,280		10,527,519	
		03	기관시설비		1,754,907	1,374,280		380,627	
		01	행정및지원기관시설		1,754,907	1,374,280		380,627	○ P87. 본청시설(청사보수) (1,421,280 → 47,000) △ 1,374,280
14	예비비				3,657,909		1,374,280	5,032,189	
	01	예비비			3,657,909		1,374,280	5,032,189	
		01	예비비		3,657,909		1,374,280	5,032,189	
		01	예비비		3,657,909		1,374,280	5,032,189	○ P239. 예비비 (3,657,909 → 5,032,189) 1,374,280
		합			584,232,258	1,374,280	1,374,280	584,232,258	

